금융소비자를 위한 법령해설서 ❷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령해설서 집필단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이 법령 해설서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금융은 우리 생활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와 규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 채무자분들의 경우, 복잡한 금융 법령과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더욱 깊은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일반 금융소비자는 물론 채무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까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령 해설을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법령에 따른 다양한 법적 구제수단들을 포함하여,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실용적인 정보를 담았습니다.

이 책이 금융소비자 여러분께 보다 실질적이고 친절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특히 채무 문제로 절망하고 계신 분들께는 새로운 희망과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금융거래 과정에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가 확산되고,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균형 잡힌 관계가 형성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작업에 함께 뜻을 모아주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동료 변호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해설서를 통해 독자 여러분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령해설서 집필단 단장 **백주선**, 부단장 **박현근**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령해설서 집필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백주선**(법무법인 대율, 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박현근**(변호사 박현근 법률사무소, 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서성민**(변호사 서성민 법률사무소, 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박기현**(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 **이재승**(국선전담변호사, 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 **소현민**(법무법인 위민, 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 **김희성**(법무법인 강남, 변호사시험 9회)

변호사 **박세영**(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시험 13회)

변호사 **이종진**(보건복지부, 변호사시험 13회)

변호사 **이영규**(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시험 13회)

변호사 **김대윤**(더 드림 법률사무소, 변호사시험 14회)

* 민변(민생경제위원회)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대부업법 제정 이후에도 불법사채와 이자 폭리로부터 서민과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을 양축으로 삼아 끈질긴 입법개선과 청원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활동은 크게 ① 법정 최고금리의 지속적인 인하, ② 최고이자율에 대한 대부업법상 특례 폐지 및 이자제한법으로의 일원화, ③ 불법사채의 원본 반환 청구 금지(불법원인급여 적용)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향해 이어져 왔습니다. 현재 최고이자율의 3배 초과하는 이자약정 시 원본 반환청구를 금지하는 제도까지 도입되었습니다.

I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 보호에관한법률(약칭 : 대부업법) 제정

1962. 1. 15. 제정된 이자제한법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최고 이율을 제한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1997년 외환외기를 겪으면서 **IMF는** 긴축재정 정책에 따라 고금리가 예상됨에도 이제자한법이 금융시장의 자율로운 이자율 결정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이자제한법 폐지를 권고하였다**. 이에 정부는 IMF의 요구를 수용하여 1998. 1. 13. 이자제한법을 폐지[1]함에 따라 이자 제한의 근거 법령이 없어지면서 **고금리** 금전소비대차가 횡행하고, **불법 추심**행위가 성행하여 금융소비자의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폐단이 야기되자 2002. 8. 26.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약칭: 대부업법)**이 제정되어 2002. 10. 27. 시행되었다. 대부업법의 제정이유는 대부업자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제도권으로 양성화하고, 대부업자가 행하는 3천만원 이내의 소액대부에 대하여 **이자율**을 연 100분의 70의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며, 대부업자와 거래상대방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등 그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2009. 1. 21. 대부업과 별도로 대부**중개**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제도를 신설하면서 법률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다.

---

1 이자제한법은 2007. 3. 29. 다시 제정되었다.

Ⅱ

조문 연혁 및 해설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이 법은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연혁

개정일	구법	개정법
2005. 5. 31.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7. 12. 21.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 1. 21.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업법 제1조는 실질적인 내용이 개정된 부분은 없다. 대부업법의 제정 이유가 이자율 제한과 불법추심행위를 규제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제정 당시 이미 제8조에서 이자율을 제한하는 조항은 이미 있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목적 조항에 반영하여 문구를 수정한 것이다.

2. 조문 해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의 등록하도록 하여 국가의 감독 체계로 편입시키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하여 합법적으로 대부업이 성장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금융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 경제 안정 기여하기 위해 대부업법을 제정하였음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2. "대부중개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실질적으로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부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여신금융기관"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5.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 주요주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대부업자등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
      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자등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7. "불법사금융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8. "불법사금융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조문 연혁

개정일	구법	개정법
2005. 5. 31.	1.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9. 1. 21.	1.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신 설〉	**나. 여신금융기관**
	2. "여신금융기관"이라 함은 다른 법령에 의하	2.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여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것을 말한다.
	〈신 설〉	3. “대부**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신 설〉	**4. “여신금융기관”이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2015. 7. 24.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여신금융기관”이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여신금융기관"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신 설〉	**5.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 주요주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대부업자등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 **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자등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신 설〉	정하는 자 6.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025. 1. 21.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대부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대부중개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실질적으로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7. "불법사금융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8. "불법사금융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009. 1. 21. 제2조 개정을 통하여 대부**중개**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여신금융기관과 구분**하여 대부업 이용자가 대부업자를 은행 등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였다.

종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대부업으로만 등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을 통하여 직접 금전을 대부하는 자는 대부업으로, 대부중개

업을 대부업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하려는 자는 대부**중개업**으로 **별도 등록**하도록 하였다. 대부 이용자가 대부중개업자를 대부업자로 잘못 알고 이용함에 따라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하였다.

2025. 1. 21. 개정을 통해서 대부업은 금전 대부 또는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업으로" 개정하여 **계속성, 반복성을 추가**하였다. 다만 개정 전에도 판례는 "업으로" 인정 요건에 계속성, 반복성을 요구하였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에 의하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금전의 대부 등을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개정은 **기존의 판례**상 인정한 요건을 **명문화**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2. 조문 해설

가. 대부업의 정의

대부업은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인데, 대부란 금전을 교부하고 일정기한이 지난 후 반환받는 유상계약으로 민법상 금전 소비대차와 같은 의미이다. 대부업법은 이자제한법과 마찬가지로 **거래목적물을 '금전'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대부업법은 이자제한법과 달리 **어음할인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대가로 '금전'을 교부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금전은 상품 교환의 수단으로 화폐와 같은 의미이다. 대부는 금전을 교부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금전을 반환받는 유상계약으로 민법상 소비대차와 같은 의미이다. 대부업법은 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금전의 교부 뿐만 아니라 **어음할인 등과 같이 사실상 자금 융통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금전의 교부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에 의하면, 대부업법의 관련 규정과 입법 목적, '금전의 대부'의 사전적인 의미,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금전의 대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들고 있는 어음할인과 양도담보의 성질과 효력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서 문제 되는 금전 교부에 관한 구체적 거래 관계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개별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금전의 교부에 관해 위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이를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등 조항의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문구를 적시한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접근한 의뢰인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를 하고 구매 후 인증되는 문화상품권의 핀(PIN) 번호를 자신에게 알려주게 하여 의뢰인들이 구매한 **문화상품권 액면가의 22% 금액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77.8% 금액을 대부**해 준 다음 위 핀 번호를 상품권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의뢰인들에게 일정한 할인료를 공제한 금전을 교부하고 이와 상환하여 교부받은 상품권은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일정한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권면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화체된 유가증권의 일종인 점, 피고인과 의뢰인들 간의 상품권 할인 매입은 매매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의뢰인들 간의 관계는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 핀 번호를 넘겨받고 상품권 할인 **매입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종료**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금전을 교부한 것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대부업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나. 대주주, 자기자본 정의

2015. 7. 24. 개정에 의하면, 대기업 계열사의 우회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업자의 **대주주**와 거래 제한제도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면서 신용공여한도 위반시 부당이익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10조 및 제14조의2 신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부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신용공여한도 위반시 부당이익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대부업자와 대주주 간의 불건전 거래행위의 발생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규정 신설에 따라 **대주주** 및 **자기자본**에 대한 정의 규정을 도입하였다.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상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 상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에 결산상 오류에 따른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을 말한다(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3 제3항).

다. 불법사금융(중개)업자 정의

2025. 1. 21. 개정을 통해서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의 **명칭**을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각각 변경하여 그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은 무효로 하였다(제11조). 불법사금융업자의 미등록 불법대부 등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다(제19조).

제3조 (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2.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4.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5.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 전자적 장치·시스템 등을 통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하 "대부중개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3. 등록신청인이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4의2. 삭제 〈2015. 7. 24.〉

5.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6.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
7.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
8.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등은** 신청인이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2015. 7. 24.〉

1.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이 경우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증 교부 전에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수정·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사용하려는 상호가 해당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상호인지 여부. 이 경우 이미 등록된 상호이면 다른 상호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삭제 〈2015. 7. 24.〉
4. 삭제 〈2015. 7. 24.〉

⑤ 시·도지사등은 제4항에 따른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부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⑦ 대부업자등이 제4항 및 제3조의2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등에게 분실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의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조문 연혁

개정일	구법	개정법
2009. 1. 21.	①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여신금융기관을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최대출자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호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자(대통령령[2]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갱신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제4조 각 호의 등록 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2 현행 동법시행령 제2조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2009. 1. 21.	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부에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등록갱신의 경우에는 갱신일자)·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이 경우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증 교부 전에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수정·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사용하려는 상호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이미 등록된 상호인지 여부. 이 경우 이미 등록된상호이면 다른 상호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의 이수 여부. 이 경우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후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 후 그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부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2010. 1. 25.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4의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2012. 12. 11.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

		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 12. 1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4호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등록신청인이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4. 주된 영업소 외에 다른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소에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었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제4조 각 호의 등록 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호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제4조 각 호의 등록 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 주된 영업소 외에 다른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소에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었는지 여부**
2015. 7. 24.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3. 등록신청인이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영업소 각각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5.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6.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2.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4.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5.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15. 7. 24.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제4조 각 호의 등록 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이 경우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증 교부 전에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수정·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사용하려는 상호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이미 등록된 상호인지 여부. 이 경우 이미 등록된 상호이면 다른 상호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의 이수 여부. 이 경우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후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 후 그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4. 주된 영업소 외에 다른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소에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었는지 여부 〈4호부터 8호까지 신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3. 등록신청인이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5.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6.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 7.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 8.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부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등은 신청인이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이 경우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증 교부 전에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수정·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사용하려는 상호가 해당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상호인지 여부. 이 경우

		이미 등록된 상호이면 다른 상호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삭제 4. 삭제
2025. 1.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호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전자적 장치·시스템 등을 통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하 "대부중개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15. 7. 24. 개정을 통해 대부업 이용자 보호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등록요건에 재정적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로서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등을 **금융위원회**에 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등록·감독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부업의 등록 신청을 하는 자는 신청서에 자기자본을 기재하고(제3조 3항 7호), 대부업 등록 요건으로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을 갖추도록 하여 신설하였다(제3조의5 신설)

2025. 1. 21. 개정을 통해서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제3조 제2항제6호 신설).

2. 조문 해설

가.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며,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대출모집인도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는 경우, 법인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대부중개시스템으로 중개업을 하는 경우 등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강화된 관리 감독을 받는다.

나. 등록 신청 및 등록부 등재

등록 신청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일정 출자자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업무총괄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 제11조의4 제2항에 따른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등록부 등재 및 공개

위와 같은 등록 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후에 제3조의 5(등록 요건)을 심사하여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부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한다. 등록부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어 대부업자에 대한 정보

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담보한다.

라. 등록 유효 기간

등록 유효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여 유효 기간이 만료 전 **제3조의2에 의한 등록 갱신을 하지 않는 이상** 등록이 소멸하도록 하여 대부업에 대한 주기적 관리를 하고, 등록 요건 유지를 재심사한다.

제3조의2(등록갱신)

① 대부업자등이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등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등은 신청인이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3조제4항제1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갱신일자·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과 관련하여 시·도지사등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갱신절차와 기간 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갱신의 구체적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조문 연혁

개정일	구법	개정법
2009. 1. 21.	제3조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해당 등록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제3조의2(등록갱신) ① 대부업자등이 제3조제5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제4조 각 호의 등록 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2009. 1. 21.		등록갱신일자·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과 관련하여 시·도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갱신절차와 기간 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의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 7. 24.	제3조의2(등록갱신) ① 대부업자등이 제3조**제5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제4조 각 호의 등록 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제3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갱신일자·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과 관련하여 시·도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갱신절차와 기간 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의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등록갱신) ① 대부업자등이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등**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등은 신청인이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3조제4항제1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갱신일자·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과 관련하여 시·도지사등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갱신절차와 기간 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갱신의 구체적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 21. 개정을 통해서 제3조 제6항에 규정된 갱신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2015. 7. 24. 등록 제도를 개선하여 제3조의5 등록 요건을 신설하면서 등록 갱신 신청시 등록 요건을 심사하도록 하였다.

2. 조문 해설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등록 효력이 소멸한다. 갱신 심사시 등록 요건을 심사하고 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증을 교부한다. 갱신 심사는 신규 등록과 같은 수준 요건을 심사한다.

제3조의3(등록증의 반납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등은 지체 없이 시·도지사등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대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등은 그 영업정지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대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제3조제7항에 따라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조문 연혁

개정일	구법	개정법
2009. 1. 21.	〈신설〉	제3조의3(등록증의 반납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등은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2015. 7. 24.	제3조의3(등록증의 반납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등은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대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영업정지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대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제3조제6항에 따라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의3(등록증의 반납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등은 지체 없이 시·도지사**등**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대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등**은 그 영업정지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대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제3조**제7항**에 따라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해설

등록은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므로 합법 등록을 증빙하는 등록증 관리를 위한 규정을 두었다. 폐업, 등록 취소, 영업정지 명령을 받으면 등록증을 반납하도록 규정하였다. 영업 정지 기간 중 등록증을 회수하여 무등록 영업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반납 대상자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의4(대부업등의 교육)

①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미리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갱신 또는 변경등록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조문 연혁

개정일	구법	개정법
2009. 1. 21.	〈신설〉	제3조의4(대부업등의 교육)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 및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미리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등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2. 12. 11.	제3조의4(대부업등의 교육)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 및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미리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등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의4(대부업등의 교육)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미리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갱신 또는 **변경등록**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2015. 7. 24.	제3조의4(대부업등의 교육)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미리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갱신 또는 변경등록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의4(대부업등의 교육) ①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미리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갱신 또는 변경등록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2. 조문 해설

대부업자의 교육 이수는 등록 요건이다. 신규 등록, 등록 갱신,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 변경 등록 신청자는 대부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대부업자의 준법 교육을 통해서 대부업자가 법규 준수 역량을 제고하고 대부업자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하기 위함이다.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 교육기관의 인적·물적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교육의 내용**

은 이자율 제한 및 이자율 계산 방법, 불법 추심행위 금지, 대부업자 광고 방법 등 대부업 경영에 필요한 사항이다(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8 제4항)

대부업자의 준법 역량을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규제이다. 교육이수는 등록 요건으로 반드시 이수를 해야하고 등록 갱신의 요건으로 법령이 인정한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이상 이수하지 않으면 등록의 효력이 없어 불법대부업자가 된다.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간 중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가.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그 외**의 자: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후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 후 교육을 이수할 것
3.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 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출 것
4.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1항에 적합할 것
5.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최근 5년간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 3년간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라. 최근 5년간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간 중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1.〉

1. 신청인이 법인일 것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가.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가목 이외에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 그 외의 자: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의 요건을 갖출 것

4.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1항에 적합할 것

5.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지 아니할 것

6. 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1. 조문 연혁

개정일	구법	개정법
2015. 7. 24.	〈신설〉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후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 후 교육을 이수할 것 3.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2015. 7. 24.		4.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1항에 적합할 것 5.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최근 5년간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 1년간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라. 최근 5년간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인이 법인일 것 2.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의 요건을 갖출 것 4.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2항에 적합할 것 5.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지 아니할 것 6. 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2025. 1. 21.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3.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다. 최근 1년간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신 설〉 4.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2항에 적합할 것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간 중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단서 삭제〉** 가.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그 외의 자: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 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출 것 다. 최근 **3년간**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간 중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단서 삭제〉** **가.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가목 이외에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 그 외의 자: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1항**에 적합할 것

2015. 7. 24. 개정을 통하여 등록요건에 재정적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며, 대부업자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였다. 대부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을 갖추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등록요건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을 하는 자가

아닐 것 등을 추가하였다.

2025. 7. 22. 개정을 통하여 시·도지사 등록 대상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서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하고,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신설**하며,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도입하였다(제3조의5).

2. 조문 해설

시도지사에 등록대상과 금융위원회 등록대상을 구분하여 등록 요건을 정하였다. 공통 요건으로는 교육이수, 고정 사업장과 인력 전산 설비 구비, 법인인 경우 결격 요건 부재(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 선고,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실, 최근 3년간 폐업하지 않은 사실, 최근 5년간 등록 취소 처분이 없는 사실)가 있다. **시도지사 등록** 대상인 경우 등록 요건은 1억원 이상으로하고, 대부중개업만 영위하는 경우 3천만원 이상으로 하향하였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의 경우 자기자본은 3억원 이상으로, 온라인 대부중개시스템 중개업자는 1억원 이상, 대부중개업만 영위하는 자는 3천만원 이상으로 정하여 시도지사 등록대상의 **자기자본 기준보다 상향**하였다.

이래는 2025. 1. 21. 개정되어 2025. 7. 22. 시행된 대부업법령은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자기자본 기준을 대폭 상향하였다. 아래는 상향된 자기 자본 기준의 상세 내역이다.

		개인	법인
지자체 등록	대부업	1억 (法3조의5①1호나목, 令 2조의9 ② 2호)	3억 (法3조의5①1호 나목, 令 2조의9 ② 1호)

	대부중개업	3천(法3조의5①1호 가목/ 令 2조의9 ①)	
금융위 등록	대부업	개인 등록 불가	3억 (法3조의5②2호다목, 令 2조의9 ⑤2호)
	대부채권추심업		5억 (法3조의5②2호다목, 令 2조의9 ⑤1호)
	대부중개업(온라인)		1억 (法3조의5②2호가목, 令 2조의9 ③)
	대부중개업(오프라인)		3천 (法3조의5②2호 나목, 令 2조의9 ④)

2015. 7. 24 신설된 등록요건은 시행 전에 등록된 대부업자가 등록 기간이 만료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유효하지만, 등록 기간이 만료되어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신규 등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화된 등록요건을 적용받는다(아래 판례 참조).

1심 : 서울행정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구합69042 판결[3]

나. 등록**갱신**의 경우에도 대부업법 제3조의5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의

---

3 부칙 〈법률 제13445호, 2015. 7. 24.〉

제3조(대부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등록요건 및 임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자의 대부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자등에 재직 중인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대주주들의 사회적 신용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원고의 등록갱신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된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로서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일정 자산규모를 초과하는 자 등의 경우 기존의 시·도지사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법인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도록 하는 한편(제3조 제2항),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을 갖추도록 하고, 대주주가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등(제3조의5)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위와 같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대부업 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하였다(제13조 제2항).

나) 개정 대부업법의 경과규정인 이 사건 **부칙 제3조**(대부업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등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정 전** 대부업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여 오고 있는 대부업자는 개정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에 새로운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대부업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등 **등록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기존 대부업 등록에 따른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부칙 제5조**(등록요건 및 임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등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조의5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대부업자가 위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대부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자등에 재직 중인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칙 제5조 각호의 체계와 문언에 의하면, 이 사건 **부칙 제5조**는 개정 대부업법에 의한 규정 중 특히 **신설된 제3조의5에서 정한 등록요건** 및 제4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임원 등의 자격과 관련한 경과규정으로, 제1항에서는 개정 **전**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등의 경우 비록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흠결하더라도 등록취소를 하지 않고 등록유효기간 동안에는 계속하여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건 **부칙 제3조**에서 정한 **기본원칙**을 **재차 확인**하되, 제2항과 제3항에서 **대부업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항 제2호**에 따른 '1천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순자산액)**을 갖출 것'의 등록요건의 경우 **기존 등록유효기간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이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개정 대부업법 제4조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정 대부업법 시행 당시 대부업자 등에 재직 중인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개정 대부업법에 의하여 직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경과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갱신**의 경우 개정 대부업법 제3조의5의 등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라) 만약 개정 전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가 등록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부칙 제5조에 따라 대부업법 제3조의5의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등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다면, 등록갱신 신청을 하는 대부업자에게도 대부업법 제3조의5의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는 대부업법 제3조의2 제2항이 무의미해진다. 또한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개정 전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규제를 가할 수 없게 되어 개정 대부업법의 개정 취지를 전혀 살릴 수 없게 된다.

2심 (확정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25. **선고** 2018누73395 **판결**

위와 같은 대부업법과 이 사건 부칙의 문언 및 내용, 입법취지 등에 더하여, 위와 같이 등록요건 등을 엄격하게 규율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는 신규 등록뿐만 아니라 등록**갱신**의 경우에도 동일한 점, 위 등록요건을 흠결한 대부업자 등이 이미 등록을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그 흠결사유의 부정적인 측면이 상쇄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5조는 위 대부업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 등의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등록유효기간 범위 내에서는 위 대부업법에 따른 유효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위 대부업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위 등록요건이 흠결되거나 임원 등의 자격상실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등록취소 및 자격상실이 제한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그 **등록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 대부업자 등이 등록**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위 대부업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신규** 등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025. 1. 21. 강화된 등록 요건의 경우 개정 부칙 제4조[4]에 의하여 시행 후 2년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위 판례의 취지에 의하면, 시행 후 등록 갱신의 경우에도 강화된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현행법령 개정으로 대부업·대부중개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대폭 상향되었다. 이번 자기자본 요건 강화는 전체 대부시장의 건전성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4 부칙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제4조(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는 제3조 및 제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제1항 단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우선, 최소 자본을 갖추지 못하면서 겉으로만 등록업체 행세를 하던 이른바 무늬만 등록대부업체는 등록이 불가능하다. 그동안 영세한 자본으로 과도한 수익을 추구하며 합법과 불법을 오가던 업체들의 활동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등록대부업체의 영업환경은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자본을 갖춘 등록업체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자기자본은 금전출자 방식만 인정되며(현물출자 불가), 예금잔액증명서 등 금융증빙으로 입증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 이후에는 대부중개업만 영위하는 경우에도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었다.

이와 같은 **자본요건 상향**은 대부업 시장의 불법성·불투명성을 줄이고, 합법적·건전한 금융 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9. 4. 1., 2010. 1. 25., 2012. 12. 11., 2015. 3. 11., 2015. 7. 24., 2025. 1. 21.〉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이 법의 규정
   나.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9조, 제350조 또는 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72조 또는 제73조

6의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7.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

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5. 1. 21.〉

③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된 후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신설 2015. 7. 24., 2025. 1. 21.〉

[전문개정 2009. 1. 21.]

[제목개정 2015. 7. 24.]

1. 조문 연혁[5]

개정일	구법	개정법
2002. 8. 26. (제정)	**제4조 (등록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이 법 나.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제283조제1항·제319조·제350조·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제2항제8호 7.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2009. 1. 21.	제4조 (등록의 제한) (생략) 7.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제4조 (등록의 제한) (생략) 7.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2010. 1. 25.	신설	제4조 (등록의 제한) (생략) **8.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5 단순 자구 개정의 경우는 생략

2012. 12. 11.	제4조(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업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신설)** **6의2.(신설)**	제4조(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업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 6의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2015. 7. 24.	제4조**(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업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신설)** **8.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② (신설)** **③ (신설)**	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72조 또는 제73조** **8.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

2015. 7. 24.		**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된 후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2025. 1. 21.	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11.(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5.(생략)	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삭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5. 1. 21.		**11.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겸할 수 없다.**

대부업법 제4조는 제정 당시에는 '등록의 제한'에 관한, 2015. 7. 24.자 개정 이후에는 '임원 등의 자격'에 관한 규정으로 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 중 단순한 자구 변경을 제외하면 5차례 개정되었다.

2002. 8. 26. 제정 당시,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로(법인인 경우 그 임원), 미성년자, 금치산자, 파산자, (일부) 형사처벌 및 등록취소된 자를 규정하여 대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그간 음성적으로 행하여지던 대부업을 양성화하여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제재 및 감독하기 위하여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그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

2009. 1. 21.자 개정으로, 제7호를 개정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2010. 1. 25.자 개정으로, 제8호를 신설하여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였다. 이는 소재불명인 대부업자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2012. 12. 11.자 개정으로, 제4조 본문을 개정하여 법인인 경우에 업무총괄 사용인을 추가하고 개인의 경우에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추가하였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또한, 제6조 마.목을 신설하여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제6호의2를 신설하여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등록 제한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이는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제한 요건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2015. 7. 24.자 개정으로, 조문의 제목을 "등록의 제한"에서 "임원 등의 자격"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종전의 규정을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누어, 제1항을 "시·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경우로, 제2항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경우로 규정하였다. 이때 제1항의 경우에 제6호 가목을 신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72조 또는 제73조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였고, 제8호를 삭제하여 대부업등을 위하여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였다. 제2항의 경우, 제1항 각 호를 모두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 및 대부업법과 위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항을 신설하여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된 후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체계를 개편하면서 임원 등의 자격 기준을 세분하여 규정한 것이었다.

2025. 1. 21.자 개정으로, 종전에 임원 등의 자격 기준을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로 구분하였던 것을,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여 구분이 없도록 하였다. 이에 종전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를 그대로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로 이동하였

다. 그리고 제2항을 신설하여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2. 조문 해설

가. 제4조 제1항

제4조 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도록 임원 등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정된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⑴ (제1호, 제2호)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이다.

⑵ 그 다음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이다.

(제3호 내지 제5호) 우선,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 내지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의 경우이다. 이는 처벌 근거 법령이나 죄목을 불문한다.

(제6호)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6가지로 처벌법령의 경우로 제한한다. 이는 ① 대부업법, ②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로서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9조, 제350조 또는 제366조 및 ③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내지 제3항, 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⑥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72조 또는 제73조의 경우이다.

(제8호) 마지막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이다. 위 '금융관련 법령'에 대하여는,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12 제1호 내지 제48호, 대부업등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10조 제5항[6]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⑶ 마지막으로는 폐업, 등록취소, 영업 허가·인가·등록 취소, 해임·면직된 경우이다. 이는 (6호의2) 폐업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 (7호)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 (제9호)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취소 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0호) 대부업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1호)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이다.

나. 제4조 제2항

제4조 제2항은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6 ⑤ 시행령 제2조의12제48호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 및 그 하위 규정을 말한다.
1.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2. 산림조합법
3.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다. 제4조 제3항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된 후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3. 해외 입법례

가. 일본

일본은 1983년 「대금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貸金業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을 제정하여 대부업자 등록제를 시행하였고, 이후 2007년에 「대금업법(貸金業法)」으로 변경되었다. 대금업법은 제6조에서 등록 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대금업법] 2017년 10월 1일 시행

(등록의 거부)

제6조 ① 내각총리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는 제3조 제1항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또는 등록신청서 혹은 그 첨부서류 중 중요 사항에 관하여 허위 기재가 있거나 중요 사실의 기재가 결여되어 있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대금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자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파산절차개시의 결정을 받고 복권을 얻지 아니한 자

3. 제24조의6의4 제1항, 제24조의6의5 제1항 또는 제24조의6의6 제1항(제1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또는 「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2000년 법률 제101호) 제38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의 등록(대금업 대부매개업무(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규정하는 대금업 대부매개업무를 말한다.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24조의27 제1항 제3호에서 같음)의 종별에 관한 것에 한한다)이 취소되고, 그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해당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취소일 전 30일 이내에 그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4. 구금형 이상의 형에 처해지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 또는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이 법, 「출자의 수입, 예탁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1954년 법률 제195호), 「구(舊) 대금업자의 자주규제의 조장에 관한 법률」(1972년 법률 제102호),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제32조의3 제7항 및 제32조의11 제1항을 제외한다) 또는 「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였거나, 또는 대부계약의 체결이나 해당 계약에 기초한 채권의 추심에 있어 「물가통제령」(1946년 칙령 제118호)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였거나, 또는 「형법」(1907년 법률 제45호)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26년 법률 제60호)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에 처해지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 또는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원(이하 이 호에서 "폭력단원"이라 한다) 또는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이하 "폭력단원 등"이라 한다)
7. 대금업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자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 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법인으로서 그 임원 또는 정령으로 정하는 사용인 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대금업에 관한 직무를 적정하게 집행할 수 없는 자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자

나.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0. 개인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사용인 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대금업에 관한 직무를 적정하게 집행할 수 없는 자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자

나.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1. 폭력단원 등이 그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

12. 폭력단원 등을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또는 그 업무의 보조자로서 사용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자

13.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관하여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요건을 결여하는 자

14. 순자산액이 대금업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당한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자(자금수요자 등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자를 제외한다.)

15. 대금업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체제가 정비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

16. 그 밖에 영위하는 업무가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자

② 내각총리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

체 없이 그 이유를 제시하여 그 취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4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5천만 엔을 하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제14호의 순자산액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貸金業法] (令和7年10月1日 施行)

(登録の拒否)

第六条 内閣総理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は、第三条第一項の登録を受けようとする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又は登録申請書若しくはその添付書類のうちに重要な事項について虚偽の記載があり、若しくは重要な事実の記載が欠けているときは、その登録を拒否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心身の故障により貸金業を適正に行うことができない者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者

二 破産手続開始の決定を受けて復権を得ない者

三 第二十四条の六の四第一項、第二十四条の六の五第一項若しくは第二十四条の六の六第一項（第一号に係る部分に限る。）の規定により登録を取り消され、又は金融サービスの提供及び利用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平成十二年法律第百一号）第三十八条第一項（第二号から第四号までを除く。）の規定により同法第十二条の登録（貸金業貸付媒介業務（同法第十一条第五項に規定する貸金業貸付媒介業務をいう。第十条第一項第六号及び第二十四条の二十七第一項第三号において同じ。）の種別に係るものに限る。）を取り消され、その取消しの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者（当該登録を取り消された者が法人である場合においては、当該取消しの日前三十日以内に当該法人の役員であつた者で当該取消しの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ものを含む。）

四 拘禁刑以上の刑に処せられ、その刑の執行を終わり、又は刑の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つた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者

五 この法律、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昭和二十九年法律第百九十五号）、旧貸金業者の自主規制の助長に関する法律（昭和四十七年法律第百二号）、暴力団員による不当な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平成三年法律第七十七号）（第三十二条の三第七項及び第三十二条の十一第一項を除く。）若しくは金融サービスの提供及び利用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違反し、又は貸付けの契約の締結若しくは当該契約に基づく債権の取立てに当たり、物価統制令（昭和二十一年勅令第百十八号）第十二条の規定に違反し、若しくは刑法（明治四十年法律第四十五号）若しくは暴力行為等処罰に関する法律（大正十五年法律第六十号）の罪を犯し、罰金の刑に処せられ、その刑の執行を終わり、又は刑の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つた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者

六 暴力団員による不当な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第二条第六号に規定する暴力団員（以下この号において「暴力団員」という。）又は暴力団員でなくなつた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者（以下「暴力団員等」という。）

七 貸金業に関し不正又は不誠実な行為をす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る者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者

八 営業に関し成年者と同一の行為能力を有しない未成年者でその法定代理人（法定代理人が法人である場合においては、その役員を含む。）が前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

九 法人でその役員又は政令で定める使用人のうちに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のあるもの

イ 心身の故障のため貸金業に係る職務を適正に執行することができない者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者

ロ 第二号から第七号まで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

十 個人で政令で定める使用人のうちに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のあるもの

イ 心身の故障のため貸金業に係る職務を適正に執行することができない者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者

ロ 第二号から第七号まで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

十一 暴力団員等がその事業活動を支配する者

十二 暴力団員等をその業務に従事させ、又はその業務の補助者として使用するおそれのある者

十三 営業所又は事務所について第十二条の三に規定する要件を欠く者

十四 純資産額が貸金業の業務を適正に実施するため必要かつ適当な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金額に満たない者（資金需要者等の利益を損なうおそれがないもの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事由がある者を除く。）

十五 貸金業を的確に遂行するための必要な体制が整備されていると認められない者

十六 他に営む業務が公益に反すると認められる者

2 内閣総理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は、前項の規定により登録を拒否し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理由を示して、その旨を申請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第十四号の政令で定める金額は、五千万円を下回つてはならない。

4 第一項第十四号の純資産額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計算するものとする。

나. 미국

미국의 경우, 비은행 금융업자에 대한 허가는 주(州)별로 규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주 은행법은 "재무적 책임, 경험, 인격, 및 일반적 적격성이 지역사회가 신뢰할 만하고, 또한 본 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사업이 정직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믿음을 정당화하는 정도에 이르며, 아울러 감독관이 신청인이 신청서에 특정된 각 영업소 소재지에서 해당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미화 5만 달러 이상의 유동자산(liquid assets)을 이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ECTION 342

면허 발급의 선행조건; 신청이 거부된 경우의 절차

Banking(BNK) 제2편, 제9조

§ 342. 면허 발급의 선행조건; 신청이 거부된 경우의 절차.

이러한 신청서의 제출과 이러한 수수료의 납부가 있으면, 감독관(superintendent)이 다음 사항을 인정하는 경우, 즉 신청인의 재무적 책임, 경험, 인격, 및 일반적 적격성(신청인이 조합 또는 협회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이사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이 지역사회가 신뢰할 만하고, 또한 본 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사업이 정직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믿음을 정당화하는 정도에 이르며, 아울러 감독관이 신청인이 신청서에 특정된 각 영업소 소재지에서 해당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미화 5만 달러 이상의 유동자산(liquid assets)을 이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은 이에 따라 마스터 면허(master license)를 작성·발급하고, 적용되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보충 면허(supplemental licenses)도 함께 작성·발급하여, 신청서에 특정된 소재지에서 본 조의 규정에 따라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해당 면허 또는 면허들의 사본 1부를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그 원본을 당국(부서)의 사무소에 보관(파일)하여야 한다. 각 면허는 면허권자가 이를 반납(surrender)하거나 또는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revoked) 또는 정지(suspended)되지 않는 한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감독관이 위와 같이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마스터 면허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독관은 신청인에게 그 거부 사

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이 거부되거나 철회된 경우 감독관은 신청인이 면허 수수료로 납부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반환하되, 신청 조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사 수수료(investigation fee)는 보유할 수 있다. 감독관은 본 조에 따른 마스터 면허의 모든 신청에 대하여, 해당 수수료가 첨부된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

SECTION 342

Conditions precedent to issuing license; procedure where application denied

Banking (BNK) CHAPTER 2, ARTICLE 9

§ 342. Conditions precedent to issuing license; procedure where application denied. Upon the filing of such application and the payment of such fees, if the superintendent shall find that the financial responsibility, experience, character, and general fitness of the applicant, and of the members thereof if the applicant be a partnership or association, and of the officers and directors thereof if the applicant be a corporation, are such as to command the confidence of the community and to warrant belief that the business will be operated honestly, fairly, and efficiently within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nd if the superintendent shall find that the applicant has available for the operation of such business at each specified location liquid assets of at least fifty thousand dollars, the superintendent shall thereupon execute a master license, and if applicable one or more supplemental licenses, to make loan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t the location or locations specified in the said application. The superintendent shall transmit one copy of such license or licenses to the applicant and file the same in the office of the department. Each such license shall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until it is surrendered by the licensee or revoked or suspended as hereinafter provided; if the superintendent shall not so find, a master license shall not be issued and the superintendent shall notify the applicant of the denial. If an application is denied or withdrawn the superintendent shall return to the applicant the sum paid by the applicant as a license fee, retaining the investigation fee to cover the costs of investigating the application. The superintendent shall approve or deny every application for a master license hereunder within ninety days from the filing thereof with the said fees.

제5조(변경등록 등)

① 대부업자등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시·도지사등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 7. 24.〉

② 대부업자등이 폐업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09. 1. 21.]

1. 조문 연혁

개정일	구법	개정법
2009. 1. 21.	제5조 (변경등록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는 동조제2항 각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② 대부업자가 **영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등록 등) ① **대부업자등**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대부업자등이 **폐업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2. 12. 11.	**신설**	**제5조(변경등록 등)**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 등**

		을 통하여 다른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2015. 7. 24.	제5조(변경등록 등)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다른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5조(변경등록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부업법 제5조는 변경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다.

2009. 1. 21.자 개정으로, 제1항 단서를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2012. 12. 11.자 개정으로, 제3항을 신설하여 폐업신고시 시·도지사가 다른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알리도록 하였다.

2015. 7. 24.자 개정으로, 제3항을 개정하여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와 관련한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2. 조문 해설

가. 제5조 제1항

대부업자등은 제3조 제3항 각 호의 기재사항, 즉 등록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시·도지사등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위 경미한 사항은, 대표자, 임원, 출자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출자총액이 100분의 5 이하인 출자자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로서 영업소의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해당 영업소는 제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의 변경사항이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에 반영되어 제출되는 경우이다(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한편,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부업자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나. 제5조 제2항

대부업자등이 폐업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폐업하려는 대부업자등은 폐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폐업신고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다. 제5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7조 및 제8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5조의2(상호 등)

①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대부업등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으로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 중에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대부업자등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5. 7. 24.〉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 21.〉

1. 대부업자등이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는 행위
2. 대부업자등의 등록증을 양도·양수·대여·유통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 1. 21.]

1. 조문 연혁

개정일	구법	개정법
2009. 1. 21.	제5조의2 **(명의대여 등의 금지)** 대부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을 영위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5.5.31.]	제5조의2**(상호 등)** ①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대부업등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으로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 중에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좌동)** [전문개정 2009.1.21]
2015. 7. 24.	제5조의2(상호 등) ④ 대부업자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1.]	제5조의2(상호 등) ④ **이 법에 따른 대부업자등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5.7.24〉** ⑤ **(종전 제4항과 같음)**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09.1.21]
2025. 1. 21.	제5조의2(상호 등) ⑤ 대부업자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09.1.21.]	제5조의2(상호 등)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1〉 1. 대부업자등이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는 행위 **2. 대부업자등의 등록증을 양도·양수**·대여·**유통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1.21]

대부업법 제5조의2는 2005. 5. 31. 명의대여 등의 금지 조항으로 신설되었다.

2009. 1. 21.자 개정으로 제목이 '상호 등'으로 변경되었고, 종전 규정이 제4항으로 이동

하고, 제1항 내지 제3항이 신설되어 원칙적으로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상호에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토록 하였다.

2015. 7. 24.자 개정으로, 기존 제4항이 제5항으로 이동하고, 제4항이 신설되어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등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2025. 1. 21.자 개정으로, 제5항을 제1호와 제2호로 나누어, 제2호에 대부업자등의 등록증을 양도, 양수, 유통하는 행위를 추가하였다.

2. 조문 해설

가. 상호(제5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대부업자(대부중개업 겸영 포함)와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각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등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으로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 중에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 영업수익의 비율은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이는 직전 사업연도 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대부업등에서는 이자수익, 대부업등 외의 영업에서는 매출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회사에의 예치금 등 금융상품의 운용에 따른 수익은 영업수익의 비율 계산에서 제외한다(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한편, 법 제5조의2 제3항과 같이 상호(商號)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등과 관련하여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나. 명의대여 등의 금지(제5조의2 제4항, 제5항)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등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누구든지 대부업자등이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는 행위와 대부업자등의 등록증을 양도·양수·대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3(업무총괄 사용인 등)

① 대부업자등은 영업소마다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단일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2. 11.]

1. 조문 연혁

대부업법 제5조의3은 2012. 12. 11. 업무총괄 사용인에 대한 규정으로 신설되었다.

2. 조문 해설

대부업자등은 영업소마다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단일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부업자의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는 대부계약의 체결 및 이행, 채권추심, 민원 상담·처리, 광고 등을 통한 거래상대방 모집,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대부업자를 갈음하여 행하는 영업에 관한 업무이다(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호). 대부중개업자의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는 대부계약 중개, 대부업자와의 중개계약 체결 및 이행, 민원 상담·처리, 광고 등을 통한 거래상대방 모집,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대부중개업자를 갈음하여 행하는 영업에 관한 업무이다(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호).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①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4. 1. 1., 2017. 4. 18.〉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3. 대부금액

3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

4. 대부이자율(제8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5.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6. 제5호의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변제를 받기 위한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
7.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8.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10.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11. 연체이자율
12.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보증계약서 및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주채무자 및 보증인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3. 보증기간

4. 피보증채무의 금액

5. 보증의 범위

6.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⑤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에 따른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사본 및 반환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⑥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대부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3. 18.〉

[전문개정 2009. 1. 21.]

1. 조문 연혁

개정일	구법	개정법
2005. 5. 31.	제6조 (대부계약의 체결)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대부계약(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대부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2. 계약일자 3. 대부금액 4.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5.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6. 대부금을 변제받을 계좌번호를 정한 경우에는 그 계좌번호 7. 당해 거래에 관한 일체의 부대비용 8.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10. 그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6조 (대부계약의 체결 등〈개정 2005.5.31〉) ①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대부계약(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1. 대부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2. 계약일자 3. 대부금액4.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5.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6. 대부금을 변제받을 계좌번호를 정한 경우에는 그 계좌번호 7. 당해 거래에 관한 일체의 부대비용 8.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10.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11. 그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대부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를 계약체결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09. 1. 21.	제6조 (대부계약의 체결 등〈개정 2005.5.31〉) ①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대부계약(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제6조 (대부계약의 체결 등) ①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삭제)**과 대부계약**(삭제)**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2009. 1. 21.	1. 대부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2. 계약일자 3. 대부금액 4.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5.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6. **대부금을 변제받을 계좌번호를 정한 경우에는** 그 계좌번호 7. **당해** 거래에 관한 **일체의** 부대비용 8.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10.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11. 그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대부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를 **계약체결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대부금액 4. 대부이자율(**제8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5.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6. **제5호의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그 계좌번호 7.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8.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10.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11.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보증계약서 및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주채무자 및 보증인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3. 보증기간** **4. 피보증채무의 금액** **5. 보증의 범위** **6.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⑤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에 따른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환**

2009. 1. 21.		**한 경우에는 그 사본 및 반환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⑥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부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1]**
2010. 1. 25.	제6조 (대부계약의 체결 등) ① 6. 제5호의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그 계좌번호 **11.**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① 6. 제5호의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변제를 받기 위한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 11. 연체이자율 12. (종전 제11호)
2014. 1. 1.	**신설**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① **3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
2014. 3. 18.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⑥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부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⑥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대부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 4. 18.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① 10. 채무의 조기상환조건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① 10.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대부업법 제6조는 대부계약과 관련한 규정이다. 2002. 8. 26. 제정 당시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보증인 포함)과 대부계약(보증계약 포함)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서에 기재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10가지 사항을 규정하였다.

2005. 5. 31.자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종전의 제10호를 제1항 제11호

로 이동한 후, 제10호를 신설하여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을 추가하였다. 또한, 제2항을 신설하여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계약체결일부터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였다.

2009. 1. 21.자 개정으로 전문을 개정하였다. 제1항에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추가하였고, 각 호를 일부 보완하였다. 제2항 내지 제4항, 제6항을 신설하여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설명의무와 보증인에 대한 사본 교부의무 및 설명의무, 대부계약자 및 보증계약자의 열람 발급 요구권을 추가하였다. 종전 제2항을 제5항으로 이동한 후,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보관일의 기산점을 체결한 날에서 채무변제일로 변경하는 등 개정하였다.

그 외에 2010. 1. 25.자, 2014. 1. 1.자 및 2017. 4. 18.자 개정으로 제1항의 각 호를 보완하였고, 2014. 3. 18.자 개정으로 제6항을 개정하여 대부계약자 및 보증계약자의 대리인도 열람 발급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조문 해설

가. 대부계약(제6조 제1항)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대부계약서에는 대부업자(영업소 포함)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계약일자, 대부금액, 최고이자율, 대부이자율(제8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연체이자율,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서에는 대부업등 등록번호,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발급기한도 포함되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나. 대부업자의 설명의무(제6조 제2항)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 즉 대부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다. 대부업자의 보증인에 대한 사본 교부의무 및 설명의무(제6조 제3항, 제4항)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계약서 및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보증계약서에는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주채무자 및 보증인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계약일자,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위 보증계약서에는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는 위 가.항에서 전술한 대부계약서의 경우와 동일한 내용이다.

그리고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위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마.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보관(제6조 제5항)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보증계약의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를 계약체결일로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관계서류는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사본 및 반환요구서를 말한다.

위 계약관계서류는 대부계약대장, 채무자와 날짜별로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주고 받은 내역, 담보 관련 서류 등 거래상대방(보증인 포함)이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를 의미한다. 이때 거래상대방의 제출 서류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관련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요구서를 의미한다(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바.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열람 요구권(제6조 제6항)

대부계약 및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대부업자에게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해외 입법례(일본)

일본 「대금업법(貸金業法)」은 대부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

지 않으나, 제16조의2에서 계약체결 전 교부할 서면, 제17조에서 계약체결시 교부할 서면, 제18조에서 영수증서의 교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대금업법] 2017년 10월 1일 시행

(계약 체결 전 서면의 교부)

제16조의2 대금업자는 대부에 관한 계약(극도방식 기본계약 및 극도방식 대부에 관한 계약을 제외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고, 해당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해당 계약의 상대방이 되려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대금업자의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2. 대부 금액
3. 대부 이율
4. 상환 방식
5. 상환 기간 및 상환 횟수
6. 배상액의 예정(위약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7. 전 각 호에 게기하는 것 외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금업자는 극도방식 기본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극도방식 기본계약을 체결하기까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고, 해당 극도방식 기본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해당 극도방식 기본계약의 상대방이 되려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대금업자의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2. 극도액(대금업자가 극도방식 기본계약의 상대방이 되려는 자에 대하여 대부 원본 잔고의 상한으로서 극도액을 하회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하회하는 금액 및 극

도액)

3. 대부 이율

4. 상환 방식

5. 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6. 전 각 호에 게기하는 것 외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금업자는 대부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계약을 체결하기까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일정한 범위에 속하는 불특정한 대부에 관한 채무를 주된 채무로 하는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3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을 명확히 하고, 해당 보증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해당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되려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대금업자의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2. 보증기간

3. 보증금액

4. 보증의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

5. 보증인이 주된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민법(1896년 법률 제89호) 제454조 규정의 취지 기타 연대보증채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

6. 전 각 호에 게기하는 것 외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대금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면의 교부에 갈음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대부계약의 상대방이 되려는 자 또는 전항의 보증인이 되려는 자의 승낙을 얻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되는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금업자는 해당 서면의 교부를 한 것으로 본다.

(계약 체결 시 서면의 교부)

제17조 대금업자는 대부에 관한 계약(극도방식 기본계약을 제외한다. 제4항에서 같다)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서면을 그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해당 서면에 기재된 사항 중 중요하다고 하여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금업자의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2. 계약 연월일
3. 대부 금액
4. 대부 이율
5. 상환 방식
6. 상환 기간 및 상환 횟수
7. 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8. 전 각 호에 게기하는 것 외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금업자는 극도방식 기본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극도방식 기본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서면을 그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해당 서면에 기재된 사항 중 중요하다고 하여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한 때(해당 상대방의 이익 보호에 지장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때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1. 대금업자의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2. 계약 연월일
3. 극도액(대금업자가 극도방식 기본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대부 원본 잔고의 상한으로서 극도액을 하회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하회하는 금액 및 극도액)
4. 대부 이율

5. 상환 방식

6. 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7. 전 각 호에 게기하는 것 외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금업자는 대부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증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서 제16조의2 제3항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일정한 범위에 속하는 불특정한 대부에 관한 채무를 주된 채무로 하는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같은 항 3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및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보증계약의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해당 서면에 기재된 사항 중 중요하다고 하여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대금업자는 대부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 또는 대부에 관한 계약으로서 보증계약에 관한 것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러한 대부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서면을 이러한 보증계약의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해당 서면에 기재된 사항 중 중요하다고 하여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⑤ 대금업자는 극도방식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에 관하여 해당 극도방식 보증계약에 관련되는 극도방식 기본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서면을 해당 극도방식 보증계약의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해당 서면에 기재된 사항 중 중요하다고 하여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한 때(해당 보증인의 이익 보호에 지장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때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⑥ 대금업자가 극도방식 대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그 상대방 또는 해당 계약의 기본이 되는 극도방식 기본계약에 관한 극도방식 보증계약의 보증인에 대하여, 이들의 승낙을 얻어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에 있어

서의 대부 및 변제 기타 거래의 상황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교부할 때에는, 제1항 전단 또는 제4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서면의 교부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이들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금업자는 제1항 전단 또는 제4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서면의 교부를 한 것으로 본다.

1. 계약 연월일
2. 대부 금액(극도방식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에 관련되는 대부 금액)
3. 전 2호에 게기하는 것 외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대금업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면의 교부 또는 전항의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서면의 교부,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 전단 또는 제4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서면의 교부에 갈음하여 교부하는 서면의 교부에 갈음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전 각 항에 규정하는 사항 또는 전항의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금업자는 이러한 서면의 교부를 한 것으로 본다.

(영수증서의 교부)

제18조 대금업자는 대부계약에 기초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변제를 받은 때에는, 그때마다 즉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변제를 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대금업자의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2. 계약 연월일
3. 대부 금액(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에 관련되는 대부 금액. 다음 조 및 제21조 제2항 4호에서 같다)
4. 수령금액 및 그 이자, 배상액의 예정에 기초한 배상금 또는 원본에의 충당액

5. 수령 연월일

6. 전 각 호에 게기하는 것 외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규정은, 예금 또는 저금의 계좌에 대한 납입 기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변제를 한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대금업자가 극도방식 대부에 관한 계약 또는 해당 계약의 기본이 되는 극도방식 기본계약에 관한 극도방식 보증계약에 기초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변제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 해당 변제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자의 승낙을 얻어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에 있어서의 대부 및 변제 기타 거래의 상황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교부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의 교부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그 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금업자는 해당 서면의 교부를 한 것으로 본다.

1. 수령 연월일

2. 수령 금액

3. 전 2호에 게기하는 것 외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대금업자는 제1항에 규정하는 서면의 교부 또는 전항의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서면의 교부,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의 교부에 갈음하여 교부하는 서면의 교부에 갈음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또는 전항에 규정하는 변제를 한 자의 승낙을 얻어, 제1항 또는 전항에 규정하는 사항 또는 전항의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금업자는 이러한 서면의 교부를 한 것으로 본다.

[貸金業法] (令和7年10月1日 施行)

(契約締結前の書面の交付)

第十六条の二 貸金業者は、貸付けに係る契約 (極度方式基本契約及び極度方式貸付けに係る契約を除く。) を締結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当該契約を締結するまでに、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に掲げる事項を明らかにし、当該契約の内容を説明する書面を当該契約の相手方となろうとする者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貸金業者の商号、名称又は氏名及び住所

二 貸付けの金額

三 貸付けの利率

四 返済の方式

五 返済期間及び返済回数

六 賠償額の予定 (違約金を含む。以下同じ。) に関する定めがあるときは、その内容

七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内閣府令で定める事項

2 貸金業者は、極度方式基本契約を締結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当該極度方式基本契約を締結するまでに、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に掲げる事項を明らかにし、当該極度方式基本契約の内容を説明する書面を当該極度方式基本契約の相手方となろうとする者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貸金業者の商号、名称又は氏名及び住所

二 極度額 (貸金業者が極度方式基本契約の相手方となろうとする者に対し貸付けの元本の残高の上限として極度額を下回る額を提示す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下回る額及び極度額)

三 貸付けの利率

四 返済の方式

五 賠償額の予定に関する定めがあるときは、その内容

六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内閣府令で定める事項

3 貸金業者は、貸付けに係る契約について保証契約を締結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当該保証契約を締結するまでに、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に掲げる事項（一定の範囲に属する不特定の貸付けに係る債務を主たる債務とする保証契約にあつては、第三号に掲げる事項を除く。）を明らかにし、当該保証契約の内容を説明する書面を当該保証契約の保証人となろうとする者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貸金業者の商号、名称又は氏名及び住所

二 保証期間

三 保証金額

四 保証の範囲に関する事項で内閣府令で定めるもの

五 保証人が主たる債務者と連帯して債務を負担するときは、民法（明治二十九年法律第八十九号）第四百五十四条の規定の趣旨その他の連帯保証債務の内容に関する事項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もの

六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内閣府令で定める事項

4 貸金業者は、前三項の規定による書面の交付に代え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貸付けの契約の相手方となろうとする者又は前項の保証人となろうとする者の承諾を得て、前三項の規定により明らかにすべきものとされる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貸金業者は、当該書面の交付を行つたものとみなす。

（契約締結時の書面の交付）

第十七条 貸金業者は、貸付けに係る契約（極度方式基本契約を除く。第四項において同じ。）を締結したときは、遅滞なく、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に掲げる事項に

ついてその契約の内容を明らかにする書面をその相手方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当該書面に記載した事項のうち、重要なもの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ものを変更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一 貸金業者の商号、名称又は氏名及び住所

二 契約年月日

三 貸付けの金額

四 貸付けの利率

五 返済の方式

六 返済期間及び返済回数

七 賠償額の予定に関する定めがあるときは、その内容

八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内閣府令で定める事項

2 貸金業者は、極度方式基本契約を締結したときは、遅滞なく、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その極度方式基本契約の内容を明らかにする書面をその相手方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当該書面に記載した事項のうち、重要なもの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ものを変更したとき（当該相手方の利益の保護に支障を生ずることがないとき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ときを除く。）も、同様とする。

一 貸金業者の商号、名称又は氏名及び住所

二 契約年月日

三 極度額（貸金業者が極度方式基本契約の相手方に対し貸付けの元本の残高の上限として極度額を下回る額を提示す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下回る額及び極度額）

四 貸付けの利率

五 返済の方式

六 賠償額の予定に関する定めがあるときは、その内容

七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内閣府令で定める事項

3 貸金業者は、貸付けに係る契約について保証契約を締結したときは、遅滞なく、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保証契約の内容を明らかにする事項で第十六条の二第三項各号に掲げる事項（一定の範囲に属する不特定の貸付けに係る債務を主たる債務とする保証契約にあつては、同項第三号に掲げる事項を除く。）その他の内閣府令で定めるものを記載した書面を当該保証契約の保証人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当該書面に記載した事項のうち、重要なもの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ものを変更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4 貸金業者は、貸付けに係る契約について保証契約を締結したとき、又は貸付けに係る契約で保証契約に係るものを締結したときは、遅滞なく、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これらの貸付けに係る契約の内容を明らかにする書面をこれらの保証契約の保証人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当該書面に記載した事項のうち、重要なもの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ものを変更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5 貸金業者は、極度方式保証契約を締結したときは、遅滞なく、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第二項各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当該極度方式保証契約に係る極度方式基本契約の内容を明らかにする書面を当該極度方式保証契約の保証人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当該書面に記載した事項のうち、重要なもの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ものを変更したとき（当該保証人の利益の保護に支障を生ずることがないとき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ときを除く。）も、同様とする。

6 貸金業者は、極度方式貸付けに係る契約を締結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相手方又は当該契約の基本となる極度方式基本契約に係る極度方式保証契約の保証人に対し、これらの者の承諾を得て、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一定期間における貸付け及び弁済その他の取引の状況を記載した書面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ものを交付するときは、第一項前段又は第四項前段の規定による書面の交付に代えて、次に掲げる

事項を記載した書面をこれらの者に交付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貸金業者は、第一項前段又は第四項前段の規定による書面の交付を行つたものとみなす。

一 契約年月日

二 貸付けの金額（極度方式保証契約にあつては、保証に係る貸付けの金額）

三 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内閣府令で定める事項

7 貸金業者は、第一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による書面の交付又は前項の内閣府令で定める書面の交付若しくは同項の規定により第一項前段若しくは第四項前段の規定による書面の交付に代えて交付する書面の交付に代え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貸付けに係る契約又は保証契約の相手方の承諾を得て、前各項に規定する事項又は前項の内閣府令で定める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貸金業者は、これらの書面の交付を行つたものとみなす。

（受取証書の交付）

第十八条 貸金業者は、貸付けの契約に基づく債権の全部又は一部について弁済を受けたときは、その都度、直ちに、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書面を当該弁済をした者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貸金業者の商号、名称又は氏名及び住所

二 契約年月日

三 貸付けの金額（保証契約にあつては、保証に係る貸付けの金額。次条及び第二十一条第二項第四号において同じ。）

四 受領金額及びその利息、賠償額の予定に基づく賠償金又は元本への充当額

五 受領年月日

六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内閣府令で定める事項

2　前項の規定は、預金又は貯金の口座に対する払込みその他内閣府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弁済を受け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弁済をした者の請求があつた場合に限り、適用する。

3　貸金業者は、極度方式貸付けに係る契約又は当該契約の基本となる極度方式基本契約に係る極度方式保証契約に基づく債権の全部又は一部について弁済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当該弁済をした者に対し、その者の承諾を得て、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一定期間における貸付け及び弁済その他の取引の状況を記載した書面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ものを交付するとき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書面の交付に代えて、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書面をその者に交付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貸金業者は、当該書面の交付を行つたものとみなす。

一　受領年月日

二　受領金額

三　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内閣府令で定める事項

4　貸金業者は、第一項に規定する書面の交付又は前項の内閣府令で定める書面の交付若しくは同項の規定により第一項の規定による書面の交付に代えて交付する書面の交付に代え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同項又は前項に規定する弁済をした者の承諾を得て、第一項若しくは前項に規定する事項又は同項の内閣府令で定める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貸金業者は、これらの書面の交付を行つたものとみなす。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① 대부업자는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3호의 대부금액
2. 제6조제1항제4호의 대부이자율
3. 제6조제1항제5호의 변제기간
4.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3항제3호의 보증기간
2. 제6조제3항제4호의 피보증채무의 금액
3. 제6조제3항제5호의 보증의 범위
4.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1.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
2. 그 밖에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 1. 21.]

1. 조문 연혁

개정일	구법	개정법
2020. 6. 9.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① 대부업자는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3호의 대부금액 2. 제6조제1항제4호의 대부이자율 3. 제6조제1항제5호의 변제기간 4.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3항제3호의 보증기간 2. 제6조제3항제4호의 피보증채무의 금액 3. 제6조제3항제5호의 보증의 범위 4.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 2. 그 밖에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1.21]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① 대부업자는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3호의 대부금액 2. 제6조제1항제4호의 대부이자율 3. 제6조제1항제5호의 변제기간 4.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3항제3호의 보증기간 2. 제6조제3항제4호의 피보증채무의 금액 3. 제6조제3항제5호의 보증의 범위 4.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1.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 2. 그 밖에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1.21]

제6조의2는 2009. 1. 21.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에 관한 규정으로 신설되었다. 2020. 6. 9.자 개정으로 제3항 제1호에 종전의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변경하고, 이러한 인증서는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2. 조문 해설

가. 대부계약의 자필 기재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및 변제기간을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연체이자율도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나. 보증계약의 자필 기재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증기간, 피보증채무금액, 보증의 범위에 대하여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연체이자율도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다. 자필 기재 간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의 자필기재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

그 밖에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 및 대부계약 및 보증계약의 자필기재사항에 대한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다. 이때의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⑴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와 법 대부계약 자필기재 사항에 관하여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답변 또는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할 것과, ⑵ 이러한 음성 녹음 내용을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서면확인서의 방법 중 거래상대방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서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대부계약 체결 전에 알려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3. 관련 판례

서울고법 2023. 3. 22. 선고 2020나2032068 판결

[판결요지]

갑이 을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병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병에게 대표이사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하였는데, 정이 병을 통해 갑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받아 근보증서에 갑의 이름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대출서류 등을 무 은행에 접수하였고, 무 은행 직원이 갑에게 전화로 을 회사의 대출과 갑의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한 후 을 회사가 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서와 갑이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의 근

보증서가 작성된 사안이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서 보증의 방식으로 규정한 '서명'은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는데, 근보증서의 갑 명의 부분은 갑의 자필 기재가 아니고, 갑이 무 은행 직원과의 전화 통화 시 '서명은 자필로 직접 작성한 것이 맞으신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였더라도 근보증서의 갑 서명이 자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보증인이 스스로 기명날인을 하지 않고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경솔한 보증행위로부터 보증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민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대행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근보증서의 작성 경위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무 은행은 근보증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정에게 근보증서에 기명날인하는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근보증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은 복멸되었고, 따라서 갑의 보증 의사가 갑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갑과 무 은행 사이에 근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무 은행이 갑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았다거나 갑과 전화 통화 시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이나 정에게 갑을 대리하여 근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갑의 표현대리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

[이유]

3. 판단

(중략)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각 근보증서의 원고 명의 부분이 원고의 자필서명으로 간주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서 보증의 방식으로 규정한 '서명'(기명날인 방식 제외)은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방식을 갖추

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대부업법 제6조의2 제2항, 제3항은 대부업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연체이자율에 대한 보증인의 자필 기재를 요구하면서 위 추가적 자필 기재 사항에 대한 보증인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 경우 해당 사항의 자필 기재가 간주된다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보증계약서상 보증인의 서명이 자필이 아니라면 비록 대부업법상 보증기간 등에 관한 자필 기재 간주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의 서명이 자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근보증서 중 원고 명의 부분은 원고의 자필 기재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록 원고가 SBI저축은행 직원과의 전화 통화 시 '약정서상 서명은 자필로 직접 작성한 것이 맞으신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였더라도 대부업법 제6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각 근보증서의 원고 서명이 자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한편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SBI저축은행 직원은 원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보증채무의 범위, 근보증 한도액, 보증의 유효기간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해 주지 않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므로, 대부업법 제6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보증기간 등에 관한 자필 기재 간주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중략)

마) ① 소외 7은 이 사건 각 근보증서에 이미 날인되어 있던 소외 4의 인영을 삭제한 후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소외 6으로부터 전달받은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는데, 원고에게 이러한 이 사건 각 근보증서를 보여 주거나 위 각 근보증서의 내용을 설명해 준 적이 전혀 없는 점, ② 소외 7은 이 사건 각 근보증서에 원고의 기명날인만을 한 채 보증채무 범위, 근보증 한도액, 보증 유효기간은 공란인 상태로 소외 9에게 위 각 근보증서 등을 교부해 주었고, 소외 9는 이를 SBI저축은행에 그대로 접수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③ SBI저축은행에 제출된 서류 중 원고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서는 원고가 아닌 소외 7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서류이고, 원고가 ○○○ 전체 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주명부는 허위로 보이는 점, ④ 대부업자인 SBI저축은행은 대부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근보증서 중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등을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으로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각 근보증서의 모든 기재사항이 원고 자필이 아닐 뿐만 아니라 SBI저축은행 직원이 원고와 전화 통화 시 보증기간, 보증 범위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원고의 의사를 확인한 적도 없는 점, ⑤ SBI저축은행 직원은 원고와 전화 통화 시 이 사건 각 대출금액과 연체이자율은 설명해 주었지만 그마저도 마치 신규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설명하였을 뿐이고 실제 대환대출이며 사실상 연대보증인이 교체되는 것이라는 내용은 알려 준 적이 없는 점, ⑥ SBI저축은행을 비롯하여 소외 7, 소외 9, 소외 6 등 누구도 이 사건 각 근보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한 네 유형, 보증 유효기간에 관한 세 유형을 원고에게 설명해 주고 원고가 그 선택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⑦ SBI저축은행은 이 사건 각 근보증서의 주요 사항들이 공란인 상태로 접수받았음에도 원고 자필 기명날인인지, 대행 기명날인인지를 확인하고, 후자라면 위임장 등 대리·대행에 관한 구비 서류 등을 확인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SBI저축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SBI저축은행은 이 사건 각 근보증서에 자필서명되었음을 전제로 진행한 것으로 대리·대행 시 요건이나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근보증서의 작성 경위는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대부업자인 SBI저축은행은 이 사건 각 근보증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대부업법의 관련 규정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략)

다) 또한 대부업법 제6조의2 제2항, 제3항에서는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인이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를 자필

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보증인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 자필 기재로 간주한다.'라고, 제21조 제1항은 '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SBI저축은행은 이 사건 각 근보증서의 보증기간, 보증채무의 범위 및 근보증 한도액에 관하여 원고의 자필 기재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의 전화 통화 시에도 위 보증기간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당연히 보증인의 그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SBI저축은행은 대부업법을 위반하였는데 만약 위 규정대로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이 사건 각 근보증계약의 문제점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제18조의2의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2) 나아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의 아래와 같은 규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법리는 대부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대부업법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 확인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6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상 자필로 기재해야 할 중요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위 중요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과잉 대부의 금지)

①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부채상황·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문 연혁

개정일	구법	개정법
2002. 8. 26.	〈신설〉	제7조(과잉대부의 금지)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재력·신용·부채상황 및 변제계획 등을 감안하여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2009. 1. 21.	제7조(과잉대부의 금지)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재력·신용·부채상황 및 변제계획 등을 감안하여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과잉 대부**의 금지) ①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부채 상황·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부업법 제7조 제1항은 "대부업자의 과잉대부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대출 및 보증 현황,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의 체결을 금지하고 있다.[7] 제2항은 대부업자가 대부계약 체결 전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채 상황을 서류로 확인하고 객관적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해서는 안 되며, 수집한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대부업법 제정 당시에도 존재하던 규정이다.

2015년에는 이자율 규제만으로는 서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대부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7조의 구속력을 높였다.[8] 구체적으로는 ① 개정 전에는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고려하기 위하여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준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시행령 제4조의3 제2항에서 '300만 원'을 규정했고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개정이 되었으며,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이루어졌다. ② 개정 전에는 대출 금액이 적으면 소득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있었으나, 개정을 통해 만 29세 이하 청년과 만 70세 이상 고령자는 소득 확인 면제 기준을 축소하거나 생략했다. ③ 이외에도 개정 전에는 대부업자가 제7조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에 불과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과태료 부과 및 영업 정지 처분까지 가능해졌다.

---

7 국회 정무위원회,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803513), 2009.

8 국회 정무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916024), 2015. 7

2. 조문 해설

가. 제7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대부업법 제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시행령 제4조의3(과잉 대부의 금지)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가.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중 어느 하나의 소득증명서류 나. 법 제6조제6항 전단에 따른 증명서로서 부채 잔액 증명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을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신용정보조회(이하 "신용정보조회"라 한다)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보대출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신용정보조회 결과(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②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가. 감사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법인만 해당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다. 제1호나목, 다목 및 마목의 서류

한편,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예외사유로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시행령 제4조의3(과잉 대부의 금지)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금액은 해당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미 대부한 금액의 잔액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① 거래상대방이 29세 이하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② 제1호 외의 거래상대방인 경우: 300만원

나. 제7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대부업법 제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시행령 제4조의3(과잉 대부의 금지)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액은 해당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미 대부한 금액의 잔액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① 거래상대방이 29세 이하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② 제1호 외의 거래상대방인 경우: 300만원

이른바 '쪼개기 대출' 합산 위반 사례[9]

1차 대출: 대학생인 이용자 '갑'에게 200만 원을 대출.
2차 대출: 보름 뒤, '갑'이 생활비 부족을 이유로 추가 대출을 신청하자, 150만 원을 추가로 대출.
대부업체의 과실: 대부업체 심사역은 2차 대출 금액(150만 원) 자체는 300만 원 미만이므로 소득 증빙이 필요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갑'의 아르바이트 급여 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

금융감독원은 "위 건의 경우 2차 대출 실행 시 총 대부잔액이 350만 원(200+150)이 되므로, 대부업법 제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반드시 소득·채무 상황 증명 서류를 징구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즉, 1차 대출시점까지는 300만 원 이하로 소득 증빙서류를 징구할 의무가 없으나, 2차 대출시에는 1차 대출금액을 합산하여 350만 원으로 300만 원을 초과하여 소득 증빙서류를 징구해야 하는 것이다.

---

9 금융감독원, 제재내용공개, "대부업자의 대부계약 체결시 소득·채무상황 증명서류 징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참조.

다. 제7조 제2항 "객관적인 변제능력"의 판단 기준

대부업법 제7조 제2항의 판단기준으로서 "객관적인 변제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므로 일률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여러 판결들의 취지를 고려하면 ① 소득, 재산, 부채상황 등의 현재 재산 상태, ② 신용등급, 기존 대출 이력 등의 신용 상태, ③ 직업, 경력 등을 고려한 장래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피고 F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채권 보전 방법'의 내용, 피고들이 대출 실행 시 대출자 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출 관련 서류 내역, 피고들이 대출자들의 연체 발생 이후에도 무분별하게 대출을 실행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피고 회사들이 대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대출자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대출자의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부실대출을 하였다거나 대출심사를 소홀히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109870 판결).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에 대한 타행신용대출금액이 133,608,000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이 원고의 소득, 재산, 부채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해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위 대출 당시 피고에게 원고의 당시 타은행 대출금액 등을 설명,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 대출이 피고의 여신취급절차나 은행업감독규정을 위반한 점이 있다고 하여 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광주지방법원 2019. 3. 20. 선고 2017가단3043 판결)

한편, 대부업법 제7조 제2항의 변제능력 판단과 관련하여 유사한 법리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채무자의 변제능력으로 '지급불능' 판단 기준을 참고할만 하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1905 결정)

라. "용도 외의 목적"의 판단 기준

대부업법 제7조 제3항의 판단기준으로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법원에서 판단한 사안은 없다. 다만, 대부업법의 취지상 다음과 같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① 다른 대부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② 대부 상품을 광고하거나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나 제3자에게 마케팅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③ 대부업과 관련이 없는 대부업자 내부에서의 정보 활용 행위 등이 그것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라고 규정하는 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이용해야 하고 목적 외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인 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5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정보제공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한편, 위 판결은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개인정보의 취득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 여부, 수탁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여부,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판단해본다면, 대부업자가 금융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대부업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됨은 당연하지만, 금전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다가옴에 따라 행하는 최고 등을 하는 행정처리를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용도외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단순히 물리적으로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를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도 포함됨은 당연하다. 법원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원심이 해석한 의미인 개인정보의 이전(즉, 물리적인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물리적인 이전 외에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부산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2노103 판결).

3. 위반시 효과

가. 위반시 무효 주장 가능 여부

본 조항의 목적은 대부업자가 금융이용자의 신용상황을 파악하여 무분별한 대출을 제한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업자가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대부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 판결도 이를 언급하고 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서 자필기재의무, 과잉대부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대부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러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대부업자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대부업법의 각 규정이 강행법규라거나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 대부계약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7. 4. 선고 2016가합625 판결)

나. 위반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대부업법 제11조의4 제1항은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포함한다)은 대부업등(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과 대부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의 규정 방식에서는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법리 구조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① 대부업자에게 고의 또

는 과실이 존재하고, ② 위법행위(여기서는 대부업법 제7조 제1항, 제2항 위반)가 존재하며, ③ 금융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며, ④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

한편, 대부업법은 민법의 특별규정에 해당한다는 점, 대부업법에서 소멸시효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한다면,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에 대하여 금융이용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부업법 제11조의4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바, 대부업자에게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정과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금융이용자가 제출한 대출 관련 서류 내역과 금융이용자가 대출에 대한 연체가 발생했음에도 이후에도 추가 대출을 해주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즉,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서류들을 대부업자가 제출받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1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대부업자 등은 대부업 등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업무를 함에 있어 대부업법에 따라 반드시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확인할 부채잔액증명서, 신용조회 회보서를 징구하여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부채상황·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18나70129 판결)

다. 행정벌, 형사처벌 등

대부업법 제21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대부업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벌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7조를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제7조 제2항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대부업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제19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앞선 제1항과 제2항의 행정벌과 달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7조의2(담보제공 확인의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제3자의 명의로 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조문 연혁

금융이용자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상 대출금액을 높이기 위해 담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때 담보제공자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부업자에 대하여 기망을 할 수 있다. 즉, 명의도용이나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담보제공자의 의사에 반하는 담보설정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2010년 1월 25일 신설되어 들어온 규정이다.

2. 조문 해설

가.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의 구별

한편, 제7조의2에서 말하는 담보라 함은 '물적 담보'만을 말하는 것으로, '인적 담보'는 제6조 제4항이 적용된다. 인적 담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제3자의 책임재산을 추가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제도를 말하고, 물적 담보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특정한 재화(물건·권리)를 가지고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인적 담보는 제3자가 자신의 전 재산을 통해 본래 채무자의 채무를 전액 변제해야 하는 반면,[10] 물적 담보는 자신이 제공한

10 송덕수, 『기본민법[제4판]』, 박영사(2022년), 328~329면

물건이나 권리를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데에 그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11]

실제로 법원 또한 "대부업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은 대부업자가 보증인과 사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물적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이를 구별하고 있다(의정부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가단102863 판결).

나. 담보제공 확인방식

한편, 대부업법 제7조의2는 "제3자 명의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 대부업자가 그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확인의 구체적 방식(절차·매체·양식)을 법문에서 직접 정하고 있지는 않다.

금융위원회 회신사례(금융위원회-과거회신사례-110122)에 따르면, 이 확인은 원칙적으로 서면을 통하여 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고, 법정 서식은 없으나 민법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담보제공자(물상보증인)의 서면 동의서/확인서를 징구하고 이를 계약관계서류로 보관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한 "구체적 확인방식"으로 정리된다.

인터넷(비대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제3자 명의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 대부업자는 그 제3자에게 직접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법 제7조의2는 확인의 "구체적 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대면 환경에서는 (i) 전자문서·전자서명 기반 확인 또는 (ii) 통화 과정의 음성녹음 등 본인 확인과 의사확인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증빙하는 것이 실무상 핵심이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i) 제3자 명의로 로그인/본인인증 후 전자서명된 "담보제공 확인(동의) 전자문서"를 확보하거나, (ii) 제3자와

11 송덕수, 『물권법[제6판]』, 박영사(2023년), 455~456면

의 통화로 담보제공 의사를 확인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음성녹음을 남기는 형태가 제7조의2 이행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다. 제3자 명의 담보가 제공되면 "채무자(대출신청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앱에서 "동의받았다"고 체크하는 수준은 제7조의2의 문언상 확인 주체·대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위반시 효과

가. 위반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법원은 대부업자가 대부업법 제7조의2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담보제공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제주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10354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사안이므로 당사자의 명칭을 변경하여 위 판결을 논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남성인 금융이용자가 대부업자에게 담보물로 맡긴 이 사건 귀금속은 모두 여성용이었던 점, ② 대부업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금융이용자에게 이 사건 귀금속의 출처에 대하여 물어보았는데, 부인의 것이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대부업자로서는 이 사건 귀금속의 소유권자가 금융이용자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 소유권자인 담보물제공자에게 담보제공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7조의2를 위반한 과실로 담보물제공자에게 이 사건 귀금속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대부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담보물을 제공하려는 금융이용자에게 제3자 소유의 것이 아닌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바, 해당 의무에 과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대부계약 체결당시 육안으로 확인하는 등 경험칙에 따

라 금융이용자의 것이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나. 과태료

대부업법 제21조 제1항 제6의2호에서는 제7조의2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제7조의3(총자산한도)

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이하 "총자산한도"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총자산한도의 산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조문 연혁

대부업법 제7조의3은 2015년 7월 24일 신설된 규정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하여 총자산한도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대부업자의 과도한 차입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대부업자의 총자산이 자기자본에 비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대부업자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2. 조문 해설

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의 의미

대부업법 제7조의3 제1항에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한 규정으로, 그 기준은 대부업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함으로써 제2항 그 자체의 기준만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 제한 기준은 연혁과도 같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다수의 금융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①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②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이거나,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④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⑤ 자산규모 100억 원을 초과하는 자, ⑥ 전자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 등을 말한다.

이 중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규모 100억 원인 경우는 다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제3호에서 말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이고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⑤ 제5호에서 말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6 제3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100억 원을 초과하고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잔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⑥ 제6호에서 "전자적 장치·시스템 등을 통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대부중개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여 대부업을 이용하려는 자의 개인정보와 대부업자등의 연락처를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이란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정보를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한편, 제7호에서는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 있다.

나. 자기자본의 의미

대부업법 제2조 6호에 따르면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는 바, 시행령 제2조의3 제3항에서는 이를 「상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에 결산상 오류에 따른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다. 총자산한도의 의미

시행령 제4조의4(총자산한도) 제1항에 따르면, 대부업법 제7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10배를 말한다. 이를 총자산한도라고 부르는데, 시행령 제4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상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상법」 제30조(상업장부의 작성방법) 제2항에 따르면 "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회계장부란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한 상업장부를 말한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조문 연혁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은 대부업자의 과도한 고금리를 제한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최고이자율은 대부업법 자체에 대한 개정과 더불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단계적으로 인하됐다.

본 조항은 법률 개정이 있을 때마다 매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는 바,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이 매우 크다"는 이익형량을 통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대부업자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인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01헌바211 결정 등)

개정일	법률 개정	시행령 개정	최고이자율	비고
2002. 11. 27.	법률 제6706호 (제정)		연 66%	대부업법 제정
2009. 4. 22.	법률 제8630호 (2007. 12. 21.)	대통령령 제21446호 (2009. 4. 21.)	연 49%	법 상한 연 50%
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8호	연 44%	
2011. 6. 27.		대통령령 제22991호	연 39%	

2014. 4. 2.	법률 제12156호 (2014. 1. 1.)	대통령령 제25293호 (2014. 4. 1.)	연 34.9%	법 상한 연 40%
2016. 6. 4.	법률 제14072호 (2016. 3. 3.)	대통령령 제27338호 (2016. 7. 6.)	연 27.9%	법 상한 연 30%
2021. 7. 7.	법률 제16053호 (2018. 12. 24.)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연 20%	법 상한 연 27.9% (현행)

구체적으로, ① 대부업법의 제정 당시 60~40%대의 고금리는 한 번 채무를 부담하면 이자 지급만으로도 부담이 되어 원금을 갚기 어려운 악순환이 형성됐다. 이에 따라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됨에 따라 시중은행 금리는 낮아지는 반면 대부업 금리만 높다는 비판이 있었다. 조달금리가 낮아진 만큼 대출 금리 상한도 낮추는 것이 시장 논리에 부합한다는 취지도 존재했다.[12]

③ 한편, 지속적인 최고이자율 하향에 대하여 긍정론으로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강조되었지만, 부정론으로 대부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저신용자 대출을 거절하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최고이자율은 낮추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을 정부가 확대 공급하는 보완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13]

---

12 금융위원회·법무부, "'21.7.7.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 합동 보도자료, 2021. 3. 30.

13 이수환·송지민,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1845호, 국회입법조사처, 2021. 8. 5., 2면 참조.

2. 조문 해설

가. 이자제한법과의 차이

이자제한법 제7조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즉, 등록된 대부업자에게는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반면, 미등록 대부업자나 일반인 간의 금전대차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

이외에는 두 법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많다. 우선 두 법 모두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은 무효로 보고, 이미 지급된 초과이자는 원본에 충당 후 반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이외에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의 수위에는 차이가 있으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다(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본질적으로 금전소비대차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는 두 법은 최고이자율 제한 및 위반시 제재라는 핵심기능을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하고 대부업법에서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대부업법은 제8조에서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있는 반면, 이자제한법은 제2조에서 연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서민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법이 오히려 시행령을 통해 고금리 대부를 허용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업법은 이자제한법과 마찬가지로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연 100분의 20의 이자율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의미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기업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것을 의미한다. 즉,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되고,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는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별표 3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	K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정의에 부합하여야 하는 바, 법원은 "입법취지와 위 각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형식적인 사업자등록증만 갖추었을 뿐 상시 근로자, 자본금 등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바 없고, 실제로 영업을 영위하지도 아니하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전지방법원 2009. 7. 2.

선고 2008노2332 판결). 즉, 형식적인 사업자등록증의 존재 여부가 아닌 실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조직체에 해당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위반시 효과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 전부에 대한 위반 여부가 문제 되는 것이므로, 이하에서 살펴보는 제8조 각 항 위반시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문 연혁

개정일	구법	개정법
2002. 8. 26.	〈신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다만 당해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3. 31.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다만 당해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다만, 당해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 21.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다만, 당해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다만, 당해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이자 삭제〉**

2. 의의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은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9746 판결). 이에 따라 이자로 간주되는 영역을 "명칭이 무엇이든"이라는 표현을 통해 원칙적으로 포괄적 간주 조항을 두고 있다. 예외조항으로 시행령 제5조 제4항에서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을 들고 있다.

3. 조문 해설

가. 이자의 변형으로서 경개와 준소비대차 계약

1) 준소비대차와 경개의 개념

준소비대차란 당사자가 소비대차에 의하지 않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하고(민법 제605조), 경개란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500조). 즉, 준소비대차는 신채무와 구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어 구채무에 부수하는 담보권과 항변권이 신채무를 위하여 존속하는 반면, 경개의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채무에 부수하는 보증이나 담보권은 소멸하고 신채무만 존속한다.

경개와 준소비대차 구별이 모호할 때, 대법원은 "기존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약정을 경개로 볼 것인가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

2) 대부업법 제8조 적용 여부

비록 이자제한법과 관련된 판례이지만, 대법원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이러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23506 판결). 즉, 준소비대차와 경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제한하는 본 법의 목적에 따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무효로 본다.

위 판례의 사실관계를 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원고가 피고에게 2008. 1. 21. 1,400만 원, 2008. 1. 25. 3,6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08년 3월부터 5,000만 원에 대하여 월 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운영하던 이앤아이무역 주식회사(이하 '이앤아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2008. 3. 2.부터 이 사건 약정 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39,96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2010. 1. 31. 당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원금을 5,000만 원, 지연이자를 985만 원으로 확인하면서 이를 2010. 3. 18.부터 분할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정리했다. 즉, 당사자 간에 체결한 금전대차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새로운 방식의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동일한 금전대차의 연장선으로 본 것이다.

나. 간주 이자와 관련된 판례

대법원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돈을 징수하여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9746 판결). 대법원 판결로 드러난 예시는 다음과 같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위반시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바, 아래에서 등장하는 대법원 판결의 피고인은 대다수가 대부업자임을 감안한다.

1) 중개수수료

한편, 시행령 제5조 제4항에서 예외로 들고 있는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 등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대부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채무를 금융이용자에게 전가시키는 경우는 모두 이자에 해당된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직접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것이 대부업자와 전혀 무관하게 지급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업자로 하여금 채무자로부터 직접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도록 하고 자신은 대부중개업자에게 아무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것을 채무자에게 전가시킨 것으로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대가라고 할 것이어서,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이자에 해당하고, 대부업자가 그만큼의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2) 투자금 명목의 반환약정

채무자들인 금융이용자가 대부업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대출금을 전부 반환, 즉 거래의 최종 종료일로부터 100일이 경과해야만 투자금을 대부업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

어 대출을 연장하거나 추가하여 받은 경우에는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없었던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대부업자가 채무자로부터 징수한 돈을 나중에 채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반환 조건이나 시기, 대부업자의 의사나 행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약정이 대부업법의 제한 이자율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반환의사가 없거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징수한 돈은 실질적으로 대부업자에게 귀속된 이자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9746 판결).

3) 강사료 등 사례비

피고인(대부업자)이 D(금융이용자)을 위하여 'D의 주식회사 F 등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부 채무 관련 초과이자의 계산 및 법률 검토, 세무 상담, 자금대출 및 부동산업자 소개 등'을 해주고, 이에 대한 대가인 사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대부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6. 11. 30.경 D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2016. 12. 27.경 D이 근무하는 학원의 강사료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2017. 1. 31.경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절차 등을 진행하였는데, 위와 같이 D이 거액의 대부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 강사료 및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등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조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사례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부와 무관한 사례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1. 선고 2018고단5201 판결).

4) 차량 관리비, 주차비 등 담보물 보전비용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소유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D 제니시스승용차량을 담보로 7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법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선이자 명목으로 49만 원을

공제하여 대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대출 당시 대출이자를 월 3.25%(연 39%)로 정하였고, 판시 각 차량의 담보물 보전비용(차량 관리비용, 주차비 등)을 월 3.75%로 정한 것이므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담보권 설정비용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위 비용들을 담보권 설정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제주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4고정44 판결). 즉 간주이자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5) 별개 약정에 따른 위약금 대출 약정

금융이용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물상보증이나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이자와 물상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이자는 별개의 계약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를 합산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압축하여 살펴본다면, 피고 A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대출을 요청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 A(차주), B(물상보증인), C(연대보증인)과 사이에, 피고 A에게 원고가 20억 원을 이자 연 10%로 대여하고,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B 및 피고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 발행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하며, 피고 C는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 등의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 사건 대출약정의 차주는 피고 A이고, 이 사건 예약상 원고의 예약완결권 행사에 따라 주식의 매도의무를 부담하는 이 사건 예약의 당사자는 피고 C로서 그 당사자가 다르다. 이 사건 확약에 따라 피고 B도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나, 피고 B가 부담하는 채무는 이 사건 대출약정상 채무가 아니라 피고 C가 이 사건 예약 및 확약을 위반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약금 지급의무에 대한 연대채무이고, 이 사건 확약 제3항에 따라 피고 C가 부담하는 위약금 지급의무는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가합601904 판결).

6) 중도상환수수료

대법원은 대부업법 사안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된 내용은 법 제8조 제4항 해석에서 추가 설명한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1. 조문 연혁

개정일	구법	개정법
2018. 12. 24.	〈신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2. 의의

대부업법 제8조 제3항은 2018. 12. 24. 법률 제16089호로 신설된 규정으로, 대부업자가 연체이자를 과도하게 부과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3. 관련 판례

해당 조항에서 핵심이 되는 사안은 개정 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적용되던 이자율

에 대하여 대부업법이나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이자율이 낮아진 경우 개정 전과 후의 어떤 이자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이 사건 대부계약 체결일인 2017. 5. 11. 시행 중이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3항, 구 대부업법 시행령(2017. 8. 29. 대통령령 제28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제한 최고 이자율 또는 연체이자율은 연 27.9%이고, 그 후 위 법령 조항들은 2017. 11. 7. 대통령령 제28420호로 개정(2018. 2. 8. 시행)되어 제한 최고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이 연 24%로 변경되었으나, 위 대통령령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은 그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대부계약 체결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제한 최고 이자율과 연체이자율 범위 내에서 약정한 연 27.9%의 비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21가단104662 판결). 즉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한 대부업법상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1. 조문 연혁

개정일	구법	개정법
2002. 8. 26.	〈신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③ 대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이를 무효로 하며, 채무자가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09. 1. 21.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③ 대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이를 무효로 하며, 채무자가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③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18. 12. 24.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③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2. 의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무효로 함으로써 채무자가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조항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업자와 금융이용자 간에 대부계약 체결로 위 조항을 무력화 할 수 없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며, 만약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닌 초과되는 이자율만 부분적으로 무효로 된다.

3. 관련 판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업법은 법령상 최고 이율에서만 이자제한법과 차이가 있을 뿐, 그 제도의 목적과 취지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제시하는 판단 기준 중 이자제한법에 대한 판결은 대다수 대부업법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자제한법과 관련된 주요 판례를 살핀다.

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 판결

법원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자제한법의 규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정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6968 판결 참조). 즉, 사인 간의 계약으로 이자제한법상 인정되는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나.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판결

중도상환수수료란 차주(금융이용자)가 대출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한 경우, 대주(대부업자)가 입게 되는 자금 운용의 기회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차주에게 부과하는 금전을 말한다.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자제한법에서는 간주이자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반면, 대부업법에서는 간주이자로 적용된다고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은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채권자가 다른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대부업법 사안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참조, 이하 '대부업법 판례'라 한다). (…) 대부업법 판례는 어디까지나 대부업법의 해석에 기초한 것인데, 대부업법은 입법 목적과 경위, 내용과 체계 등 여러 면에서 이자제한법과 구별된다. 또한 대부업법 판례는 중도상환수수료 규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정책적 결단'의 속성이 강한데, 이자제한법에 그와 같은 정도의 정책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대부업법 판례는 이자제한법 사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대부업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이자율 산정'과 관련한 법령해석 질의회신(회신일 2022. 1. 17.)에서 채무자가 대출금을 약정기간보다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여신금융기관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실제 대출 사용기간 기준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율로 환산한 후 약정이자 및 다른 간주이자 등과 합산하여 이자율 위반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고(실 대출기간 기준 안분방식), 중도상환수수료의 대출 사용기간에 따른 이율은 약정이자, 연체이자, 수수료 등과 합산되어 계산되므로 약정이율이 연 20%인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추가로 받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대부업자가 조기상환수수료까지 합산한 실질 이자율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기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지급 의무가 없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금융감독원이 안내하고 있다.

1) 선이자 중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부분

"피고인들(대부업자)이 갑(금융이용자)에게 대부기간을 3개월로 하여 돈을 대부하면서 1개월분 선이자를 공제하였는데 5일 후 약정 대부원금 전액을 변제받고도 선이자로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지 않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제한 선이자가 실제 대부기간에 대한 구 대부업법 소정의 제한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초과하였다고 보면서도 그 초과 부분은 이자가 아닌 중도상환수수료로 받은 것이므로 구 대부업법 소정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에는 구 대부업법상 중도상환수수료의 간주이자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판결 사례〉

대부업자가 2026. 1. 1. 금융이용자에게 원금 100만 원, 상환일 2026. 3. 1. 월 이율 1%로 하고 1개월분 선이자를 공제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했는데, 금융이용자가 2026. 1. 6.에 원금 100만 원을 상환한 경우

1. 대부업자가 상환받은 이자: 1개월 분 선이자 1만 원 (30일 간의 이자)
2. 실제 허용되는 돈: 금융이용자가 돈을 쓴 5일 간의 법정이자 1,666원
3. 판결 결과: "30일 간의 선이자 – 5일 간의 법정이자" = "25일 간 이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2) 원리금 분할 상환시 이자율 계산 방법 관련 판결

대부계약 체결시의 원금을 기준으로 하여 매달 이자가 발생하는데, 금융이용자가 대부업자에게 원리금(원금+이자)을 매달 일정액 상환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이자율(이자/원금)의 분모에 해당하는 원금이 최초 원금을 말하는 것인지, 분할 상환하면서 액수가 작아진 원금을 말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대부업을 영위하는 피고인(대부업자)이 갑(금융이용자)에게 일수로 대출한 후 원리금을 분할 상환받으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고 하여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실제로 분할 상환받은 원리금별로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를 따져 보지 아니한 채, 차용일부터 최종 분할 상환일까지 상환된 이자의 총액을 산출한 다음 이에 관하여 최초 원금과 그 기간의 총 일수에 기초하여 산정한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도7059 판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원금 분할 상환시 이자율 계산 방법 관련 판결 사례〉

대부업자가 2026. 1. 1. 금융이용자에게 원금 100만 원, 상환일 2026. 10. 1. 월 이율 1%(1만 원)로 하고 1개월분 선이자를 공제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했는데, 금융이용자가 매달 11만 원을 상환한 경우

회차	남은 원금	상환 금액	원심법원 이자율	대법원 이자율
1	100만 원	11만 원	월 1%	월 1%(연 12%)
2	90만 원	11만 원	월 1%	월 1.1%(연 13.2%)
· · ·	· · ·	· · ·		
9	20만 원	11만 원	월 1%	**월 5%(연 60%)**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문 연혁

개정일	구법	개정법
2009. 1. 21.	〈신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④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18. 12. 24.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④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의의

「민법」은 제742조(비채변제)에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바, 이를 근거로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상 허용되는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체결했을 때 금융이용자인 채무자가 이를 알고도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지급액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금 상환으로 간주하기 위한 조항이다.

제4항에 따라 초과 이자계약이 무효가 되면, 제5항에 따라 실제로 지급된 초과 이자의 처리가 이루어진다.

3. 관련 판례

법원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은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한 약정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변제가 비채변제 내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강행법규인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판시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나80921 판결).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은 대부업법 제8조 제5항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대부업법에도 그대로 유추적용될 수 있는 논리이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1. 조문 연혁

개정일	구법	개정법
2009. 1. 21.	〈신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2016. 3. 3.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2. 의의

선이자의 모수가 되는 '원본'을 얼마로 볼 것인가에 대한 학설 간 대립이 있다. 약정액 기준설은 당사자 간의 합의(계약)를 중시하여, 계약서상에 기재된 대출금액(약정액)을 원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고, 실제 수령액 기준설은 선이자를 공제한 후 채무자가 실제로 손에 쥔 금액(교부받은 금액)만을 원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대부업법 제8조 제6항은 실제 수령액 기준설의 입장을 입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명목상의 원금

을 부풀려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을 우회하려는 탈법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이다.

3. 관련 판례

대부업법 제8조 제6항 선이자 관련 조항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입법화 한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기본적인 법리로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후 대부하였는데 선이자 산정의 대상기간 또는 약정 대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대부원금이 상환된 경우, 선이자가 구 대부업법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는 그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부일부터 실제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그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또는 여신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부제공자"라 한다)은 제8조, 제11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대부제공자에게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대부계약 과정에서 대부제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거래상대방에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이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또는 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복제물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는 행위
   나. 인신매매, 신체의 상해 또는 포기, 장기기증, 강제취업, 강제노동 등 개인의 신체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폭행·협박·체포·감금·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으로서 대부계약의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3. 대부계약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4.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부이자율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대부제공자의 거래상대방은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자등의 자격을 사칭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대부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의 교부가 면제 또는 대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에 제6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실제와 달리 허위로 기재된 경우

1. 조문 연혁

채무자의 인권은 오랫동안 법률가들에게도 낯선 영역이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빚을 진 사람, 그것도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강하게 작동하였고, 그들이 겪는 고통은 스스로 감수해야 할 대가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채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는 결코 사적 영역의 문제로 방치될 수 없다.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은 채무자의 경제적 자유를 넘어 인격권, 신체의 자유, 나아가 생명권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인권 유린 행위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불법사금융 문제는 이미 통제 불능의 수준에 이르렀다. 경찰청이 국회(한병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14] 불법사금융 범죄는 2021년 1,057건에서 2022년 1,472건, 2023년 1,749건, 2024년 2,735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3년 사이 범죄 발생 건수가 159% 급증한 것이다. 심지어 최근 2025년 상반기 기준만으로 이미 전년도 발생 건수에 육박하고 있다. 더욱이 이 수치는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건만을 집계한 것이므로,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14 2025. 9. 4. 한병도 의원실 보도자료 참조.

〈최근 5년간 불법사금융 범죄 검거 현황〉

(단위: 건, 명)

구분	계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21년	1,057	785	1,684	675	523	1,202	382	262	482
'22년	1,472	962	1,672	914	657	1,083	558	305	589
'23년	1,749	1,137	1,805	977	702	1,265	772	435	540
'24년	2,735	1,571	2,925	1,580	1,001	2,218	1,155	570	707
'25년 6월	2,588	1,692	1,379	1,704	1,334	946	884	358	433

(자료: 경찰청)

검거 현황은 법 집행의 한계를 드러낸다. 2024년 기준 불법사금융 사건 2,735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1,571건이 검거되어 검거율은 57%에 그쳤다. 절반에 가까운 범죄자들이 검거되지 않은 채 계속 영업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검거된 사건에서도 처벌 수위는 낮았다. 법무부가 2025년 발표한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처리현황에 따르면, 2024년 수사기관이 접수한 채권추심법 관련 사건 중 구속기소된 피의자는 6명으로 0.8%에 그친다. 대부업법 위반 사건의 구속기소 피의자는 2.9%(97명)로 3%가 채 되지 않는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2022년 4년간 대부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 중 실형은 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약 39%를 차지했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이 형사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범죄를 지속할 수 있는 구조적 배경이다. 이는 불법사금융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의 규모와 양상이다. 불법추심 실태조사를 위해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민간 상담기관 '불불센터'[15]가 160명의 피해자를 상담

15 불불센터는 2025년 3월 5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불법사금융 및 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이다. 이 센터는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주도로 출범했으며, 롤링주빌리,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의 시민단체와 전문가 단체가 연대하여 운영을 맡았다.

하였고 이 중 70명에 대하여 심층 상담한 결과, 1인당 이용한 불법사채는 평균 17건에 달했고, 평균 이자율은 연 7,882%였으며, 최고 이자율은 801,783%에 이르렀다. 이는 더 이상 대출이 아니라 착취이며, 경제 활동이 아니라 범죄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겪는 인권 침해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이다. 경제적 착취는 기본이고, 나체사진이나 자위 영상을 담보로 요구하는 성적 착취, 24시간 이어지는 전화와 문자를 통한 심리적 고문, 가족과 직장에 대한 협박, 그리고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생명권 위협까지, 피해는 전인격적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대부업법 제8조의2는 2025. 1. 21. 신설된 조항으로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대부계약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개정법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예: 연 60% 초과, 성착취·폭행·협박 등)에 한해 원금·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고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도록 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하였다. 형사처벌만으로는 억제 효과가 없다는 판단 아래, 불법사금융 영업의 경제적 동기 자체를 차단하려는 입법적 결단이었다.

2. 조문 해설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은 대부계약의 효력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른바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체결한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다. 제8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대부계약은 무효이며, 대부제공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고, 거래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는 반환해야 한다. 한편, 제8조의2 제2항에서는 대부계약의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가.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부계약 과정에서 대부제공자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거래상대방에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이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된다.

가목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또는 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복제물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고, 마찬가지로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어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를 처벌하며,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위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한 경우 처벌한다.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은 이보다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고 있다. 즉, 금융이용자의 사정을 이유로 금융이용자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들에 동의할지라도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고, 자발적 의사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행위들을 강요당한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대부업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같은 조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인신매매, 강제취업 등은 처음부터 금융이용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요되는 사안이므로 제1호 가목과 같은 표현이 들어가지 않으나, 인신매매죄(형법 제289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나.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폭행·협박·체포·감금·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으로서 대부계약의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된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이를 구체화하여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즉,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는 폭행, 협박, 체포, 감금, 위계, 위력 등으로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는 바,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는 이를 그대로 구조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에 위배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되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명칭
3.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제10조(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3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00조제1항제3호

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업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제9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라.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

대부업법 제8조의2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경우 무효로 본다고 규정한다. 동법 제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은 20%에 해당하므로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을 60%로 정하여 사실상 불법대부업시장을 소멸시키기 위한 핵폭탄급 조치가 취해졌다. 입법 취지는 명확하다. 형사처벌만으로는 불법사금융을 억제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검거율은 57%에 불과하고, 검거되더라도 구속률은 0.8 ~ 2.9%이며,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실제 처벌 수위는 낮다. 범죄자들은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현실이 정착되어 영업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쌓이면 범죄를 저지를 동기가 사라진다. 2025년 개정법은 이러한 논리에 기초하여 불법사금융 영업 자체를 경제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예상되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불법사금융 시장 진입 유인이 대폭 감소한다. 이자는커녕 원금도 받지 못하는 영업은 사업으로서 의미가 없다. 불법추심으로 사실상 회수한다 해도, 법적 보호가 전혀 없는 불안정한 구조이다. 신규 진입자들은 위험 대비 수익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이다. 둘째, 기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가 용이해진다. 채무자는 대부업법을 근거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불법사금융업자를 특정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것만으로도 피해자 구제의 가능성은 크게 높아졌다.

사. 대부업법 제8조의2 제2항

대부업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는 자격 사칭을 규정하는 바, 사칭의 일반적인 의미에 따라 판단하면 실제로는 여신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등이 아니면서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무등록 대부업자가 등록 대부업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제2호는 계약서 미교부를 규정하는 바,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대부계약서에는 대부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계약일자, 대부금액, 최고이자율,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계약서 및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호는 허위 기재를 규정하는 바, 제6조의2 제1항은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을 규정하고, 제2항은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등을 규정한다. 허위의 기재란 일반적 의미 의미에 따라 판단하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실제 대부이자율은 연 24%인데 계약서에는 20%로 기재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① 대부업자는 등록증,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2. 12. 11.〉

1. 조문 연혁

개정 연혁	2002. 8. 26. 법률 제6706호	2019. 1. 25. 법률 제9970호	2012. 12. 11. 법률 제11544호
내용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 등) 대부업자는 대부이자율·이자계산방법·변제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영업소마다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대부계약의 체결이 거래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 등) ① 대부업자는 대부이자율·이자계산방법·변제방법·**연체이자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영업소마다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 등) ① 대부업자는 등록증·대부이자율·이자계산방법·변제방법·**연체이자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영업소마다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2002. 8. 16. 대부업법 제정 당시 제9조는 "대부업자는 대부이자율·이자계산방법·변제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하여야 하며 대부계약의 체결시 거래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었다.

2010. 1. 25. 법률 제9970호로 일부개정된 대부업법 제9조 제1항은 연체이자율이 대부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대부계약의 체결 시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등에 연체이자율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도록 하였다. 즉, 법률 제9970호로 일부개정된

대부업법 제9조 제1항은 “대부업자는 대부이자율·이자계산방법·변제방법·연체이자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하여야 하며 대부계약의 체결시 거래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일부개정된 대부업법 제9조 제1항에는 영업소마다 게시하여야 할 사항에 ‘등록증’이 포함되었다. 대부업 등록증은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완료한 대부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교부받는 증서로, 법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영업소마다 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한 것은 대부업자의 등록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가 합법적인 대부업체를 식별하고,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2. 조문 해설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증,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대부업 등록번호,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하여야 한다.

등록증은 대부업법상 대부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마친 후 발급받는 증명서를 가리킨다.

대부이자율은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받는 이자의 비율을 가리킨다.

이자계산방법은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산출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대부업법에서는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선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하기에(대부업법 제8조 제6항) 이자 계산 방법 등이 공시될 때 이와 같은 점도 명시되어야 한다.

변제방법은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구체적 방식을 가리킨다. 주요 변제 방법으로 일시상환, 분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등이 있다.

연체이자율은 채무자가 약정된 기한 안에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가리킨다.

영업소는 사회통념 및 상법체계상 영업활동의 중심이 되는 일정한 장소를 가리키며, 영업활동의 지휘, 명령이 이루어지고 영업의 목적이 되는 기본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 대부를 업으로 삼는 자는 자신의 영업소마다 대부업법 제9조 제1항에 기재된 중요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대표 판례

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2. 19. 선고 2013고단1275 판결

대부업에 해당하려면 ① 광고나 소개를 통하여 ② 구비된 일정한 장소에서 ③ 중개수수료와 ④ 일정 이자율을 받고 대출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①②③에 해당하지 않기에 대부업이 아니라는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안

법원은 '대부업법에 의하면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족하고, 피고

인 주장의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구비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또한 대부업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는 '대부업자는 등록증,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등 중요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하여야 하고, 대부조건 등을 표시 또는 광고할 경우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광고를 해야만 대부업자인 것도 아니다.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불법 채권추심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이를 위반했을 경우 동법에 의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을 뿐, 위와 같은 사항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부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위반 시 제재 규정

대부업법 제21조 제1항은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제7호)'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②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조문 연혁

개정 연혁	내용
2005. 5. 31. 법률 제7523호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 등) ②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역 5.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012. 12. 11. 법률 제11544호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 등) ②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역 5.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7. 4. 18. 법률 제14820호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 등) ②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역 5.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요건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0. 2. 4. 법률 제16957호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 등) ②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역 5.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요건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05. 5. 31. 대부업법이 법률 제7523호로 일부개정되며 제9조 제2항이 신설되었다. 신설된 대부업법 제9조 제2항은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규정이 신설된 것은 법 시행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2012. 12. 11. 대부업법이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며 대부업자들은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광고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2017. 4. 18. 법률 제14820호로 일부개정된 대부업법 제9조 제2항에는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광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대부상품의 표시 및 광고에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소비자의 혼란이 초래되고, 대부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개인신용등급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향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대부조건 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에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과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문구를 포함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2020. 2. 4. 대부업법이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되며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과 관련한 경고문구가 포함되었다. 2020. 2.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16957호로 전부개정되며 개인신용평점이 도입됨에 따라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신용등급 외에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을 설명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법률이 개정된 것이다.

2. 조문 해설

대부업법 제9조 제2항은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

우에는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대부조건

'대부조건 등'에서 '대부'의 의미에 관하여는 대부업법 제2조 제1항에서 '금전의 대부'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다음으로 '조건'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 내놓는 요구나 견해'를 의미한다고 이해되고, 이 법률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는 대부업법 제9조 제1항이 열거한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이 여기에 속한다고 해석된다(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67 결정 참조).

나. 표시 또는 광고

'광고'의 의미에 관하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따른다고 정의하고 있어 사업자가 하는 일체의 광고가 아닌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광고로 제한됨은 명백하다. '대부조건 등에 관한 광고'는 '대부업자가 하는 일체의 광고'가 아니라 '대부계약에 대한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광고'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67 결정 참조).

대부업법 제9조 제2항이 대부업 광고시 필수적으로 표시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대부업체가 광고하는 대부조건,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 등에 대해 거래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이용자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다. 대부업법 제9조 제1항과 제9조 제2항의 관계

대부업법 제9조 제1항은 영업소에 일정한 사항을 표시하는 한편, 대부업법 제9조 제2항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광고에 일정 사항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두 규정 사이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대부업법 제9조 제1항은 영업소를 방문하는 일반인이 대부업자 및 대부조건 등에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대부업자의 영업소 게시의무를 규정한 것인 반면, 대부업법 제9조 제2항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표시 또는 광고를 할 경우 포함할 사항을 정하는 것이기에, 대부업자가 대부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영업소에 게시할 경우 대부업법 제9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위반 시 제재 규정

대부업법 제21조 제1항은 '제9조 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제8호)'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3. 대표 판례 등

가.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67 결정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하는 경우 명칭, 대부이자율 등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8호 중 '제9조 제2항'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심판대상조항인 대부업법 제9조 제2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에 명칭, 대부이자율 등 일정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대부조건 등'에서 '대부'의 의미에 관하여는 대부업법 제2조 제1항에서 '금전의 대부'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다음으로 '조건'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 내놓는 요구나 견해'를 의미한다고 이해되고, 이 법률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는 대부업법 제9조 제1항이 열거한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이 여기에 속한다고 해석된다. 끝으로 '등'은 '기타'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이러한 표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기술상 일반적으로 용인된다(헌재 2004. 2. 26. 2003헌바4, 판례집 16-1, 287, 300). 대부업법의 입법취지와 법 제9조 및 그 시행령 제6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타에 포함될 사항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자가 광고에 포함시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대부업법과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광고'의 의미에 관하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따른다고 정의하고 있어 사업자가 하는 일체의 광고가 아닌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광고로 제한됨은 명백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의 '대부조건 등'은 대부업자가 자신의 용역에 관한 대부계약을 소비자와 맺기에 앞서 내놓는 중요한 요구와 대부계약 체결 시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자에게 요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가리키는 것으로, 어느 경우든 '대부계약'을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의미하는 '대부조건 등에 관한 광고'는 '대부업자가 하는 일체의 광고'가 아니라 '대부계약에 대한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광고'를 의미한다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843 판결

원고 대부업자가 2007 4.경부터 2007. 5.경까지 자신의 홈페이지 FAQ란에 신용등급에 대한 설명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어느 금융권에 대출신청을 하셔도 신용조회를 하게 되면 기록에 남게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 1건 조회가 되었다 해서 바로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였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FAQ가 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해당한다고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사안

이에 대하여 법원은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광고는 '사업자 등이 상품 등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등의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가 정하고 있는 사항을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상위 항목 아래의 FAQ라는 웹페이지에 게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대출신청을 하면 신용조회를 하는지,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에 관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대부업자인 원고와 거래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3.자 2011라822 결정

항고인인 대부업자가 야구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타석 뒤쪽 광고판에 전화번호, 로고, 서비스표만을 표시하고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연체이자율, 추가비용 등을 표시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서울중구청장이 대부업법 제9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 사안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일반인이 이 사건 서비스표를 통하여 그것이 대부업체에 관한 것

임을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민에 대한 신속한 금융이라는 요구에 부응하여 발전한 대부업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금융이용자의 상당수가 대부업체를 직접 방문하기보다는 전화를 통하여 대부업체와 손쉽게 거래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서비스표와 전화번호를 광고판에 게재한 이 사건 광고는 '항고인의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항고인에 관한 사항을 광고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면서 "① 대부업법은 대부업과 관련한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자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등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점(대부업법 제1조), ② 대부업법 제9조 제2항, 제9조의 2, 제9조의 3 등 광고에 관한 규정은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자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인 점, ③ 대부업법 제9조 제2항은 2005. 5. 31. 법률 제7523호로 신설된 규정인데, 위 법률개정 당시 있었던 개정법률안에 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공청회 관련 자료 중 금융감독원 비제도금융 조사팀장의 진술 요지 부분 가운데 의원제기 이슈관련 의견 제5항(공청회 자료 34, 35면)의 제목은 "불법광고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무등록업자 및 허위광고를 금지하고, 광고시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포함토록 의무화(신설)"이고 그 구체적 내용은 '대부업체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업체 이용자의 76%가 광고를 통해 대부업자를 알게 되는데, ㈎ 광고에 연 이자율, 부대비용, 상호, 대부업 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고, ㈏ 무등록자의 광고, ㈐ 불법내용의 광고가 행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인바, 위 공청회 자료에 비추어 보면 결국 대부업법 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대부업자가 통상의 광고를 할 때 연 이자율, 부대비용, 상호,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이므로 대부업자가 광고를 할 때에는 항상 이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하자는 취지이고,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에만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볼 것인 점(한편 위 공청회 자료에서 함께 문제가 된 '무등록자의 광고'는 대부업법 제9조 제2항 신설 당시 대부업법 제9조의2를 신설하여 규율하게 되었고, '대부업자의 허위·과장광고'는 2009. 1. 21. 법률 제9344호에서 대부업법 제9조의 3을 신설하여 규율하게 되었다), ④ 이 사건 서비스표와 전화번호만의 광고가 허용된다면, 금융이용자는 대부이자율, 추가비용 등 대부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도 접하지 못한 채 전화를 통하여 항고인으로부

터 대부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항고인으로서는 굳이 대부업법 제9조 제2항이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부조건에 관한 광고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대부조건 등에 관한 사전 인지 기회를 부여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대부업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이 무의미하게 되는 점, ⑤ 이와 같이 전화를 통한 대부가 가능한 이상 항고인의 전화번호를 포함한 이 사건 광고가 단순히 항고인의 존재사실 자체에 대한 광고, 항고인의 이미지에 대한 홍보 광고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⑥ 대부업법의 제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부업자가 광고를 할 때 항상 대부업법 제9조 제2항에 정해진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른 사업자들과의 관계에서 평등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하는 등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거나, 대부업자의 옥외광고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옥외 광고를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대부업법 제9조 제2항 소정 사항을 포함시켜 광고를 할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법 제9조 제2항의 '대부조건 등'은 '대부조건 기타 대부조건과 유사한 사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표나 전화번호 등 '대부회사 자체에 대한 사항'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대부업법 제9조 제2항은 대부업자가 광고를 할 경우 항상 대부업법 제9조 제2항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③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3. 중개를 통하여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조문 연혁

개정 연혁	내용
2009. 1. 21. 법률 제9344호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③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3. 중개를 통하여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그 밖에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2. 12. 11. 법률 제11544호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③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3. 중개를 통하여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7. 4. 18. 법률 제14820호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③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3. 중개를 통하여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0. 2. 4. 법률 제16957호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③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3. 중개를 통하여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09. 1. 21. 대부업법이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며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광고 규제가 신설되었다. 대부중개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대부중개업 등록제도가 신설된 상황에서, 대부업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부중개업자를 포함해 대부업자'등'의 상호와 광고에 관한 규제가 신설된 것이다. 대부업법 제9조 제3

항은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중개를 통하여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그 밖에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012. 12. 11. 대부업법이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며 대부중개업자들은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광고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2017. 4. 18. 법률 제14820호로 일부개정된 대부업법 제9조 제3항에는 대부중개업자등으로 하여금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광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대부업법 제9조 제3항 개정은 동시에 개정된 대부업법 제9조 제2항의 개정 이유 및 목적과 동일하게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신용등급 하락가능성 문구를 포함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2020. 2. 4. 대부업법이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되며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가능성과 관련된 경고문구가 추가되었다. 이 역시 동시에 개정된 대부업법 제9조 제2항의 개정 이유 및 목적과 동일하게 개인신용평점 개정에 발맞추어 해당 경고 문구를 포함하기 위한 것이다.

2. 조문 해설

대부업법 제9조 제3항은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중개를 통하여 대부할 대부업자의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및 등록번호,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수수료율, 채무의 조기상환 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가. 대부중개업자

대부업법 제9조 제3항의 대부중개업자란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가리킨다. 대부중개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실질적으로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대부조건 등 및 광고

대부조건 등 및 광고는 대부업법 제9조 제2항의 내용과 동일하다.

다. 위반 시 제재 규정

대부업법 제21조 제1항은 '제9조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제8호)'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④ 대부업자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여야 한다.

1, 조문 연혁

2009. 1. 21. 대부업법이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며, 대부업법 제9조 제4항이 신설되었다 당시까지는 대부업자가 광고하는 경우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이자 외의 추가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일반인이 알게 어렵게 작성하는 문제가 있어 대부업자등이 광고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등 광고 중 중요 사항이 일반인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부업자등의 상호와 광고에 대한 규제를 신설한 것이다. 대부업법 제9조 제4항은 "대부업자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제2항 각호의 사항 또는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제정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2, 조문 해설

대부업법 제9조 제4항은 대부업자 등이 대부업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광고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을 따르도록 한다.

가. 대부업자 등

대부업자등은 대부업법상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를 가리킨다.

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고를 하는 경우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업법 제9조 제2항,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광고를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다. 일반인이 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은 대부업자등의 상호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1호), 중요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은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경고문구) 및 제3항제3호(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제4호(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경고문구)의 문구는 상호의 글자와 글자 크기를 같거나 크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2호), 별표 1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광고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3호)을 가리킨다.

라. 위반 시 제재 규정

대부업법 제21조 제2항은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6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⑤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간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이용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 조문 연혁

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대부업법이 개정되며 대부업법 제9조 제5항이 신설되었다. 해당 규정은 대부업자의 과도한 방송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당시의 대부업법 제9조 제5항의 내용은 현행 대부업법 제9조 제5항과 동일하다.

2. 조문 해설

가. 대부업자등

대부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를 가리킨다.

나.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간에는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을 이용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간

대부업법 제9조 제5항은 대부업자등이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을 이용한 광고를 할 때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방송을 이용한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위와 유사한 방송광고 제한은 주류 광고,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이 있다.

2)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텔레비전 방송을 가리킨다.

이 조항은 청소년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무분별한 대출 광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과도한 대출 광고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문 연혁

개정 연혁	2005. 5. 31. 법률 제7523호	2009. 1. 21. 법률 제9344호	2012. 12. 11. 법률 제11544호
내용	제9조의2(대부업에 대한 광고금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의2(대부업에 대한 광고금지)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대부중개업자가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의2(대부업에 대한 광고금지)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05. 5. 31. 대부업법이 법률 제7523호로 일부개정되며 대부업법 제9조의2가 신설되었다. 해당 규정이 신설된 이유는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불법적인 영업행태를 근절하고,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대부업의 양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이다. 제정 당시 대부업법 제9조의2는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대부중개업자 등에 대한 광고 규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2009. 1. 21. 대부업법이 법률 제9344호로 일부개정되며 대부업법 제9조의2 제2항이 신설되었다. 대부중개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대부중개업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대부중개업자의 광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해당 규정이 신설되었다. 신설 당시 대부업법 제9조의2 제2항의 내용은 "대부중개업자가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

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2012. 12. 11. 대부업법이 법률 제11544호로 일부개정되며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조문이 변경되었다.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된 법률에 '대출모집인'에 대한 규제가 포함된 것이다.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고 대부중개를 하는 대출모집인이 대부중개업자와 유사하게 대부중개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대출모집인도 대부중개업자와 마찬가지로 대부중개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조문 해설

가. 대부업법 제9조의2 제1항

대부업법 제9조의2 제1항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1)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상의 등록된 대부업자를 의미하고, 대부업법상의 '여신금융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대부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위 규정의 문언상 의미, 대부업법 제1조의 입법목적(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을 고려하면, 대부업법 제9조의2 제1항은, '미등록대부업자'가 '그가 영위 중인 미등록대부업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대부업자가 아님에도 자기 자신

이 대부업을 취급한다는 취지로 광고하는 것 금지)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를 확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의 광고를 대행하는 경우는 대부업법 제9조의2 제1항을 적용받기 어렵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5.선고 2023노1029 판결 참조).

2) 대부업에 관한 광고

대부업에 관한 광고는, 업으로서 하는 대부업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광고를 가리킨다. '일수' 내지는 '급전'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금전 대부를 암시하는 광고(대구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고정750 판결 참조), '당일즉시대출' 내지는 '신용불량자 가능', '일수 & 달돈 50% sale' 등 문구를 사용하는 명함형 광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1. 7. 선고 2013고단1239 판결 참조), '공식등록업체 연 27.9%'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의정부지방법원 2017. 4. 4. 선고 2016고단4255 판결 참조) 등이 대부업에 관한 광고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판례를 종합하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는 금전 대부 서비스의 제공을 알리거나 대부 조건, 대부업체 연락처 등을 알리는 광고라고 할 수 있다.

나. 대부업법 제9조의2 제2항

대부업법 제9조의2 제2항은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법 제2조에 의하여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가리키며, 대부중개는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 대부중개업은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대부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대출 포함) 신청상

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금융회사가 위탁한 업부를 수행하는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가리킨다.

2)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는 대부중개업, 광고의 정의를 고려하면 금전 대부중개 명칭, 연락처 등을 알리거나, 금전 대부중개 등 조건을 알리는 광고 등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실제, 피고인이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연 7.90 ~ 60개월 4천까지 도움을 드립니다. 2천 사용 시 월 118,000원부터 납부가능'이라는 메세지를 보내고, 메세지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별도로 계약한 대부중개업체에 소개한 다음 그 대가로 위 대부중개업체로부터 수수료를 교부받은 사안이 대부업법 위반으로 인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7. 12. 선고 2013고정202 판결 참조).

다. 위반 시 제재 규정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3호는 '제9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3. 대표 판례

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노1029 판결

여러 대출모집법인과 연계한 금융기관의 광고를 대행했던 피고인을 대부업법 제9조의2 제1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사안

법원은 ‘대부업법 제9조의2 제1항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업법 제9조는 대부업자가 자신이 영위하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의미 및 체계를 고려하면 대부업법 제9조의2 제1항은 대부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자신이 영위하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해석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다는 대부업법의 입법 목적(제1조)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위 조항을 가지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공범 등 특수한 관계가 없는 제3자의 미등록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의미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제9조의3(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등)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부이자율,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거래상대방, 대부중개를 통하여 대부할 대부업자, 그 밖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
   다.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방법
2.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
   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법
3. 그 밖에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

②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부기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2. 서민 등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한 대부업자등에게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행위(제3호)

시행령 제6조의3(대부업자등의 허위·과장 광고)

법 제9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 행위를 말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
2. 서민금융상품(서민 등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을 말한다)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

1. 조문 연혁

개정 연혁	2009. 1. 21. 법률 제9344호	2025. 1. 21. 법률 제20714호
내용	제9조의3(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등)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부이자율,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거래상대방, 대부중개를 통하여 대부할 대부업자, 그 밖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 다.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방법	제9조의3(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등)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부이자율,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거래상대방, 대부중개를 통하여 대부할 대부업자, 그 밖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 다.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방법

내용	2.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 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법 3. 그 밖에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한 대부업자등에게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 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법 3. 그 밖에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 ②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21〉** **1. 정부기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2. 서민 등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한 대부업자등에게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대부업법 제9조의3은 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된 대부업법에서 신설되었다. 신설 당시 대부업법 제9조의3 제1항의 내용은 현행 대부업법 제9조의3 제1항과 동일하다. 한편, 현행 대부업법 제9조의3 제3항이 대부업법 제9조의3 제정 당시 제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했다.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된 대부업법에서 해당 규정이 신설된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대출 해준다)', '대출을 쇼핑처럼 쉽고 빠르게', '3초만에 단박 콜' 등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내보내 물의를 일으켰던 상황에서 과다·허위 광고로 인한

대부업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2025. 1. 21. 법률 제20714호로 개정된 대부업법에서는 현행 대부업법 제9조의3 제2항이 신설되었다. 해당 규정이 신설된 이유는 불법 대부업체가 정부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가장하거나, 정책 금융상품의 명칭을 도용해 금융소외계층을 고금리 대출로 유인하는 등 금융 이용자들을 기망하고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 조문 해설

대부업법 제9조의3은 대부업자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구체적으로 대부업법 제9조의3제1항은 대부업자 등이, 대부이자율,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거래상대방, 대부중개를 통해 대부할 대부업자, 그 밖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내용에 관한 광고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금지한다.

가. 대부업법 제9조의3 제1항 제1호

1)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객관적 사실과 다른 광고 또는 실제보다 과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금지와 유사하다. 대법원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11. 13.선고 2008두6646 판결 참조).

2)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소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광고 방법을 가리킨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상 '기만적인 표시·광고'와 유사한 개념에 해당한다. 실제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 지침에서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소극적으로 진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은폐, 누락하거나 또는 축소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오해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한다.

"은폐"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지나치게 짧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이를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누락"이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당초부터 아예 밝히지 않거나 빠뜨린 것을 말한다.

"축소"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표시 또는 설명하였으나, 지나치게 생략된 설명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이를 사실대로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3)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의 대부가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방법

다른 대부업자와 비교 및 광고시 그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대부 조건이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광고를 금지하는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와 유사하다.

나. 대부업법 제9조의3 제1항 제2호

대부업법 제9조의3 제1항 제2호는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다. 대부업법 제9조의3 제2항

대부업법 제9조의3 제2항은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 등을 포함한 대부업자들이, 정부기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나, 서민 등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이다.

1)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

대부업법 제9조의2 제2항의 수범자는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는 물론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대부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포함한다.

2) 정부기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정부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적 기관을 가리킨다.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기관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금융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기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을 가리킨다.

3) 서민 등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제2호는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 행위 중 하나로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시인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상품명을 명시하고 있다.

그 상품명은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새희망힐링론, 징검다리론이다.

라. 위반 시 제재 규정

제9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9조의3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대부업법 제21조 제1항 제9호).

3. 대표 판례 등

■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심결례

1) 금리에 대한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가) 2008. 1. 3. 공정거래위원회는 (주) 위드캐피탈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주)

위드캐피탈은 2006. 9. 1.부터 2006. 11. 30.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케이블 TV를 통해 '대출금리'에 대한 광고를 함에 있어 2006. 9. 1.부터 200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연 18%부터 연 49%사이의 금리를 적용해 주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 위드캐피탈이 실제 연 18%부터 연 49%사이의 금리를 적용해 대출해 준 기간은 2006. 9. 1.부터 2006. 11. 30.임에도, 2006. 9. 1.부터 200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연 18%부터 연 49%사이의 금리를 적용해 주는 것처럼 표현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리게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소비자 오인성 여부는 ㈜ 위드캐피탈이 시행한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이 2006. 12. 1.부터 2006. 12. 31.까지의 기간동안도 ㈜ 위드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연 18%부터 연 49%사이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인식할 것이기에, 위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 ㈜ 스타크레디트, ㈜ 유아이크레디트가 자신의 대출고객들에게 적용하는 이자율이 대부업계에서 가장 낮은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실제로 이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다른 대부업체가 존재하였던 사례

2) 대출대상에 대한 부당한 광고행위의 건

2008. 1. 4. 공정거래위원회는 ㈜ 미즈사랑의 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 미즈사랑은 2006. 9. 1.부터 2007. 5. 17.까지의 기간동안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을 해주는 대상에 대한 광고를 함에 있어 만 20세부터 만50세 이하의 여성이라면 누구에게나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표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시정명령을 공표하게 한 것이다.

실제 (주) 미즈사랑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강하는 소비자 등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음에도 일반 소비자들은 위와 같은 광고를 접할 경우 누구나 만 20세부터 50세 사이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였다.

또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대부분 신용도가 낮아 제도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에, 이러한 입장의 소비자들에게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대부업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3) 무이자에 대한 부당한 광고행위의 건

㈜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가 실제로 무이자 대출을 해 주는 기간은 대부분 5~15일임에도 불구하고 '30일, 40일 무이자 이벤트' 라고만 표기함으로써 마치 해당 대부업체의 무이자 대출기간이 30일 또는 40일인 것처럼 광고하였던 사례.

제9조의4(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등)

①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1. 조문 연혁

개정 연혁	내용
2009. 1. 21. 법률 제9344호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2. 12. 11. 법률 제11544호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등) ①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1〉 ②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11.〉
2015. 7. 24. 법률 제13445호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등) ①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1〉

	②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11〉 ③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7.24〉
2025. 1. 21. 법률 제20714호	제9조의4(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등) ①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12. 11. , 2025. 1. 21.〉 ②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12. 11. , 2025. 1. 21.〉 ③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7.24〉

2009. 1. 21. 대부업법이 법률 제9344호로 일부개정되며 대부업법 제9조의4가 신설되었다.

2000년대 일본계대부업의 진출이 본격화되고 대부업 시장이 성장하는 와중,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등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의 2009. 8. 10.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상담사례는 전년도 비해 2009년 상반기 중 27.7% 증가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 증가 추세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구체적 피해 유형으로 고금리 수취의 99%가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발생하고, 불법채권추심의 59% 가량이 등록 대부업체에서 발생하였다. 이에,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 금융행위로 인한 채권이 등록 대부업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당 규정이 도입되었다.

신설 당시 대부업법 제9조의4는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 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

부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다.

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대부업법이 일부개정되며,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나, 등록대부업자가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통해 영업하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 위와 같은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있었고, 미등록대부중개업자와 등록대부업자의 연계 등을 차단하여 불법적인 사금융 생태계를 약화시키려는 취지다.

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대부업법이 개정되며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에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해당 규정은 과도한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예방하고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구체적으로 대부채권이 자격을 갖춘 기관에게 양도됨으로 함으로써 채권 추심 관련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 사금융과의 연계를 차단함으로써 채권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2025. 1. 21. 법률 제20714호로 대부업법이 개정되며 대부업법 제9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다. 해당 개정은 미등록대부업자 등 표현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표현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조문 해설

가. 대부업법 제9조의4 제1항

대부업법 제9조의4 제1항은 대부업자는 대부업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규정이다.

1) 대부업자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를 기리킨다.

2)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업자는 등록 대부업자가 아닌 미등록상태로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기에, 폐업신고를 하기 전 종전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체결한 대부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에 한해서는,각 채권을 양도하는 범위에서는 등록대부업자로 의제된다(부산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노1448 판결 참조).

3)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행위의 금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은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을 맺음으로써 취득한 채권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대부업법 제2조 제1호는 금전의 대부에 대하여 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직접적으로 금전의 교부가 거래상대방에게 이루어지는 것 외에도,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어 직접적 금전의 교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금융감독원 2016. 8. 30.자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 채권 양도 대상의 제한에 대한 질의 답변).

"채권양도(債權讓渡)"란 계약으로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채권추심(債權推尋)"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가리킨다.

4) 대부업법 제9조의4 제1항 위반의 사법상 효력

대부업법 제9조의4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문제가 된다. 대부업법 제9조의4 제1항 및 제3항은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채권양수 또는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나, 위반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별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16]는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여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반면 채권을 양수한 자 자체에 대한 제재가 없고, 대부업법 제9조의4 제1항 위반 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하면 불법적으로 채권을 양도한 대부업자를 보호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점에서 대부업법 제9조의4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의 사법적 효력 자체는 부인되지 않는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26. 선고 2022가단116501 판결 참조).

나. 대부업법 제9조의4 제2항

대부업법 제9조의4 제2항은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1) 대부업자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를 기리킨다.

---

16 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5.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2) 불법사금융중개업자

대부업법에 등록되지 않고 대부중개를 하는 자를 가리킨다.

3) 대부 금지

거래상대방이 미등록대부업자와 중개를 통해 대부업자에게 대부를 신청할 경우, 대부업자는 그 거래상대방에게 대부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4) 중개수수료 지급이 위 규정 위반에 영향을 미치는가

위 규정은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중개수수료를 다른 등록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하였는지는 위 규정 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노921 판결 참조).

다.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은 대부채권이 불법사채업자에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부채권의 양수인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1)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란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가리킨다(대부업법 제2조제1호 가목).

여신금융기관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가리킨다(대부업법 제2조 제4호).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2는 여신금융기관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여신금융기관 종류	종류별 기관의 내역
은행권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제2금융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협동조합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기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2) 채권 양수 가능 주체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 뿐 아니라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는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에 의해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할 수 있다.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시행령 제6조의4).

1.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2. 여신금융기관
3.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6.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여신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업(業)에 상당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시행령 제6조의4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여신금융기관이 복수의 대주들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취급한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2. 시행령 제6조의4제6호에 따른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여신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업(業)에 상당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 여신금융기관'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법인(여신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업(業)에 상당하는 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무역금융상품(수출 팩토링/포페이팅, 수출환어음 매입, 수입 신용장 개설 등) 취급에 따른 대출채권을 그 본점, 지점 또는 계열회사인 외국 여신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3.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법인이 해당 지점의 폐쇄·청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대출채권을 그 본점, 지점 또는 계열회사인 외국 여신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시행령 제6조의4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2.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4 제2항 제2호의 회사등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3) 채권 양도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의 채권 양도의 의미는 대부업법 제9조의4 제1항의 채권 양도와 동일하다.

4) 금지되는 채권양도의 예시

이와 같은 대부업법 관련 규정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자를 제한하여 대부채권이 불법대부업자에게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과도한 추심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이에,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가 민법 제480조 제1항이 정한 임의대위변제의 방법으로 채권을 이전받는 경우 채권양도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게 되므로 대위변제의 주된 목적이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보유한 대부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받으려는데 있다면 이는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이 금지하는 채권양도에 해당한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0가합116396 판결 참조).

라. 위반 시 제재 규정

대부업법 제19조 제4항은 '제9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제4호)', '제9조의4 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제5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선임된 자

② 대부업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문 연혁

2010. 1. 25. 법률 제9970호로 개정된 대부업법에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조항이 신설되었다. 해당 규정이 신설된 이유는 폭력적인 채권추심 등 불법 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 경력자를 고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금융이용자, 특히 취약계층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신설 당시 대부업법 제9조의5 제1항은 현행 대부업법 제9조의5 제1항과 유사하나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선임된 자'에 대한 고용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신설 당시 대부업법 제9조의5 제2항은 현행 규정과 동일

하다.

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며 대부업법 제9조의5 제1항 제2호의 고용 제한 대상자의 범위가 대부업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변경되었다. 대부업법 제4조 제2항에 대부업자의 임원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며 법률 체계를 변경하기 위한 개정이다.

2. 조문 해설

가. 조문 내용

대부업자등이 고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부업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이 포함된다.

이 때, 대부업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각 목의 하나에는 대부업법의 규정 위반,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형법상 상해, 폭행, 체포, 협박,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공갈,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부터 제3항 사이의 조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72조, 제73조 등을 위반한 경우를 가리킨다.

한편, 대부업자등은 대부업법 제9조의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와 같이 대부업법 제9조의5는 대부업자에게 특정 범죄 경력이 있는 자를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그 주된 대상은 폭력 내지 채권 추심 관련하여 형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이다. 이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폭력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대부업법 제9조의5는 고용 뿐 아니라 업무 위임·대리를 포괄하여 규정하는데, 이는 직접 고용 외에도 위임 및 대리 등으로 실질적으로 대부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규제 대상으로 삼기 위함이다.

나. 위반 시 제재 규정

대부업법 제21조 제1항은 '제9조의5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자(제10호)'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제9조의6(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시·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광고나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법대부행위등"이라 한다)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발견 또는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등은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경우 광고를 한 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조문 연혁

개정 연혁	내용
2014. 3. 18. 법률 제12493호	제9조의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시·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경우 광고를 한 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할수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 7. 24. 법률 제13445호	제9조의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시·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등**은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경우 광고를 한 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제9조의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시·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② **시·도지사등**은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경우 광고를 한 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 2017. 7. 2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할수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 21. 법률 제20714호	제9조의6(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시·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광고나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법대부행위등"이라 한다)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발견 또는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21〉 ② 시·도지사등은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경우 광고를 한 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7.7.2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시·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전화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전화번호의 확인·신고,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

2014. 3. 18. 법률 제12493호로 개정된 대부업법에 대부업법 제9조의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이 신설되었다. 해당 규정은 시·도지사 등이 불법 광고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신설 당시 대부업법 제9조의6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중지 등의 규정이 존재하였으나, 현재와 같은 불법 추심에 대한 전화번호 이용 중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대부업법이 개정되며 대부업법 제9조의6 제2항에 따른 대부업법 위반 광고를 한 대부업자들에 대한 광고 중단 명령 주체가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 등'으로 확대되었다.

2017. 7. 26.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중지 요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할 수 있도록 주체가 변경되었다.

2025. 1. 21. 법률 제20174호로 개정된 대부업법 제9조의6은 법률 제목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에서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으로 변경되고, 제4항이 신설되어 불법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자가 시·도지사 등에게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종전의 규정은 '불법 대부광

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만 이용중지를 요구하여 실제 불법 대부행위 내지 채권추심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 대부업법 제9조의6은 규제 대상을 '불법 대부행위' 등으로 확대하여 미등록 대부업,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불법 채권추심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조문 해설

대부업법 제9조의6 제1항은 시·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17]는 대부업법 제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불법 대부업 광고, 대부업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소위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발견 또는 확인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다.

가. 대부업법 제9조의6 제1항

1) 금지 대상

대부업법 제9조의6 제1항의 규제 대상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의 대부업 광고(대부업법 제9조의2 제1항),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닌 자의 대부중개업 광고(대부업법 제9조의2 제2항), 이 법(대부업법) 또는 채권추심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행

---

17 1. 시·도지사
2. 검찰총장
3. 경찰청장
4.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의 원장
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위원장
⇨ 불법 대부행위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폭넓게 방지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위원장을 추가[시행 2026. 5. 6.] [대통령령 제36313호, 2026. 5. 6., 일부개정]

위 등이다.

대부업법상 처벌이 되는 행위는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행위를 가리킨다.

대부업법상 처벌 근거조문	조문별 금지행위
제19조 제1항	미등록 대부행위(제1호)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등록갱신(제2호) 불법 대부업 광고 등(제3호)
제19조 제2항	명의대여 등(제1호) 제한이자율 초과(제2호) 대부업자등의 법 제9조의3 제2항 위반 불법 광고 행위(제3호) 개인정보 부정한 처리(제4호, 제5호)
제19조 제3항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제1호, 제2호)
제19조 제4항	상호 관련 위반(제1호) 서류의 목적 외 사용(제2호)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채권양수 등(제4호) 채권양도 제한 위반(제5호) 중개수수료 관련 위반(제6호부터 제9호까지)

채권추심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 제15조(벌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경우,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추심법 제9조 제2호부터 7호까지 행위,[18]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

18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 위반 시 법률 효과

대부업법 제9조의6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 등은 별도의 시정 등 절차 없이 즉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이 가능하다.

나. 대부업법 제9조의6 제2항

대부업법 제9조의6 제2항은 등록된 대부업자가 대부업법 제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광고 방법을 위반하거나, 대부업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경우를 규제하는 규정이다.

대부업법 제9조의6 제2항은 제1항과 달리 광고 중단 명령을 통해 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위와 같은 명령을 불이행할 시 전화번호 이용중지라는 강한 제재를 하도록 규정한다.

대부업법 제9조의6 제1항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적 영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불법적인 추심행위를 방지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며, 제9조의6 제2항은 등록 대부업자가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3. 관련 제도

금융감독원은 2025. 7. 21자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대부광고 차단을 위해 운영중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가 불법 채권추심 및 불법 대부행위 전반으로 확대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도 전화 등을 통한 위법행위(불법채권추심)가 접수된 경우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이 정지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 행위의 예시로는 욕설·협박,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 및 가족·지인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행위 등이다.

이와 동시에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라인을 SNS·메신저를 이용한 불법 채권추심 신고가 접수된 경우 심사 후 그 이용자의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규모 이상인 자는 법령을 지키고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보호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기준을 정하는 대부업자등은 보호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보호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監査)하는 자(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은 보호감시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보호감시인이 된 후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 또는 법학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마.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일 것
3. 최근 5년간 이 법,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⑤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조문 연혁

개정 연혁	2015. 7. 24. 법률 제13445호	2025. 1. 21. 법률 제20714호
내용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규모 이상인 자는 법령을 지키고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보호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기준을 정하는 대부업자등은 보호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보호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감사)하는 자(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은 보호감시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보호감시인이 된 후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 또는 법학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규모 이상인 자는 법령을 지키고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보호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기준을 정하는 대부업자등은 보호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보호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감사)하는 자(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은 보호감시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보호감시인이 된 후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25.1.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 또는 법학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내용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마.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일 것 3. 최근 5년간 이 법,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⑤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마.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일 것** 3. 최근 5년간 이 법,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⑤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4]

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대부업법이 개정되며 대부업법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이 신설되었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등록요건에 재정적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며, 대부업자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해당 규정이 제정되었다. 그 내용은 현행 대부업법 제9조의7과 사실상 동일하다.

2025. 1. 21. 법률 제20714호로 대부업법이 개정되며 기존 대부업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이 제4조 제1항과 통합되는 한편 대부업법 제9조의7 제4항 제2호의 규정이 현행과 같이 변경되었다.

2. 조문 해설

대부업법 제9조의 7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등으로서 일정한 자산규모 이상인 자는 법령을 지키고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정하고,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감사하는 보호감시인을 두도록 하여, 대부(중개)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자율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가. 대부업법 이용자 보호 기준

대부업법 제9조의7 제1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중 일정한 자산규모 이상인 자는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및 방법과 보호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보호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른 보호감시인(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대부채권 추심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채권의 추심·관리·매매 등에 대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채무자 보호를 위한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19]이다.

---

19 시행령 제6조의6제2항제8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1. 18.〉
1. 고객의 신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제반 정보가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 제9조의2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광고의 주체·형식·내용 또는 광고시간 등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나. 대부업법상 보호감시인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부업법 제9조의7 제2항은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는 대부업법 제9조의7 제4항 제1호가 정하는 경력을 가진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 대부업법 제9조의7 제2항에 따라 대부업체가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의 준수를 점검하고 위반 시 이를 감시하는 자를 보호감시인이라고 한다. 이 때 일정 자산규모는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대부업자는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10억원, 그 밖의 대부업자등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500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를 가리킨다.

보호감시인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금융 또는 법학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하나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보호감시인은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 법령 준수 여부와 관련한 영업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개선, 임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의 수립,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20]을 수행하며(대부업법

---

20 ① 시행령 제6조의6제5항제4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호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2. 업무 전반에 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제출 요구
3.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4. 보호기준 준수 관련 문제점이나 미비사항에 대한 경영진 또는 유관부서에 시정 건의
5. 중대한 위법·부당행위 발견 등 필요시 제재의견 표명

시행령 제6조의6 제5항),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시행령 제6조의6 제6항),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시행령 제6조의6 제7항).

보호감시인은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대부업자등이 수행하는 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원칙이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대부거래자 수가 1천명 미만인 대부업자등에 두는 보호감시인은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시행령 제6조의6 제7항).

---

6. 위법사항 등에 대한 업무정지요구
7. 필요시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회의 참여 및 적법성 등에 대한 의견 진술
8.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8(차별금지)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1. 조문 연혁

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대부업법이 개정되며 대부업법 제9조의8이 신설되었다. 현행 대부업법 제9조의8과 내용은 동일하다.

2. 조문 해설

대부업법 제9조의8은 차별금지 조항으로,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성별, 학력,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에서 거래상대방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상환 능력, 담보 가치 등 대출 심사와 관련된 합리적 기준에 따른 차등 계약 조건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업법 제9조의8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 내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업법 제1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9조의9(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① 대부업자는 대부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중개를 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대부업 이용자의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할 때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문 연혁

2025. 1. 21.자 법률 제20174호로 개정된 대부업법에서 대부업법 제9조의9가 신설되었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민감한 정보이기에 해당 정보가 목적 외 사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21]로는 대부업 분야의 특수한 형태의 개인정보 관련 범죄에 대응

21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하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당 법률이 신설된 것이다.

2. 조문 해설

대부업법 제9조의9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규정으로 대부업 분야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구체적 보호를 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업법 제9조의9는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규정에 해당하기에 위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가. 대부업법 제9조의9 제1항

대부업법 제9조의9 제1항은 "대부업자는 대부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가리키기에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위와 같은 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가리킨다.

2)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는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의 체결, 이행, 관리 등 대부업의 본질적인 업무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목적 외에 대부업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금

지된다.

나. 대부업법 제9조의9 제2항

대부업법 제9조의9 제2항은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중개를 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개인정보 등은 대부업법 제9조의9 제1항의 개인정보의 의미와 동일하다. 대부중개를 하기 위한 목적은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중개를 위한 본질적 업무 등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다. 대부업법 제9조의9 제3항

대부업법 제9조의9 제3항은 “누구든지 대부업 이용자의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할 때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업법 제9조의9 제3항은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대상으로 삼는 한편, 개인정보의 제공, 수령, 보관, 전달, 유통 등 대부분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수범자는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를 요구하는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였다면 위 조항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 범죄의 내용 내지 저촉되는 형벌법규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의 취지 참조).

라. 위반 시 제재 규정

법 제9조의9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과정 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4호).

법 제9조의9 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5호).

제10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라 한다)가 그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부,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대부업자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신용공여"라 한다)의 합계액은 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넘을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대부업자로부터 그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그 대주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대주주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보완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대부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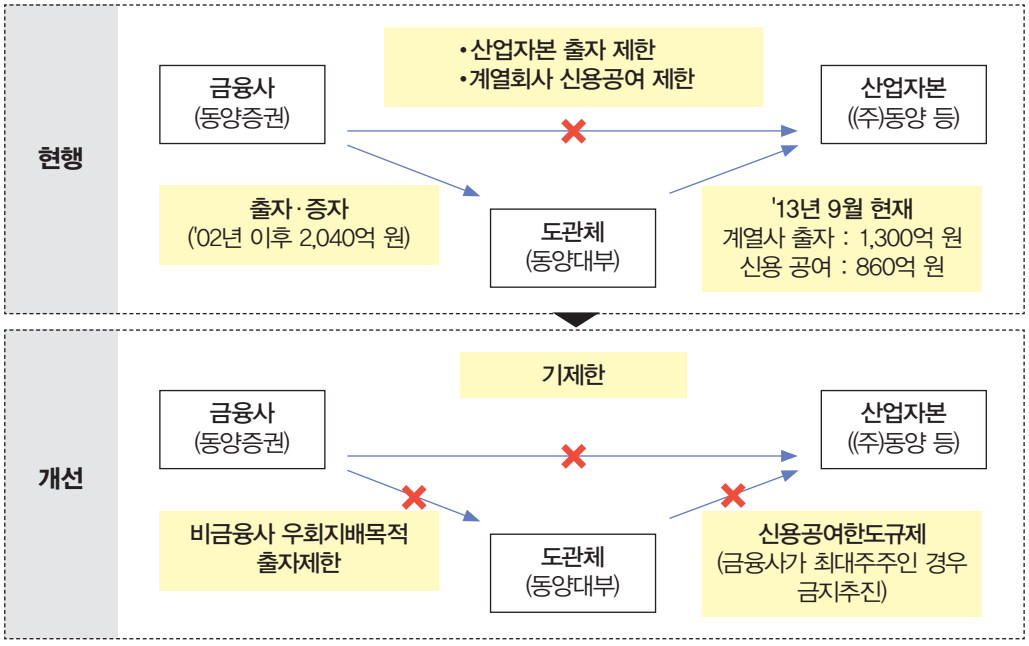
⑧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조문 연혁

본 조항은 2015. 7. 24. 신설되었다. 개정 이유는 대기업 계열사의 우회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이익에 대해 과징금(동법 제14조의2)을 부과하려는 것이다[22].

이러한 입법은 2013년 동양그룹 부실화 과정에서 나타난 계열사 간 부당지원 문제를 보완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배경에서 추진되었다[23]. 당시 자산운용이나 자금거래에 제한이 없는 대부업체가 대기업이나 금융회사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의 도관체로 기능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4. 2. 25.[24]



22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제개정이유

23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2014. 2. 25.

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이에 따라 대기업이나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통해 비금융계열사로 자금을 유입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 계열 대부업자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계열)에 속하는 대부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 범위 내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특히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체는 계열사 신용공여가 전면 금지되었다.

2. 조문 해설

제1항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라 한다)가 그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부,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대부업자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신용공여"라 한다)의 합계액은 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넘을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대부업자로부터 그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7항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대부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본 조항들은 대부업체의 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두 가지 상이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제1항은 일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일 경우, 자기자본 100%라는 한도를 설정하였고, 제7항과 같이 은행 및 카드사 등 여신금융기관 소속일 경우, 동양사태 등에서 문제된 우회 지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신용공여를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금산분리 강화 조치가 적용된다.

제2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그 대주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위 조항은 보고 및 공시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규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이다.

제3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대주주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항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항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보완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조항들은 자기자본 변동이나 대주주 변경 등 비자발적 사유로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이다.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즉시 위법으로 보지 않고 유예기간을 부여하며(제3항), 부득이한 사유 시 금융위원회의 공식적인 승인을 통해 연장할 수 있는 절차를(제4항 내지 제6항) 명시하고 있다.

제8항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법 위반 혐의 시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자 및 대주주에게 직접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 있는 감독 및 조사 권한을 명시한 조항이다.

3. 참고 규정

본 조항은 금융기관 또는 대기업집단의 사금고화를 억제하고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로, 금융 관련 다른 법령에도 유사한 취지의 규정이 존재한다.

은행은 '동일차주' 및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법정 상한으로 제한되고,[25] 보험회사

25 은행법 제35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는 대주주 지원 목적의 신용공여 등이 금지된다.[26] 상법상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등 특수관계인을 위한 신용공여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27]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기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에 대한 신용공여가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28]

이러한 흐름은 대부업법의 제10조 신설로도 이어져, 대부업체를 통한 우회 지원 가능성을 축소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후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도 대주주 관련 신용공여 제한이 강화되었다.[29]

4.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목록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5. 1. 자산총액이 가장 최근의 명목 GDP 확정치(2,324조 원)의 0.5%에 해당하는 11.6조 원 이상인 46개 집단(소속회사 2,09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30] [31]

5. 대표 판례(서울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0누51909 판결)

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7호, 보험업법 제2조 제13호, 상호저

---

26 보험업법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27 상법 제542조의9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28 자본시장법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2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30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 지정」, 보도자료, 2025. 5. 1.

31 삼성,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엘지, 롯데, 포스코, 한화, HD현대, 농협, 지에스, 신세계, 한진, 케이티, 씨제이, 엘에스, 카카오, 에이치엠엠, 두산, DL, 중흥건설, 셀트리온, 네이버, 에쓰-오일, 미래에셋, 쿠팡, 현대백화점, 한국앤컴퍼니그룹, 부영, 영풍, 하림, 효성, 장금상선, SM, 에이치디씨, 호반건설, 두나무, 케이티앤지, 코오롱, 케이씨씨, DB, 넥슨, 오씨아이, 엘엑스, 세아, 넷마블, 이랜드. 이상 46개.

축은행법 제2조 제6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8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 금융 관련 법령에서는 대부분 '신용공여'의 의미나 범위를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도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분	내용	해당조문
상법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한) 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간접적 거래	법 제542조의9① 시행령 제35조①
은행법	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접적·간접적 거래	법 제2조① 제7호 시행령 제1조의3①
보험업법	대출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이나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간접적 거래	법 제2조 제13호 시행령 제2조①
상호저축은행법	급부, 대출, 지급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간접적 거래	법 제2조 제6호 시행령 제3조의2②
여신전문금융업법	대출,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간접적 거래	법 제2조 제18호 시행령 제2조의4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대부,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간접적 거래	법 제10조① 시행령 제6조의7①

〈위 표: 위 판결문에서 발췌〉

나. 사전적으로 '신용공여'는 '금융거래에서 자기의 재산을 타인에게 빌려주어 일시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일'을 의미하고,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라는 의미

의 '여신'(與信)과는 구별된다. 또한 '신용'은 '거래한 재화의 대가를 앞으로 치를 수 있음을 보이는 능력'을 말하고, '공여'란 '어떤 물건이나 이익 따위를 상대편에게 돌아가도록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전적 정의에 비추어 보면, '신용공여'는 일반적으로는 경제적 지급능력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거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자금 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등과 같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간접적 거래'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6. 위반시 제재 : 영업정지 규정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7.24, 2016.3.3, 2025.1.21〉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별표 1]**

대부업자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 사유(제13조제1항제1호 관련)

18.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7. 위반시 제재 : 과징금 규정

제14조의2(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7. 4. 18.〉

1. 대부업자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 이하

나.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가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신용공여 금액 이하

2. 대주주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주주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 이하

나. 대부업자의 최대주주인 여신금융기관이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 신용공여 금액 이하

8. 위반시 제재 : 벌칙 규정

제19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25. 1. 21.〉

1.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2.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9. 위반시 제재 : 과태료 규정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 25., 2015. 7. 24., 2017. 4. 18.〉

10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10조의2(채권추심자의 소속·성명 명시 의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1. 조문 연혁

본 조는 2019. 1. 21. 신설되었는데, 같은 해 2. 6.「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어 채권추심 전반의 금지행위나 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일반법 역할을 하게되었다(시행 2009. 8. 7.). 이후 2024. 10. 17.에는「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제정되어 개인금융채권 영역에서는 소속·성명 고지 외에 권한증표 제시, 연락처 고지 등 더욱 촘촘한 고지와 절차 의무가 규정되었다.

2. 다른 법령과의 관계

우리나라는 2009년 채권추심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대부업법, 신용정보법과 같은 개별사업법에서 중복적, 분산적으로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규제하였다. 그러나 채권추심법의 제정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채권추심에 관한 기본법이 마련되었다[32]. 이에 따라 규제의 정합성 측면에서 대부업법 제10조의2를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여

32 정영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해설, 법조, 2010, 284면.

지가 있다.[33]

3. 위반시 제재 : 과태료 규정

제2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2. 6., 2015. 7. 24., 2017. 4. 18.〉

8.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자

---

33 **채권추심법 제6조(수임사실 통보)** ①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9조(추심연락 시 고지 의무) ① 채권추심자(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추심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밝히고, 추심업무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온라인으로 제시할 수 있는 증표를 포함한다)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추심연락을 하면서 자신의 소속 및 성명을 밝힐 때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①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1. 조문 연혁

대부업법 제11조는 미등록대부업자의 고금리 수취를 제한하기 위해 2016년 3월 신설되어 「이자제한법」을 준용하는 형태로 운영되었고 2018년 일부 준용 범위를 보정하였으나, 2025년 1월 개정을 통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징벌적 조치로 대폭 강화되었다. 개정법은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을 변경하여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이들이 체결한 대부계약의 이자 약정을 전면 무효화하여 이자 수취를 원천 봉쇄하였으며, 나아가 상법상 상사법정이자 규정의 적용까지 배제함으로써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이익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입법 의지를 반영하였다.

위 규정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 자체를 원천 차단하여 범죄로 인한 수익을 제거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종전에는 최고금리를 초과한 부분만 무효가 되어 초과이자 환급에 그쳤다면, 이제는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약정이 전부 무효로 처리되어 불법사금융업자의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이자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는 등 보다 두텁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불법대부 행위는 형사처벌 상향과 맞물려 한층 강하게 억제되는 구조가 마련되었다.[34]

---

34 금융위원회, 「'25.7.22일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시행됩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보도자료, 2025. 7. 15.

참고 : 대부계약 효력제한 관련 판단 절차도



35 「'25.7.22일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시행됩니다.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 위반시 제재 : 벌칙 규정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 1. 21.〉

2.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① 대부중개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중개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중개수수료 상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대부중개업자등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⑦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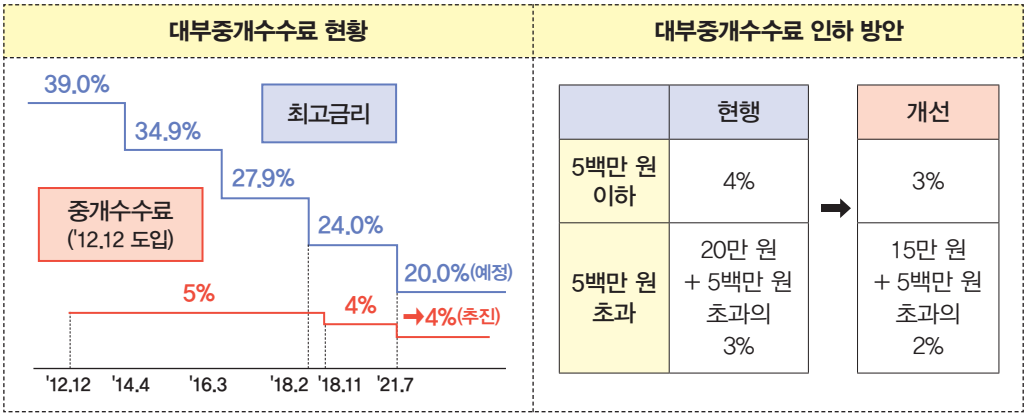
1. 조문 연혁

본 조항은 2005. 5. 31. 신설되어,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중개 금지)과 제2항(대부중개업자등의 대출 이용자로부터의 중개수수료 수취 금지)의 핵심 골격이 마련되었다.

이후 높은 중개수수료가 고금리의 원인이 되고[36] 중개업자의 과잉 모집을 유발한다[37]는 지적에 따라, 2012. 12. 11. 법 개정 시 제3항부터 제6항까지가 신설되었다. 이로써 대부중개업자등이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법정 상한 규제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상한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데, 법정 최고금리 인하 추세와 연동되어 하향 조정되어 왔다. 예컨대 500만 원 이하 대출에 관해 기존 5%였던 상한율이 2018년 11월부터는 4%로 적용되었으며, 2021년 8월에는 다시 한번 3%로 인하되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 3.[38]



2025. 1. 21. 법 개정으로는 제1항, 제2항에서 '미등록대부' 용어가 '불법사금융'으로 변경되었으며, 아울러 제7항에 대부중개업자의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의무가 추가되었다.

---

36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제개정이유

37 금융위원회,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8.17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 최대 1%p 인하」, 2021. 8. 10.

38 「대부업 제도 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 방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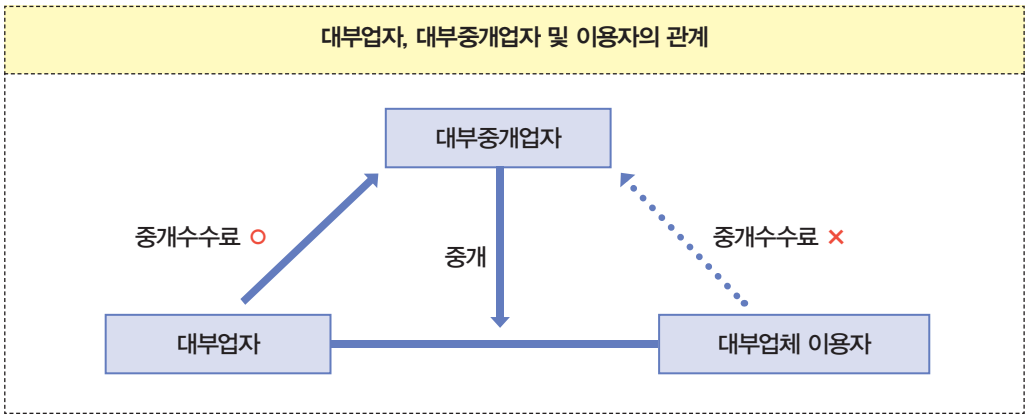
2. 중개수수료 규제 요약

제2항: [대부업체 이용자 ⇨ 대부중개업자등] 중개수수료 지급 절대 불가

제3항: [대부업자 ⇨ 대부중개업자등] & [대부업체 이용자가 개인 or 소규모 법인인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이 가능하나 법정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제4항: [여신금융기관 ⇨ 대부중개업자등] & [대부업체 이용자가 개인 or 소규모 법인인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이 가능하나 법정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대부중개업 이용 시 주의사항(대부중개수수료의 금지)[39]



39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 이자의 지급 〉 대부중개업자의 사업범위 및 중개수수료의 금지 〉 대부중개업 이용 시 주의사항(대부중개수수료의 금지)」

3. 관련 판례

가.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 8. 30. 선고 2012나511, 2012나4681 판결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부업자가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등의 금원을 지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결국 피고 D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금 27,5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다.

⇨ 본 조 제2항 위반 시, 수취한 중개수수료 상당액이 부당이득반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

나. 대구고등법원 2024. 5. 22. 선고 2023나17001 판결

채무자가 직접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것이 대부업자와 전혀 무관하게 지급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업자로 하여금 채무자로부터 직접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도록 하고 자신은 대부중개업자에게 아무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것을 채무자에게 전가시킨 것으로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대가라고 할 것이어서,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이자에 해당하고, 대부업자가 그만큼의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24808 판결 등 참조).

(중략)

플랫폼이용수수료는 플랫폼 업체가 대부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하여 한 중개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중개수수료의 일종으로 보인다. 이는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대부업체가 플랫폼 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중개의 대가를 채무자에게 전가한 것으로서 대부업체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대가에 해당하므로, 결국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이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

중개수수료는 대부를 받는 채무자로부터는 어떤 명목으로도 받을 수 없고, 대부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에도(구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 제3항) 피고는 O에게 이 사건 약정 체결에 대한 중개의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으면서 원고가 O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중개의 대가 지급에 갈음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O에게 지급한 위 금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중개수수료로 봄이 타당하고, 대부업자인 피고가 O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을 채무자인 원고에게 전가시킨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금원은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이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 금원 상당을 대여원금에 대한 선이자로 사전에 공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채무자가 직접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더라도, 대부업자와 전혀 무관하게 지급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이 실질적으로 대부업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채무자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와 대부업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대가로 보아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이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대부업법 제11조의2가 적용되기보다는 제8조 제2항으로 이자율 산정 및 초과이자 반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사례이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014다24792, 2014다24808 판결도 유사한 취지이다.

다. 서울고등법원 2023. 9. 21. 선고 2022나20424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가합534568 판결 등)

이 사건 업무용역계약은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을 잠탈하기 위하여 5억 원의 금전대차를 피고의 자금대여업무로 보고 1억 3,0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위 1억 3,000만 원은 5억 원의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그 대가로 피고가 받기로 한 이자라고 보거나 그 수수료 약정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업무용역계약상 원고가 피고에게 위임하는 업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억 원을 대여받는 업무이고, 그러한 자금 차입 업무를 피고가 성사시켰을 경우 1억 3,0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업무용역계약은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5억 원의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한 약정임이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 업무용역계약은 그 제목은 '업무용역계약'이나, 그 내용상으로는 업무를 '위임'한다고 하면서 '위임'이라는 용어가 계속 사용되고 있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정한다고 되어있는 등 그 사용된 문언 등도 통상의 일정한 업무용역을 맡기고 그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는 용역계약이나 일정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그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위임계약과는 차이가 있다.

5억 원의 대여금 가운데 D가 대여한 4억 원은 2018. 11. 16.과 2018. 12. 11. 모두 지급되었고, 피고가 대여한 1억 원은 2018. 12. 11. 지급되었다.

(중략)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 관한 지급 근거를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다른 형식으로 체결하여 둔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향후 수행할 자금 차입 위임업무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중략)

이 사건 사업 관련한 자금이 필요한 원고에게 대주 또는 대주를 소개해준 지위에 있는 피고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에 해당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도 있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등 참조).

(중략)

그런데 대부업법은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등은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1조의2 제2항),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부의 거래당사자에게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중개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에 대한 대가 수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중략)

제2공정증서는 이 사건 업무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 1억 3,000만 원 중 5,000만 원(실제는 4,835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8,000만 원에 관해 이를 차용금액으로 정하여 작성된 것인데, 위 수수료 1억 3,000만 원은 5억 원의 금전대차와 관련한 이자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5억 원 중 4억 원의 대여금에 관한 별도 공정증서에서 정한 약 1년간의 이자는 2억 원이고, 1억 원의 대여금에 관한 제1공정증서에서 정한 1년간의 이자는 5,000만 원으로, 모두 위 각 금전대차 당시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함이 명백하다(4억 원에 대한 연 24%의 이자는 9,600만 원이고, 1억 원에 대한 연 24%의 이자는 2,400만 원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자 약정과 별도로 1억 3,000만 원의 이자를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후 그중 8,000만 원에 관해 작성된 제2공정증서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1억 3,000만 원의 수수료를 전부 이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5억 원 중 4억 원의 채권자는 D여서, 1억 3,000만 원 중 4억 원의 금전대차와 관련한 부분은 채권자가 아닌 피고가 받기로 한 것인 점에서 이를 전부 이자로 보기 어렵다고 할 여지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업무용역계약은 **이자제한법을 잠탈하거나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또는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과 같은 자금조달방식은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소규모 부동산개발사업에서 흔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실무상 흔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무효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무효인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수수료 중 일부를 금전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정한 제2공정증서는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형식상 별도의 계약('업무용역계약' 등)으로 금전 지급을 약정했더라도, 그 실질을 따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이나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이용자로부터 수수료 수취 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약정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이 판결은 피고가 일부는 직접 대여하고 일부는 대여를 주선하는 복합적인 지위에 있어 약정된 금원의 성격이 이자인지 중개수수료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에도, 법규 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법리와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 법리를 모두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라.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3. 4. 6. 선고 2021나12653

'대부중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알선)하는 행위를 뜻한다. 대부중개업자는 통상 대부중개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가 2015. 9. 9. 피고에게 작성·교부한 문서 중 '의뢰내용각서'(을 제4호증)에 원고가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은 대부중개업자가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1조의2 제2항**, 제19조 제2항 제6호), 원고와 피고가 300억 원의 대여와 관련하여 **수수료와 이자를 구분하여 수수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수수료 또는 의뢰내용각서에 기재된 '수수료'가 곧 대부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략)

원고는 300억 원을 차용한 데 따른 비용을 수수료, 이자 등 그 명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극히 일부만을 대부중개 수수료로 취득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자로 G 또는 전주(錢主)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수료의 액수와 전주들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제1심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와 이자가 각각 얼마인지, 전주들이 몇 명이고 누구인지, 전주들에게 언제 어떻게 이자를 지급하였는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중략)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300억 원의 차용과 관련하여 지급한 위 8억 7,000만 원은, 설령 이자 외에 수수료 등 다른 명목의 돈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300억 원의 대여계약과 구별하여 별도의 용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조차도 이자와 수수료의 구체적 액수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그 명목과 관계없이 300억 원의 차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이자라고 할 것이다. 아래 제4의 나항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는 미등록 대부업자이고,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돈을 징수하여 대부업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취지상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판결 참조)는 점에서도 그렇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300억 원의 대여계약에 따른 이자로 합계 8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는 수수료라고 주장하였으나, 거래의 실질과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위반 정황, 당사자의 불분명한 주장 등을 종합하여 해당 금전을 대부계약의 대가인 '이자'로 판단한 사례이다.

4. 위반시 제재 : 벌칙 규정

제1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12. 11., 2015. 7. 24., 2025. 1. 21.〉

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7.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8.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제11조의3(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중개업자등이 그 위탁받은 대부중개를 하면서 이 법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대부중개를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대부중개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해당 대부중개업자등에 대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1. 조문 연혁

본 조항은 2014. 1. 1. 신설되었다. 입법 취지는 대부중개업자등의 위법행위로 대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들에게 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우선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이다.[40] 또한 배상 후 이들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은 해당 중개업자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0 아시아경제, 「불법 대부중개업체 피해, 대부업체가 배상한다」(2010. 12. 10.)

2. 관련 판례

가. 대전지방법원 2024. 1. 30. 선고 2023가단212093 판결

앞서 본 것처럼 대부업법 제11조의3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부중개업자 등이 '대부중개 과정에 대부업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중개는 대출신청인과 금융기관 사이의 금전 대부를 주선(알선)하는 행위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대출금 미지급'은 C의 주선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대부중개가 완료된 이후의 대부계약상 채무 이행에 관한 문제이다. C의 대부중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대부중개 과정에 대부업법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대부업법 제11조의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피고에게 위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청주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가단619 판결

원고는 대부중개업자 K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대부중개를 하면서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나, K가 위반한 대부업법 규정을 특정하지 않았고, 앞서 3.가.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 본 조항에 따른 위탁자의 배상책임은 ① 대부중개업자등의 행위가 '대부중개 과정'에서 발생해야 하고, ② 그 행위가 '이 법(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며, ③ 이로 인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성립한다. 판례는 대부중개가 완료된 이후의 대부계약 이행 문제는 '대부중개 과정'의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으며(대전지방법원 2024. 1. 30. 선고 2023가단212093 판결), 위반한 대부업법 규정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청주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가단619 판결).

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①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포함한다)은 대부업등(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부업자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조문 연혁

본 조항은 2015. 7. 24. 신설되었다. 제1항은 대부업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제2항은 그 책임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제2항의 구체적인 이행 방법은 2016. 7. 6.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9가 신설되면서 마련되었다.

한편, 제1항은 2025. 1. 21. 개정으로 손해배상책임 주체인 '대부업자등'에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적용 대상을 보다 분명히 하였다.

2. 시행령에 따른 최소 보장 금액 및 유지 기간 등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9(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 ① 대부업자등은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을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보증금으로 예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등록기간 동안 이를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 1천만원
2.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5천만원

②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의 거래규모, 법령 위반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③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기 전까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의 예탁이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자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보증금이나 보험 또는 공제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 보증금의 예탁이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 예탁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관련 판례

가. 대전지방법원 2024. 1. 30. 선고 2023가단212093 판결

대부업법 제11조의3 제1항은 '대부중개업자 등이 그 위탁받은 대부중개를 하면서 이 법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반면, 대부업자 등의 배상책임에 관한 **대부업법 제11조의4 제1항은** '대부업 등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요건으로 하여 그 적용 범위가 더 넓다).

⇨ 본 조문의 제1항은 제11조의3 제1항과 달리 반드시 '대부업법'을 위반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가합32401 판결

그러나 C는 당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한편 대부업 등록을 하면 대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등 대부업 등록 여부는 거래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1조의4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위 판례는 일반적인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에서, 대부업법 제11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역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

서는 대부업 미등록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기망행위가 위 제11조의4의 위법행위로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4가단5154510 판결

피고 회사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가 체결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은 피고 회사가 직접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에게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해 주고 그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이전받아 원고로부터 추심하는 방식인바, 이는 실질적으로 대부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대부업상의 '대부채권매입추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는 대위변제를 통해 이전받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J은행에게 질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그 추심을 해서는 안 되고 추심할 권리도 없음에도 원고에게 그 변제를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위 채권을 추심하였는바, 이는 대부업자로서 대부업을 하면서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대부업법 제11조의4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가 대부업법 제11조의4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부업법 제11조의4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주계약으로서의 인·허가조건이므로,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고 회사 등과 공동하여 피고 회

사가 인·허가조건을 불이행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은 50,000,000원이고, 원고가 입은 손해가 위 금액을 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피고 회사 등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보험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중략)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또한,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받았음에도 피고 회사에게 변제를 한 원고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손해배상책임을 대폭 감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바,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책임은 결국 피고 회사의 대부업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피고 서울보증보험도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고 회사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인 원고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감경하여 달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 위 판례에서는 대부업자가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해주어 추심할 권리가 없음에도 이를 알고 고의로 채무자에게 추심한 행위가 대부업법 제11조의4 제1항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또 다른 피고인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는, 제11조의4가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으로서의 인허가조건이므로 서울보증보험은 피해자인 원고에 대해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동하여 인허가조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 감경을 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민법상 손해배상의 원칙도 적용된 사례이다.

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3. 9. 선고 2016가단139606 판결

원고들과 피고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여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피고 C는 2012. 1.경부터 'E'이란 상호로 대부업을 해오고 있다.

피고 C는 2015. 2. 16. 그 운영의 E 명의로 피고 D과 사이에 2억 원을 이자 월 2.5%, 연체이자 월 10%, 대부기간만료일 2015. 8. 15.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피고 D 소유의 논산시 F 과수원 9432m², G 과수원 16m², H 과수원 684m²(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논산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9억 2,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D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1억 원씩을 송금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2015. 6.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I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논산농업협동조합도 2016. 1. 12. 같은 지원 J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가 2,407,988,000원으로 평가되어 매각절차가 진행되어 3회의 유찰 끝에 4회 매각기일에서 1,209,426,000원〈각주1〉에 매각되었으나 원고들은 배당받지 못하였다(선순위 근저당권자인 논산농업협동조합이 그 매각대금 대부분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피고 C가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의 대부거래에 있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를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 D에게 대부결정을 하게 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가 원고들의 대부금 2억 원을 회수하기에 충분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것인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대부거래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는 24억 원 이상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여기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논산농업협동조합의 실채권액(16억 원을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을 공제하면 그 실제 담보여력은 원고들의 대여금을 상당히 상회한다고 보이고, 그 외 위 대부거래 당시 이 사건 토

지의 담보가치를 감소시킬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위 대부거래 당시 피고 C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를 허위로 고지하였다거나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가 위 대부거래 중개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대부업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성립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대부업법 제11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래상대방'은 대부 상대방 채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대부자 또는 채권자에 속하는 원고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C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규정은 위 대부거래 이후에 신설된 것으로 위 대부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수도 없다).

⇨ 위 판결은 본조에서의 '거래상대방'이 대부 상대방 채무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마.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9가단141181 판결

가. 인정사실

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마이크로P2P금융플랫폼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 피고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주로 하는 회사이며, C는 D와 피고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다.
⑵ 원고는 2019. 3. 합계 9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D는 2019. 4. 23. ① 우선수익자 원고, 채권자 D, 투자금액 30,000,000원, 투자금리 연 15.79%,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투자기간 1개월(30일), 예측손실율 0.14%, 수익권발행자 C, 수익권판매자 D로 기재한 원리금 수취권 증서, ② 우선수익자 원고, 채권자 D, 투자금액 60,000,000원, 투자금리 연 15.79%,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 투자기간 1개월(30일), 예측손실율

0.14%, 수익권발행자 C, 수익권판매자 D로 기재한 원리금 수취권 증서를 각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⑶ D는 2019. 4.경 '실제 운영자의 사망으로 업무가 중지되었다. 회사에 남아 있는 돈과 회수되어야 하는 돈을 모두 합하여도 채권 전액을 상환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채권이 모두 회수되는 6. 23.경 채권자별로 분배해야 할 금액을 통지하고 변상하겠다'는 취지를 공지하였다.

⑷ C와 D의 대표이사 E는, 원고를 포함한 투자자들이 2019. 3. 28.부터 2019. 4. 12.까지 펀딩 참여한 투자금은 대출금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실제 운영자인 F와 배우자인 G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⑸ 2018. 2. 13. D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예금계좌로 49,900,000원이 송금되었고, 즉시 위 돈 중 15,415,260원이 부가세로 납부되고, 38,500,000원이 피고 대표이사 G이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는 세탁업체인 H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⑹ 위 거래 외에도 2018. 1.부터 2018. 6.까지 D와 F, 피고의 대표 G 사이에 다수의 금전 거래내역이 확인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원고에게 투자원리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직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3. 9. 선고 2016가단139606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에서는 대부 상대방 채무자로 보이지 않고 단순히 P2P 금융 플랫폼을 통해 대부업자에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에 대해서도 본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하급심 판결들을 보았을 때 '거래 상대방'의 정확한 의미가 아직 법리적으로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제12조(검사 등)

①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시·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로 한정한다)에게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③ 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④ 삭제 〈2015. 7. 24.〉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⑦ 시·도지사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대부업자등에게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⑧ 금융감독원장이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⑨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대부업자의 경우

   가. 대부금액

나. 대부를 받은 거래상대방의 수

다. 그 밖에 영업소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가. 대부를 중개한 금액

나. 대부를 중개한 거래상대방의 수

다. 그 밖에 영업소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 21.]

1. 조문 연혁

제·개정 일자	주요 내용 및 변화	배경 및 특징
2002. 8. 26. 제정	**시·도지사**의 검사권	① 대부업 등록 및 검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 ② 금융감독원은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 검사 실시
2007. 12. 21. 개정	**금융감독원장**의 직권 검사권 신설	① 대부업체가 일정 요건(자산 규모 등)에 해당하면 금감원장이 지자체 요청 없이 독자적 검사 가능 ② 검사 결과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금감원장이 시·도지사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신설
2009. 1. 21. 개정	**금융감독원장**의 자료제출요구권 및 대부업자의 보고서제출의무 신설	
2015. 7. 24. 개정	금융위원회 등록 제도 신설에 따른 감독체계 이원화	①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면 금감원이 당연히 관리·감독 ② 금감원장은 검사 결과를 지자체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직접 보고

2. 조문 해설

대부업법 제12조는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일상적인 감독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된다.

가. 자료제출요구권 및 보고서제출의무 (제12조 제1항, 제9항)

시행령 제7조의2(대부업자등의 보고서 제출) ① 법 제12조제9항에 따라 대부업자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를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6.〉

② 법 제12조제9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기재된 영업소 일반현황 및 대부현황·대부중개현황·차입현황 등의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 4. 21.]

대부업법상 자료제출요구권(제12조 제1항)과 보고서제출의무(제12조 제9항)는 감독당국이 대부업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동하는 상호보완적인 모니터링 체계이다. 감독관청은 대부업자로부터 대부금액, 거래 상대방 수 등이 포함된 업무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시장의 전반적인 현황과 추세를 파악하는 한편, 구체적인 감독상 필요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함으로써 대부업체의 영업 실태를 상시적이고 입체적으로 감시·감독한다.

나. 현장검사권(제12조 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시행령 제7조)

시행령 제7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사 요청 대상) 〈개정 2010. 4. 20., 2016. 7. 6.〉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016. 7. 6.〉
2. 매월 말을 기준으로 대부업자등의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3. 대부업자등의 영업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4. 동일인이 2 이상의 등록업체의 대주주인 경우 등 분사(分社) 등의 수단을 통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5. 대부업자등의 영업행위가 거래상대방(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크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 4. 21.]

현장검사권은 서면 모니터링의 한계를 넘어 감독관청 소속 공무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영업소에 직접 출입하여 위법 사실을 포착하는 조사 권한이다. 이는 금융위 등록업체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록 업체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협력적 체계를 포함하고 있어, 대부업자의 규모나 관할을 불문하고 금융당국의 전문적인 검사 역량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시정명령권(제12조 제7항)

앞선 서면 분석이나 현장 검사를 통해 드러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감독관청이 직접

개입하여 이를 바로잡게 하는 사후 통제 수단이다. 이는 단순한 적발을 넘어 문제 된 영업 행위의 중지나 시정 등 구체적인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감독 행정의 실효성을 끝까지 확보하고 대부업자의 실질적인 준법 영업을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

3. 해외 입법례

일본은 한국 대부업법 제12조의 모델이 된 국가로, 영업소 범위에 따라 검사 주체가 달라지는 이원화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영업소가 하나의 지자체(도도부현) 내에 있으면 지자체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으면 중앙의 금융청이 검사 권한을 행사한다. 영국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아닌 중앙 기구가 모든 신용 업체를 직접 규제한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주별 개별 금융당국이 대부업을 감독하였으나 소비자금융보호국의 설립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방 기구인 소비자금융보호국이 검사하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독일은 별도의 대부업법이 존재하지 않고, 은행법을 통해 대부업을 규제한다. 대부업자도 은행과 동일하게 면허를 취득하여 연방금융감독청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다.

제12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등)

① 누구든지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 21.]

시행령 제7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방법)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21]

[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2로 이동 〈2025.7.21〉]

1. 조문 연혁

위 조항은 불법 사금융 피해가 날로 지능화·광역화됨에 따라, 신고 접수부터 수사 의뢰까지의 절차를 법률로 명문화하기 위하여 2025년에 신설되었다.

2. 조문 해설

법 제12조의2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법률로 명문화하여 내부 고발 및 시민 감시를 활성화하며, 그에 필요한 신고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시행령 제7조의3은 서면 신고 시 필요한 법정 서식을 마련하여 신고 절차를 공식화하였다.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7.24, 2016.3.3, 2025.1.21〉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5.7.24, 2025.1.2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2. 제3조의5제1항제1호·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의 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이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2의 2.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의 3.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의 4.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4.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경우

6.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7. 대부업자등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8.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③ 시·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1. 제2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청문
2. 제2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경우: 의견제출 기회 부여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1. 제2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에 해당함이 재판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2. 의견청취가 매우 어렵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대부업자등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좋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⑤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다른 시·도지사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5.7.24〉

⑥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16.3.3, 2017.4.18, 2022.1.4, 2025.1.21〉

1. 대부업자등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3. 직원의 면직 요구

⑦ 시·도지사등은 퇴임·퇴직한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이 재임·재직 중이었더라면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17.4.18, 2022.1.4〉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대부업자등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전문개정 2009.1.21]

[제목개정 2015.7.24]

1. 조문 연혁

제·개정 일자	주요 내용 및 변화	배경 및 특징
2002. 8. 26. 제정	시·도지사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권	대부업 양성화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며, 위법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09. 1. 21. 개정	제재 사유 및 절차 구체화	영업 정지 및 등록취소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비
2015. 7. 24. 개정	감독권한 이원화 반영 및 임직원 제재 요구 권한 신설	① 대부업자 감독권한이 이원화되며 제재 주체가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 등으로 확대 ② 법인뿐만 아니라 임직원에 대한 제재(해임권고, 직무정지 등) 근거 신설
2016. 3. 3. 개정	불법 추심 행위 제재 명문화	영업정지 사유에 채권추심법 위반을 구체적으로 명시
2025. 1. 21. 개정	등록 요건 유지 의무 강화	자기자본 및 인력 요건을 상시 유지하지 못할 경우 등록취소 사유로 명시

2. 조문 해설

가. 영업정지 (제1항)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7.24, 2016.3.3, 2025.1.21〉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대부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주요 사유는 대부업법상 의무(계약서 작성, 이자율 제한 등) 위반이 있으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주요 조항(폭행·협박, 야간 방문, 관계인에게 알리는 행위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나. 등록취소 (제2항)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②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5.7.24, 2025.1.2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2. 제3조의5제1항제1호·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의 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이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2의 2.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의 3.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의 4.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4.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경우
6.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7. 대부업자등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8.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취소는 영업정지보다 강력한 조치로, 대부업자가 법령 위반 등 일정 사유에 해당

하면,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대부업자가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필요적 취소 사유, 제2항 제1호). 주요 사유로는 등록 요건(자기자본, 인력 등)을 유지하지 못하거나(제2호)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제3호)가 있으며,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거나(제4호) 소재 불명으로 공고 후 30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는 경우(제6호)에도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다. 임직원 제재 (제6항 ~ 제8항)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⑥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16.3.3, 2017.4.18, 2022.1.4, 2025.1.21〉

1. 대부업자등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3. 직원의 면직 요구

⑦ 시·도지사등은 퇴임·퇴직한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이 재임·재직 중이었더라면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17.4.18, 2022.1.4〉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대부업자등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전문개정 2009.1.21]

[제목개정 2015.7.24]

감독당국은 대부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주의·경고·문책을 요구하거나(제1호)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제2호), 직원의 면직 요구(제3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퇴임·퇴직한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재직

중이었다면 해당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제7항).

라. 처분 절차 (제3항 ~ 제4항)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③ 시·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1. 제2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청문
2. 제2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경우: 의견제출 기회 부여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1. 제2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에 해당함이 재판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2. 의견청취가 매우 어렵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대부업자등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좋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감독당국이 대부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유에 따라 청문(제1호)을 실시하거나 의견제출 기회(제2호)를 부여하는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부업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제2항 제6호)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관보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제3항 단서).

3. 관련 판례

대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리는 대부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대부업자 등이 불법추심행위를 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제14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업자등(대부업자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포함한다)은 그 대부업자등이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본다.

1.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 1. 21.]

1. 조문 연혁

대부업법 제14조는 대부업 등록이 말소된 후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부업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되었으며, 2009년 전문개정을 통해 등록 유효기간 만료, 폐업 신고, 등록취소 처분 세 가지 경우를 명시하여 그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했다.

2. 조문 해설

대부업법 제14조는 대부업 영업을 그만두더라도 기존 채무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는 대부업법상 의무(법정 이자율 준수, 불법 추심 금지 등)가 지속됨을 선언한다. 등록 취소 등을 이유로 대부업법상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대부업자등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하에 두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3.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헌법재판소는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란 금전대부계약의 채권자와 채무자로서의 관계를 끝내는 범위, 즉 변제, 면제, 소멸시효 완성 등의 채권소멸사유로 인하여 채권·채무가 소멸하는 범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고(헌법재판소 2017. 10. 26.자 2015헌바338 결정), 금융위원회는 정상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기존 채권의 거래를 종결하기 위한 추심 행위 및 채권을 타인에게 매각(양도)하는 업무 등은 허용되며, 이를 위해 별도의 갱신등록은 불필요하다고 해석하였다(2022. 1. 17. 법령해석).

제14조의2(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1. 대부업자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 이하

   나.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가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신용공여 금액 이하

2. 대주주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주주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 이하

   나. 대부업자의 최대주주인 여신금융기관이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 신용공여 금액 이하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7. 4. 18.〉

③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과징금 부과기준 및 금액,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14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9. 14.]

제14조의5(과징금 환급가산금)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

다. [본조신설 2015. 7. 24.]

1. 조문 연혁

대기업 집단 소속 대부업자가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 7월 도입되었다. 단순한 행정 처분만으로는 부당 내부거래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반 금액에 상응하는 징벌적 금전 제재인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후 2017년 개정을 통해 가산금 징수 기간의 상한(60개월)을 설정하여 납부 의무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으며, 2023년에는 「행정기본법」 제정과 연계하여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

2. 조문 해설

제14조의2 등은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가 신용공여 한도(제10조)를 초과하여 거래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그 위반 금액(초과 신용공여액 등)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대부업체가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제적 제재 수단이다. 과징금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체납 시 연 6%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다만, 재해 등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 최대 1년의 납부 연기나 3회 이내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과징금 부과가 취소될 경우 이자를 더해 환급하는 규정(환급가산금)을 두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3. 해외 입법례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은행법상 계열사 간 거래 제한을 위반할 경우 민사 제재금을 부과하며, 고의성에 따라 제재금을 차등 적용한다. 영국 건전성감독청(PRA) 또한 건전성 규제를 위반한 경우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제재금 내지는 벌금을 부과한다. 독일 연방금융감독청은 이해관계자 신용공여 한도 위반 시 즉시 상환을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① 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6. 3. 3.〉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 3. 3.〉

③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를 받는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여신금융기관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09. 1. 21.]

[제목개정 2016. 3. 3.]

1. 조문 연혁

본조는 2002. 8. 26. 법률 제6706호로 제정되었을 때부터 있던 것으로 최초에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하여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3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대부금액에 대한 이자율은 연 100분의 7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종전의 대부업법은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연 4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었고

대통령령에 의하여 34.9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과도한 이자부담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일부개정된 구 대부업법은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다시 규정하는 한편, 연 27.9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한편, 구 대부업법은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대부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부업자에게는 별도의 연체가산이자율 규제 적용근거를 두지는 않고 있었는데, 대부업 시장이 전문화·대형화됨에 따라 대부업자의 연체가산이자율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연체가산이자율 규제가 적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기 위하여 2018. 12. 24. 법률 제1608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5항에 준용규정을 두었다.

대부업법은 2002년 제정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이자율 상한이 변동되었는데, 그 이자율의 변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적용시기	이자율 상한
2002. 6. 27. ~ 2007. 10. 3.	연 66%
2007. 10. 4. ~ 2010. 7. 20.	연 49%
2010. 7. 21. ~ 2011. 6. 26.	연 44%
2011. 6. 27. ~ 2014. 4. 3.	연 39%
2014. 4. 4. ~ 2016. 3. 2.	연 34.9%
2016. 3. 3. ~ 2018. 2. 7.	연 27.9%
2018. 2. 8. ~ 2021. 7. 6.	연 24%
2021. 7. 7 ~ 현재	연 20%

여러 차례에 걸쳐 이자율 상한이 변동되기는 하였지만, 대부업법은 부칙규정[41]을 두어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다.

2. 조문 해설

가. 대부이자율의 제한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인 '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27.9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동법 제15조 제1항),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 20을 단리로 환산한다)을 말하므로(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대부업자는 이자율을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나. 이자율의 산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동법 제8조 제2항을 준용하므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아 이자율은 산정한다(동법 제15조 제2항).

다만, 담보권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 등과 같이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의 경우에는 위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이 간주이자로 본 것은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대출계약에 따른 금전대차의 대가로

---

41 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제1항

받은 '주식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 '금융자문계약에 따른 수수료'(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29615 판결), '대출취급수수료'(서울고등법원 2022. 3. 31. 선고 2021나2030519) 등이 있다.

기준을 초과하여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 제8조 제6항을 준용하므로,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한다(동법 제15조 제5항, 제8조 제6항).

다. 연체이자율의 산정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는데(동법 제15조 제3항),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은 연 100분의 20을 말하므로(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이자율 제한 위반의 효과

여신금융기관이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된다(동법 제15조 제5항, 제8조 제4항). 만약 채무자가 여신금융기관에게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제5항, 제8조 제5항).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를 받는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도 명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제4항). 만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동법 제19조 제4항 제10호).

3.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29615 판결

[판시사항]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의 채무자 외의 자와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전 기타 대체물이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부계약에 따른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이자 또는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에 준용되는 제8조 제2항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제공자를 '채무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위 규정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른 이자 외에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하는 등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 여기에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초과하여 수취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의 채무자 외의 자와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대체물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그것이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부계약에 따른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이자 또는 간주이자에 해당한다.

제15조의2(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① 대부업등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대부업정책협의회를 둔다.

② 대부업정책협의회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대부업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부업정책협의회, 제2항에 따른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 및 제3항에 따른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 21.]

1. 조문 연혁

본조는 시·도지사와 행정기관 등이 등록된 대부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다.

2. 조문 해설

가. 대부업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대부업등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대부업정책

협의회를 두고 있다(동법 제15조의2 제1항).

대부업정책협의회는 주로 대부업등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1호), 대부업등 관련 법령·지침 및 제도의 마련과 개선(2호), 대부업등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3호), 그 밖에 대부업등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하고 있다(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나. 대부업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협의회의 위원은 금융위원회위원장·기획재정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이 되고, 협의회의 의장은 금융위원회위원장이 된다(동규정 제2조 제3항, 제4항).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되는데, 정례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하고 있으며(동규정 제3조 제3항, 제4항),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동규정 제3조 제5항)

다.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대부업정책협의회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5조의2 제2항).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연구·검토하고,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는 기능을 한다(동규정 제5조 제1항).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대부업정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동규정 제3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대체로 준용한다.

라.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대부업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두고 있다(동법 제15조의2 제3항).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는 대부업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기관이다. 마찬가지로 시·도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도 대부업정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동규정 제3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대체로 준용한다.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시·도지사는 수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대부업자등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4. 18.,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시·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대부업자등의 현황 파악과 제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4. 18.,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1. 21.]

1. 조문 연혁

본조는 시·도지사와 행정기관 등이 등록된 대부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다.

이후 본조는 2017. 4. 18. 법률 제14820호로 일부개정되면서 대부업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위임규정을 마련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대부업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를 정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자 현황 파악과 제도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등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2. 조문 해설

가.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시·도지사는 수시로 대부업자등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6조 제1항).

이때 시·도지사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편의상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시·도지사 외에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도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필요적으로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6조 제3항).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시·도지사가 대부업자등의 영업실태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1. 대부업자의 경우
   가. 대부금액
   나. 대부를 받은 거래상대방의 수
   다. 그 밖에 영업소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가. 대부를 중개한 금액
   나. 대부를 중개한 거래상대방의 수
   다. 그 밖에 영업소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기준일부터 6개월 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3항).

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및 협조 요청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시·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대부업자등의 현황 파악과 제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동법 제16조 제2항).

제16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① 시·도지사등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최근 5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2. 최근 5년 이내에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기준,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1.]

1. 조문 연혁

본조는 2014. 1. 1. 법률 제1215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이자율 제한 위반,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신설되었다.

2. 조문 해설

가.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 공표명령

시·도지사등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최근 5년 이내에 제13조[42]에 따른 영업정지

42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1호), 최근 5년 이내에 제15조 제4항[43]에 따른 시정명령 받은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6조의2 제1항).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량권 발동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강학상 공표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어 처분성이 인정된다.

나. 공개의 기준, 내용 및 절차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의 기준,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동법 제16조의2 제2항), 구체적으로 공개는 시·도지사등이 해당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한 후 지체 없이 시·도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2항).

행정처분 사실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의 공개임을 알 수 있는 제목(1호), 상호, 소재지 및 성명(2호), 대부업등 등록번호(3호), 위반행위(4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5호), 행정처분일·시정명령일 및 그 기간(6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다만,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이 게재된 기간 이상 시·도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3항)

---

43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제17조(등록수수료 등)

①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대부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수수료를 시·도지사나 금융감독원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09. 1. 21.]

1. 조문 연혁

본조는 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2. 조문 해설

가. 등록수수료의 부과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는 동법 제3조에 따라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각각의 사업소에 대하여 영업소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다만, 10만원 이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그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나. 검사수수료의 부과

시·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동법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때의 검사수수료는 검사일을 기준으로 연평균 내무 금액 잔액의 1천분의 1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7조의4 제2항 별표4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수수료 부과기준' 참조, 검사기관과 동일 시에 위치한 대부업자의 경우 35,000원, 검사기관과 다른 시에 위치한 대부업자의 경우 90,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받는 검사수수료의 경우에는 연평균 대부금액 잔액의 1천분의 1 이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그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제18조(분쟁 조정)

①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 7. 24.〉

②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분쟁 조정의 절차·방법 등 분쟁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 조정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 7. 24., 2020. 3. 24.〉

1. 조문 연혁

본조는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이후 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본조 제4항이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은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 조정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2. 조문 해설

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2002. 8. 26. 법률 제6706호로 제정되어 2002. 10. 27. 시행된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은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구 대부업법 제18조 제1항).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자 상한 위반, 불법 채권 추심 등 대부업체와 거래상대방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송 절차 전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개설하여 운영(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산하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하고 있다.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은 시·도시자 소속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보충적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8조 제2항).

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동법 제18조 제3항),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1호),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2호),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호), 금융·대부업 또는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4호), 금융 또

는 법학을 전공하여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다만, 시·도지사는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1호),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호),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호),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위원의 구성되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하며, 분쟁 당사자에게 그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할 수 있게 하였다(동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다. 분쟁조정의 절차 및 방법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대상은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한다. 조문의 반대해석상 미등록된 대부업자와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은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 조정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44]한다(동법 제18조 제4항).

44 제33조(분쟁조정기구), 제3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제35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위촉해제, 제36조(분쟁의 조정), 제37조(조정위원회의 회의), 제3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39조(조정의 호력), 제40조(시효의 중단), 제41조(소송과의 관계),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제43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18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본조신설 2009. 1. 21.]

① 대부업등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대부업등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④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시행령 제11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본조신설 2009. 4. 21.]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6.〉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회(支會)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정관인가서 사본

⑤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 조문 연혁

대부업법 제18조의2는 2009년 1월 21일 법률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신설되어 2009년 4월 22일 시행되었다.

대부업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대부업자들의 자율적인 업무 질서 확립,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 그리고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조항은 대부업계의 자율규제 기능을 담당할 법정 협회를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한 것이다. 이후 2015. 7. 24. 개정으로 협회가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제3항)이 추가되었다.

2. 조문 해설

대부업법은 대부업등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대부업등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를 설립한다(제18조의2 제1항).

한국대부금융협회 설립의 의의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설립 및 활동은 서민금융 역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서민금융 안전망의 한 축: 대부금융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의 접근성이 낮은 금융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며 서민금융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협회는 이러한 대부금융이 양성화된 시장에서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 사금융 양성화와 제도화의 상징: 과거 음성적인 사금융 시장의 폐해를 줄이고자 「대부업법」이 제정(2002. 8. 26.)되면서 대부업이 제도권 내로 편입되었고, 협회는 이러한 제도화된 대부업계를 대표하고 관리하는 법정 기관으로서 기능한다. 이는 무분별한 불법사채를 규제하고 공식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협회는 법정 기관으로서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공제, 예탁)를 운영하고, 민원 처리 및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을 수행하여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협회는 법인으로 하는데(제18조의2 제2항), 이는 대부업법에 의해 특정 공익적 기능이 부여된 민간의 자율규제기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대외적 강제력은 제한되며, 회원에 대한 구속력은 정관·규정 및 가입계약을 통해 사법상 형성한다.

가. 사무소와 지회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제18조의2 제3항). 협회는 법정 기관이지만, 지회의 설치 및 운영 여부는 협회의 내부 규정과 운영 효율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필수적인 조직은 아니다. 현재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주요 활동은 본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 설립등기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제18조의2 제4항).

– 등기 기간: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 등기 사항: 설립등기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및 지회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 및 주소, 공고의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 첨부 서류: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정관, 정관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

다. 협회 또는 유사 명칭 사용 제한

대부업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

제18조의3(업무)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6. 3. 3.〉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 대부업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회원에 대한 업무방식 개선·권고
3. 대부업등의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4. 그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시행령 제11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④ 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 11. 30., 2016. 7. 6., 2018. 11. 13.〉

1.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2. 대부업등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3.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4. 대부업자등, 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의 법령위반사항 등에 대한 자율감시
5. 법 제11조의4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예탁 및 공제업무
6. 대부업자등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방법 표준화 및 지도 등 자율규제 업무
7. 대부업자등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
8. 그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3.〉

[본조신설 2009. 1. 21.]

1. 조문 연혁

대부업법 제18조의3은 2009년 1월 21일 법률 개정을 통해 제18조의2(협회 설립) 조항과 함께 신설되었다. 이 조항은 대부업 협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제18조의2), 협회가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자율규제 및 이용자 보호 업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현재까지 특별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조문 해설

가. 업무 내용

협회의 주요 업무와 역할은 크게 소비자 보호, 회원사 관리 및 지원, 제도 운영 및 교육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8의3 제1항, 시행령 제11의2 제4항).

① 대부업법 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②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회원에 대한 업무 방식 개선·권고
③ 대부업등의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④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⑤ 대부업등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⑥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⑦ 대부업자등, 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의 법령위반사항 등에 대한 자율 감시
⑧ 대부업법 제11조의4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예

탁 및 공제 업무

⑨ 대부업자등의 건전한 영업 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 방법 표준화 및 지도 등 자율규제 업무

⑩ 대부업자등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

⑪ 그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나. 업무 규정 제정·변경 또는 폐지의 보고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제18조의3 제2항)

제18조의4(정관)

① 협회의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작성한 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임직원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비의 분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9. 1. 21.]

1. 조문 연혁

대부업법 제18조의4는 2009년 1월 21일 법률 개정을 통해 제18조의2(협회 설립), 제18조의3(협회 업무) 등과 함께 신설 대부업 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협회의 조직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법률로 규정하고, 정관의 제정 및 변경 시 금융당국(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협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하였다.

2. 조문 해설

가. 금융위원회의 인가

협회의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작성한 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18조의4 제1항 전단).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18조의4 제1항 후단).

나. 정관의 필수적 기재 사항(제18조의4 제2항)

①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② 임직원에 관한 사항
③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④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⑤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⑥ 회비의 분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⑦ 회의에 관한 사항
⑧ 그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의5(가입 등)

① 대부업자등은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시행령 제11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⑤ 법 제18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인 대부업자등을 말한다. 〈신설 2016. 7. 6.〉

② 협회는 대부업자등이 협회에 가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협회는 회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 21.]

1. 조문 연혁

대부업법 제18조의4는 2009년 1월 21일 법률 개정을 통해 제18조의2(협회 설립), 제18조의3(협회 업무), 제18조의4(정관) 등과 함께 대부업 협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시에 신설되었고, 2009년 4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조항은 2015년 7월 24일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의무 가입' 대상자가 변경되었고, 이는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존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대상이 되는 대부업자등"이 의무 가입 대상이었으나, 개정된 후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 되었다. 이는 법

률 개정으로 대부업자 등록 및 감독 기관이 일부 변경(금융위원회 등록 신설 등)됨에 따라, 협회 의무 가입 대상을 이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2. 조문 해설

가. 가입

대부업자등은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제18조의5 제1항 본문). 다만,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시·도시사에 등록'한 법인인 대부업자등은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제18조의5 제1항 후단, 시행령 제11조의2 제5항).

- 대부업법상 의무 가입 대상인 자산 100억 원 이상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직접 검사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체들이 회비 부담과 업무 관련성 부족 등을 주장하며 가입을 거부한 경우가 있었다. 대부업법에 이를 강제할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에 가입을 강제하기 어려웠고, 이는 협회 중심의 자율규제와 대부업계의 건전성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 협회는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감독원의 행정조치로 대응하고 있고, 아직도 과태료 규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 가입 거부 또는 부당한 조건 부과의 제한

협회는 대부업자등이 협회에 가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8조의5 제2항).

다. 회비 징수

협회는 회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제18조의5 제3항).

–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정관' 및 '회비 징수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한다.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가 있다. 연회비는 직전 사업년도 결산서상 영업수익(매출액)을 기준으로 차등 산정되며, 신규법인이나 영업수익 20억 원 이하 업체 등은 최소 회비(연 120만 원)가 적용되고 있다. 회비는 협회 운영 경비에 충당하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특별회비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의6(「민법」의 준용)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 1. 21.]

1. 조문 연혁

대부업법 제18조의6은 2009년 1월 21일 법률 개정을 통해 처음 신설되었고, 2009년 4월 22일에 시행되었다.

이 조항은 제18조의2(협회 설립) 등과 함께 대부업 협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신설된 것으로 협회가 법인으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2. 조문 해설

대부업법 제18조의6은 대부업 협회의 법적 지위와 운영에 관한 보충 규정이다. 대부업법은 협회의 설립, 업무, 감독 등 특별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부업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협회의 운영(이사·총회·해산·청산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18조의6).

제18조의7(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1조의3(업무의 위탁)

① 시·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 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 7. 6.〉

[본조신설 2009. 4. 21.]

②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시행령 제11조의3(업무의 위탁)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6. 7. 6., 2017. 10. 17., 2018. 11. 13., 2025. 7. 21.〉

1. 법 제3조·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따른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갱신, 등록증의 반납과 등록증의 분실신고 접수 등의 절차에 관한 업무
2. 법 제3조의5에 따른 대부업등의 등록요건 심사에 관한 업무
3.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임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5조에 따른 대부업등의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의 신용공여 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6.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서의 접수
7.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위반 혐의 대부업자 및 그 대주주에 대한 자

료제출명령

7의2.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심사에 관한 업무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및 그밖에 필요한 명령

8의2.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심사에 관한 업무

9.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10. 법 제13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치

10의2.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한정한다)

10의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심사에 관한 업무

11. 법 제16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업무

12. 법 제16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에 관한 업무

1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수수료에 관한 업무

14. 법 제18조의8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본조신설 2009. 4. 21.]

③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분기별로 시·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본조신설 2009. 1. 21.]

---

1. 조문 연혁

대부업법 제18조의7은 2009년 1월 21일 법률 개정을 통해 처음 신설되어 2009년 4월

22일 시행되었다. 이 조항은 제18조의2(협회 설립) 등 대부업 협회 관련 조항들이 신설되어 법정 협회가 설립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대부업 관련 행정 업무의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2. 조문 해설

가.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의 업무 일부 위탁

대부업법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 업무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제18조의7 제1항,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

나.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 위탁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제18조의7 제2항, 시행령 제11조의3 제2항).

1. 법 제3조·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따른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갱신, 등록증의 반납과 등록증의 분실신고 접수 등의 절차에 관한 업무
2. 법 제3조의5에 따른 대부업등의 등록요건 심사에 관한 업무
3.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임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5조에 따른 대부업등의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의 신용공여 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6.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서의 접수

7.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위반 혐의 대부업자 및 그 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7의2.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심사에 관한 업무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

8의2.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심사에 관한 업무

9.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10. 법 제13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치

10의2.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한정한다)

10의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심사에 관한 업무

11. 법 제16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업무

12. 법 제16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에 관한 업무

1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수수료에 관한 업무

14. 법 제18조의8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다. 위탁 업무 처리의 결과 보고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분기별로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8조의7 제3항).

제18조의8(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의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본조신설 2009. 1. 21.]

1. 조문 연혁

대부업법 제18조의8은 2009년 1월 21일 법률 개정을 통해 처음 신설되었고, 2009년 4월 22일 시행되었다. 이 조항은 대부업 협회 관련 조항들(제18조의2~제18조의7)과 함께 신설되었는데, 이는 시·도지사 등 감독 기관이 대부업자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다른 관계 기관(예: 국세청, 경찰청 등)에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항은 2015년 7월 24일 법률 개정 시, 대부업 등록 및 감독 주체가 금융위원회로 일부 이관됨에 따라 조문의 주체(시·도지사)를 "시·도지사등"으로 변경하는 자구 수정이 이루어졌다.

2. 조문 해설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의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제18조의8 전단).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제18조의8 후단).

제18조의8은 대부업 관리가 특정 기관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정부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대부업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론적으로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의 관리·감독을 위해 불법적인 거래나 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공공 기관이 협조 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제18조의9(협회에 대한 검사)

① 협회는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3.]

1. 조문 연혁

대부업법 제18조의9는 2016년 3월 3일 법률 개정 시 신설·시행되었다. 이 조항은 2009년에 협회 설립 근거(제18조의2 등)가 마련된 이후, 협회의 운영과 재산 상황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감독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이는 협회의 공신력을 높이고, 협회가 수행하는 자율규제 및 이용자 보호 업무가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금융당국(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실질적인 감독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해설

협회는 대부업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대부업협회의 업무수행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가. 협회에 대한 검사의 목적

1) 협회의 회계 투명성 확보

협회는 회원사인 대부업체들로부터 받은 회비를 운영 재원으로 사용하므로 이 회비가 본래의 설립 목적(자율규제, 소비자 보호 등)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산상황 검사가 필수적이다. 재산상황 검사를 통해 협회 자금이 특정 개인이나 부당한 목적으로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회계상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2) 협회의 역할 및 책임 강화

협회는 자체적으로 내부 규율을 마련하고 회원사들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감시하는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협회가 재정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될 때, 협회의 자율규제 기능도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협회는 대부업 관련 감독 기관(금융감독원, 시·도지사)의 업무를 보조하고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협회가 검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소비자 보호 및 시장 건전성 유지

협회 재정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면, 궁극적으로 협회가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피해 상담, 교육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협회의 재무 건전성이 확보되면, 대부업 시장 전체의 신뢰도가 올라가고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감시 기능도 강화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부업 협회의 재산 상황 검사는 협회의 공적 역할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고, 회원사의 간접적인 관리를 강화하며, 이를 통해 대부업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라 할 것이다.

나. 협회에 대한 검사

1) 재산 상황 검사

협회는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제18조의9 제1항).

2) 자료제출 요구 등

금융감독원장은 재산상황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제18조의9 제2항).

3) 증표 제시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제18조의9 제3항).

4) 금융감독원장의 보고서 제출과 의견서 첨부

금융감독원장이 검사를 한 경우에는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8조의9 제4항 전단). 이 경우 대부업법 또는 대부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18조의9 제4항 후단).

5) 검사의 방법·절차 등 필요 사항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제18조의9 제5항).

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협회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3. 기관경고
4. 기관주의
5. 그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시행령 제11조의4(협회에 대한 조치)

① 법 제18조의10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본조신설 2017. 8. 29.]

②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임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시행령 제11조의4(협회에 대한 조치)

② 법 제18조의10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본조신설 2017. 8. 29.]

③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협회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시행령 제11조의4(협회에 대한 조치)

② 법 제18조의10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본조신설 2017. 8. 29.]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협회의 정관에 대한 인가의 취소
2. 제18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회의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본조신설 2016. 3. 3.]

[별표2]

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제18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관련)

1.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2.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4.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5.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제18조의9제2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7. 제18조의10제1항제2호·제5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8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그 내용을 기록·유지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9. 「형법」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제2항, 제359조를 위반한 경우
10. 그밖에 금융이용자 보호 또는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조문 연혁

대부업법 제18조의10은 2016년 3월 3일 법률 개정 시 신설되어 시행되었다.

이 조항은 협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권한(제18조의9)과 더불어, 상위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이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임원의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협회 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2. 조문 해설

가. 협회에 대한 제재

금융위원회는 협회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의 정지(1호), ② 위법행위의 시정명령(2호), ③ 기관경고(3호), ④ 기관주의(4호), ⑤ 그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변상 요구,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5호)를 할 수 있다(제18조의10 제1항, 시행령 제11조의4 제1항).

별표 2 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2.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4.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5.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제18조의9제2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7. 제18조의10제1항제2호·제5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8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그 내용을 기록·유지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9. 「형법」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제2항, 제359조를 위반한 경우
10. 그밖에 금융이용자 보호 또는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임원에 대한 제재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임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해임 요구(1호), ②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2호), ③ 문책경고(3호), ④ 주의적 경고(4호), ⑤ 주의(5호), ⑥ 그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제18조의10 제2항, 시행령 제11조의4 제2항).

다. 직원에 대한 제재의 요구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면직(1호), ② 6개월 이내의 정직(2호), ③ 감봉(3호), ④ 견책(4호), ⑤ 경고(5호), ⑥ 주의(6호), ⑦ 그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제18조의10 제3항, 시행령 제11조의4 제2항).

라.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와 감면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제18조의10 제4항 본문).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제18조의10 제4항 단서).

마. 필요적 청문

금융위원회는 ①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협회의 정관에 대한 인가의 취소 ② 제18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회의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 요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18조의10 제5항).

바. 조치 사례

⑴ 사건 개요

협회는 2022. 9. 21.부터 2022. 10. 7.까지 진행된 금융감독원의 한국대부금융협회 검사 당시, 협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에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한 재무제표 각 계정과목별세부원장 등 총 6건의 자료에 대하여 협회장의 결정 및 지시에 따라 불응하였고, 이로 인해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부문에 대한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결과 "협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의 적정성 점검"이라는 검사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검사를 방해하였음

협회는 2016. 9. 8.부터 2022. 8. 11. 기간 중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등 14건의 규정 제정·변경이 있었으나 그 중 8건에 대해 보고하지 않거나(3건) 지연보고(5건)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음

⑵ 금융당국의 조치

금융위원회는 2024. 2. 23.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정례회의에서 대부업법 제18조의10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를 의결함.

-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대한 기관경고
- 임원 3명에 대한 문책 경고 1명, 주의적 경고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 관련 업무를 담당한 보조자(직원)에게 주의 1명

⑶ 이 조치의 중요성

이 사례는 협회가 감독 기관의 검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엄격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대부업법 제18조의10이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실제로 대부업 시장의 자율규제 기능을 담당하는 협회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이 강력하게 행사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부업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건전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제18조의11(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18조의10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18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협회에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협회는 이를 퇴임·퇴직한 그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은 협회가 금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④ 협회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에 자기에 대한 제18조의10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조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23. 9. 14.〉

⑦ 삭제 〈2023. 9. 14.〉

[본조신설 2016. 3. 3.]

1. 조문 연혁

대부업법 제18조의11은 2016년 3월 3일 신설·시행되었다. 이 조항은 금융당국이 협회를 검사하고 감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처분 및 조치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행정기본법」은 2021. 3. 23. 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개별 법률들도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들은 일괄 정비되었다. 이에 따라 대부업법 제18조의11 제6항, 제7항도 2023. 9. 14. 개정 시 삭제하였다.

2. 조문 해설

가. 처분 또는 조치 내용의 기록, 유지·관리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제18조의10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제18조의11 제1항).

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18조의10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까지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부터 제6호(면직, 6개월 이내의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협회에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제18조의11 제2항 전단).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협회는 이를 퇴임·퇴직한 그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8조의11 제2항 후단).
- 협회가 금융위원회의 조치 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대부업법 제18조의11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제18조의11 제3항에 따른 제18조의11 제1항 준용).

다.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의 조회

협회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에 자기에 대한 대부업법 제18조의10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제18조의11 제4항).

라.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의 조회 요청자에 대한 통보

금융위원회는 조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8조의11 제5항).

제18조의12(처분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14조의2, 제18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의 처분(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으로 한다)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8.〉

⑤ 행정청은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8.〉

⑥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3. 1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3. 18.〉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18.〉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3.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5.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이의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과 처분을 받은 날
3. 이의신청 이유

② 행정청은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그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7일 이내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1. 7.〉

④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5. 1. 7.〉

⑤ 행정청은 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5. 1. 7.〉

⑥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5. 8. 19.〉

⑦ 행정청은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신설 2025. 8. 19.〉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
2.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⑧ 법제처장은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 처리 상황 등 이의신청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 7., 2025. 8. 19.〉

[본조신설 2023. 9. 14.]

---

1. 조문 연혁

대부업법 제18조의2는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자 또는 협회 임직원 등에게 내리는 특정 처분(과징금, 협회에 관한 조치 등)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과는 별개로 금융위원회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이의신청)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신설한 것이다.

2. 조문 해설

가. 이의 신청 사유 및 기한

과징금(제14조의2), 협회에 대한 제재(제18조의10 제1항), 협회 임원에 대한 제재(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그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및 퇴임 임원 또는 퇴직 직원에 대한 조치(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그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18조의12 제1항).

나.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한 및 그 연장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8조의12 제2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제18조의12 제2항 단서).

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적용

대부업법 제18조의12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제18조의12 제3항). 이에 행정기본법 제36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하고(행정기본법 제36조 제3

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2) 다른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 본문,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 단서).

3)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

4)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는 행정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한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7항,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

5)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①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②「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③「노동위원회법」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④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⑤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⑥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행정기본법 제36조 제8항)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5. 7. 24., 2025. 1. 21.〉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4. 삭제 〈2025. 1. 21.
5. 삭제 〈2025. 1. 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 1. 21.〉

1. 제5조의2제5항 각 호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대부업 등록증을 양도·양수·대여·유통한 자
2.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
3.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 행위를 한 자
4. 제9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과정 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한 자
5. 제9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 1. 21.〉

1.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2.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12. 11., 2015. 7. 24., 2025. 1. 21.〉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1의2. 삭제 〈2025. 1. 21.〉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삭제 〈2025. 1. 21.〉

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5.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7.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8.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10.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1.〉

[전문개정 2009. 1. 21.]

---

1. 조문 연혁

2025. 1. 21. 법률 제20714호로 개정되어 2025. 7. 22. 시행된 대부업법 제19조 벌칙조항은 불법사금융업자의 미등록 불법대부 등에 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고, 이자율

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등 최고금리를 위반 한 경우에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다.

2. 조문 해설: 벌칙규정의 적용 범위

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4. 삭제 〈2025. 1. 21.〉
5. 삭제 〈2025. 1. 21.〉

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 1. 21.〉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1. 제5조의2제5항 각 호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대부업 등록증을 양도·양수·대여·유통한 자

2.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
3.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 행위를 한 자
4. 제9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과정 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한 자
5. 제9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부업법 제19조 제3항)

1.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2.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12. 11., 2015. 7. 24., 2025. 1. 21.〉 (대부업법 제19조 제4항)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1의2. 삭제 〈2025. 1. 21.〉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삭제 〈2025. 1. 21.〉
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5.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7.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8.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10.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마.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대부업법 제19조 제5항)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 21.]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 25., 2015. 7. 24., 2017. 4. 18.〉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
4.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자
6.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자

6의2. 제7조의2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7.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8. 제9조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9.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10.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자

10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
12.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2. 6., 2015. 7. 24., 2017. 4. 18.〉

1. 제3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2. 12. 11.〉
4.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
6.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7. 4. 18.〉
8.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자
9.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10.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등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09. 1. 21.]

---

1.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부업법 제21조 제1항)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
4.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자
6.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자

6의2. 제7조의2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7.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8. 제9조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9.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10.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자

10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
12.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

2.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

정 2009. 2. 6., 2015. 7. 24., 2017. 4. 18.〉(대부업법 제21조 제2항)

1. 제3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2. 12. 11.〉
4.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
6.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7. 4. 18.〉
8.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자
9.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10.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1항)

연번	위반 내용 (과태료 부과 사유)	관련 조항
1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음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
2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음	제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
3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필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 또는 거짓으로 적힌 계약서를 교부	제6조 제1항 또는 제3항
4	계약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음	제6조 제2항 또는 제4항
5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중요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않음	제6조의2

6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 상황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않음	제7조 제1항
7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제7조의2
8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않음	제9조 제1항
9	광고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함	제9조 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
10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함	제9조의3 제1항
11	종업원 고용, 업무 위임/대리 규정을 위반함	제9조의5 제1항 또는 제2항
12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음	제10조 제2항
13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함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14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 또는 중요 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함	제12조 제9항

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2항)

연번	위반 내용 (과태료 부과 사유)	관련 조항
1	(등록증) 분실신고를 하지 않음	제3조 제7항
2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음	제3조의3 제1항 또는 제2항
3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제6조 제5항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등의 열람이나 관련 증명서 발급을 거부함	제6조 제6항
5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제9조 제4항
6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음	제10조의2
7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 제출함	제12조 제1항 또는 제5항
8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함	제18조의2 제5항

3. 과태료 부과기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등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 7. 24.〉 (대부업법 제21조 제3항) 이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대부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대부업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시·도지사등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부과 대상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3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법인	200	400	600
		법인이 아닌 자	50	100	200
나. 법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2호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다.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법인	200	400	600
		법인이 아닌 자	50	100	200

라.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3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마.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바.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법인	600	1,000	2,000
		법인이 아닌 자	200	500	1,000
사.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3호	법인	600	1,000	2,000
		법인이 아닌 자	200	500	1,000
아.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4호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자.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4호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차. 법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5호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카.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법인	600	1,000	2,000
		법인이 아닌 자	200	500	1,000
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6호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파. 법 제7조의2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6호의2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7호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거.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8호	법인	600	1,000	2,000
		법인이 아닌 자	200	500	1,000
너.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6호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더. 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8호	법인	1,000	2,000	3,000
		법인이 아닌 자	500	1,000	1,500
러.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9호	법인	600	1,000	2,000
		법인이 아닌 자	200	500	1,000
머. 법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0호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버.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2	법인	600	1,000	2,000
		법인이 아닌 자	200	500	1,000
서.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8호	법인	200	400	600
		법인이 아닌 자	50	100	200
어.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9호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저. 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1호	법인	1,000	2,000	3,000
		법인이 아닌 자	500	1,000	1,500
처. 법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2호	법인	600	1,000	2,000
		법인이 아닌 자	200	500	1,000
커.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10호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